

발표 저널리즘의 현황과 개선 방향

1. 문제제기

최근 국내 언론사들은 지난 6월 소위 ‘불량만두’ 관련 보도를 앞 다투어 내놓은 이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불량만두’에 대한 언론보도로 도산의 위기를 겪은 만두제조업체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가 하면 일부 업체는 형사고발까지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언론이 만두업체의 공장이나 관계자에 대한 확인취재 없이 경찰청이나 식약청의 부정확한 공식발표를 선정적으로 받아쓴 결과로 소위 발표 저널리즘의 위험성과 한계를 잘 보여준다.

발표 저널리즘이란 정보원의 발표에만 의존해서 정보원의 발표를 그대로 전재하는 보도 관행을 일컫는 것으로 우리 언론이 극복해야 할 부정적 타성 중의 하나다.

발표 저널리즘으로 인해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핵심적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의제설정’의 주도권이 발표자에게 넘어가고 언론보도는 획일화 되며, 그 결과 독자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부정성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발표’를 통한 정보에는 그 정보에 대한 해석의 방향까지 심어져 있기 마련이어서 의도성을 띤 정보의 대량유통으로 인한 여론 조작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 시기나 정쟁이 치열한 시점에 정치인들이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출처불명의 제보를 근거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비리 등을 폭로 내지 발표하고 이를 언론이 대대적으로 받아 증계하는 관행 또한 발표 저널리즘의 한 양태이다.

따라서 이런 부정적 타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산학에 걸쳐 오랫동안 있어 온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현장에서는 여전히 출입처와 보도자료 중심의 발표 저널리즘 관행이 온존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매체의 발달과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대 언론 홍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위 맞춤형 보도 자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해주는 보도자료 배급사까지 등장하고 있어 발표 저널리즘의 무분별한 확산이 예견되고 있다.

여기서는 여러 사회적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언론 현장에서 발표저널리즘이 온존하고 발달하는 원인은 무엇인지를 기존 논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발표 저널리즘의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를 기존의 실증적 연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존의 논의

우리 언론의 보도행태를 묘사하는 수식어로 흔히 경마저널리즘, 폭로저널리즘, 옐로 저널리즘, 발표저널리즘, 냄비저널리즘 등이 자주 등장한다. 그 중에서도 발표저널리즘은 정부

기관이나 경찰 등 출입처에서 내놓은 각종 보도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보도하는 경향을 말한다. 달리 표현하면 언론인이 사실 확인과 사실에 대한 분석 및 해석의 기능을 포기하고 취재원이 제공하는 정보와 그러한 정보에 대한 분석 및 해석, 취재원이 규정한 현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행태를 말한다.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표저널리즘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출입처 제도가 발달하고 기자클럽이나 기자단이 활성화된 상황 아래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일상화된 취재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표저널리즘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출입처나 기자단과 같은 취재 관행이 발달하게 된 배경을 논의하는 게 우선이다.

(1) 언론조직과 취재 관행

여타 조직과는 달리 언론조직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 내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뉴스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중점이 있다. 그러나 일정한 마감시간(deadline) 내에 이 세상에서 매일 일어나는 예상외의 그리고 무한정의 사건을 모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들 사건들 중에서 뉴스로서 가치가 있는 것을 골라내어 분류하고 유목화해야 한다.

특히 기업으로서의 언론은 더욱 많은 수용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소재와 아울러, 좀 더 저렴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한다. 가급적 적은 비용으로 뉴스를 전달해야 하고, 타 매체와의 시간경쟁을 피할 수 없으며, 방송시간과 지면의 제한을 받는 언론사에게는 최소한의 취재원으로 기사를 작성하라는 무형의 압력이 존재한다. 그 결과 뉴스가치는 높을 지라도 취재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면 뉴스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뉴스가치가 낮더라도 취재가 용이하면 기사화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자들은 많은 취재원 중에서 접근이 용이한 일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등 일상화된 취재경로나 기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취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사실 확인이 덜 필요한, 공신력 있는 취재원 특히 조직화된 취재원을 선호하기 마련이다.²⁾

아울러 언론조직은 효율적인 시간과 공간 관리를 위해 그 작업 과정을 관행화시킨다. 관행이란 언론인들이 일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형식화되고 일상적이며 반복되는 일과 형태를 의미한다. 취재 관행은 기자 개인이 일을 수행하는 도중에 그리고 일의 수행을 통해 즉각적인

1) 안병찬, '발표저널리즘 반성과 대안', 관훈통신 73호, 관훈클럽, 2001. <http://kwanhun.com/knews>

2) 장호순·오수정, '한국 신문의 취재원과 취재 경로분석', 『보도비평』 통권 7호, 한국언론재단, 2001, pp.11-12.

주변 환경을 형성하며 언론조직은 이런 관행을 통해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조직적 활동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뉴스가치란 무엇인가에서부터 기사화 방식 나아가 정보를 얻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제반 과정에 나름의 관행들을 발달시킨다. 물론 이들 관행들 중에서 많은 부분은 조직이 당면하는 물리적 제한점들에 잘 대응하기 위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모든 장소에 기자들이 동시에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뉴스가치가 있는 사건이 발생할 만한 기관이나 지역을 선정하고 여기에 기자를 파견하는 소위 뉴스 망(news net)을 형성하고 여기에 적합한 체계를 운영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출입처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조직론의 관점에서 볼 때 언론조직은 취재와 보도라는 작업과정 속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상호의존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의존은 여러 가지 중요한 조직적 관행을 만들어 낸다. 그 중에서도 기자들이 뉴스를 패거리(pack)로 취재하는 관행이 대표적이다.³⁾ 기자들은 똑같은 사람, 사건을 취재할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나 뉴스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서로 의존하기 마련이다. 특히 뉴스대상을 평가할 수 있는 확고한 외적 기준이 없는 경우 즉 불규칙적이거나 예상을 벗어난 사건이나 이슈 그리고 의존할 만한 취재원이 부족한 경우 기자들은 독자적인 취재보다는 패거리 보도를 선택하고 다른 경쟁기자들의 선택에 따르는 경향이 많다. 물론 이러한 의존 관행은 낙종의 위험을 감소시켜주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그러나 상호의존이 높을 경우 공조를 통한 발표저널리즘이 발달하고 이로 인한 보도의 유사성과 획일성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기자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외부의 취재원에 많이 의존한다. 그 과정에서 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관행들을 발달시킨다. 그리고 이들 관행을 통해 취재와 보도활동에 대한 응집력 있는 규칙을 만들고 언론조직으로서 전문성과 효율성도 확보해갈 수 있게 된다. 터크만(G.Tuchman)의 주장처럼 기자들이 취재와 보도 관행으로 습득한 질문 내용이나 뉴스의 기사화 방식, 취재기법 등은 전문가적 의식(례)(ritual)으로 높게 평가받는다. 그렇다고 언론조직의 관행이 무작위적으로 발달하는 것은 아니다. 인적 물적 자원이 제한된 언론조직과 무제한적으로 공급되는 정보환경 아래서 관행은 언론조직과 그 구성원인 기자들의 필요성에 부합해서 발달한다. 예를 들어 정보 수집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출입처’ 형식으로 취재원을 전형화시키는 전략이 발달한다. 시갈(L. V. Sigal)은 이러한 취재원을 관행화된 채널(routine channel)로 표현하고 기자들이 선호하는 채널로 첫째, 공식적인 절차(소송, 법적인 청문회) 둘째, 보도자료 셋째, 기자회견 넷째, 의도적인 행사(연설, 기념회) 등을 꼽았다.⁴⁾

그러나 관행화된 취재원에 대한 의존이 높을수록 언론이 취재원에 의해 이용될 위험성이 있다. 특히 관행화된 취재원으로 공식적인 채널을 선호하는 경우 그 취재원은 정보제공의 규칙

3) Pamela J. Shoemaker , Stephen D. Reese, Mediating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 on Mass Media Content, Longman, 1991, 김원용 (역), 『미디어사회학』, 나남, 1992, pp.156-158.

4) Leon V. Sigal, Reporters and Officials, D.C.Heath, 1973, p.20.

을 만들고 정보를 정보원에 유리하게 통제할 수 있다. '오프 더 레코드(off-the record)'나 '의도적 정보제공(leak)'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취재원이 관료적인 조직일 경우 취재원에 의한 규제와 더불어 기자의 취재활동이 관료조직에 적응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⁵⁾

(2) 출입처와 기자단: 공생적 거래 기제

일반적으로 취재 활동의 기본은 유용한 정보의 획득에 있다. 따라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어떤 취재 방식을 동원하느냐는 보도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우리의 경우 정부를 비롯한 공공 기관에서는 언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자실 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언론사들은 취재의 편의와 친목 도모라는 측면에서 각 출입처 별로 기자단을 구성,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취재 시스템에서 관행화된 출입처 제도란 언론이 정부 부처나 공식 기관 등과 같이 공공의 정보를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곳들을 주요 정보원으로 상정하고 아예 이를 담당하는 부서와 기자를 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아울러 기자단이란 출입처를 중심으로 기자들이 나름대로 일정한 조직 체계를 구성하여 정보 수집 활동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출입처와 기자단의 운영이 언론조직과 출입처간의 거래라는 관점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출입처 기자단은 기자들 간의 의도적인 정보 획득 및 거래의 담합 조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일단 보도가 가능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정보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만 한다. 그러나 언론 환경의 특성인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에 개별 취재를 통한 정보원의 확보는 큰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언론이 출입처 기자실과 기자단 제도를 이용하면 신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정보를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안정적으로 입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사의 담합을 통해 어느 한 언론사 기자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으며, 특종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낙종의 위험은 피하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기자단에 속한 기자들은 아침부터 기자실로 출근하여 거기에서 제공받은 발표물이나 홍보물 등 공식 통로를 통한 관급 정보를 제공받아 본사 데스크로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따라서 출입처 제도는 기자들에게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뉴스를 얻을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며 언론사에게는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출입처 기자단의 존재는 출입처에게도 정보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체로 공식적 관료 조직인 출입처의 경우 그 조직 활동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 이미지 관리를 통한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하여 언론을 통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그 직접적인 통로

5) Mark Fishman , Manufacturing the News, Vintage Books, 1980, p.43.

가 되는 기자 및 기자 조직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유로 기자의 공동 조직인 기자단의 존재는 출입처로서는 정보 거래 시 큰 효용성을 갖는다. 한마디로 정보 거래의 창구가 단일화되기 때문에 정보원은 관련된 정보를 유통하는 데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출입처가 특정 사건이나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정보원의 이익에 근거를 두고 일차적으로 정보의 공개와 은폐를 선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차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처리하는 데 기자와의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를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박동숙은 최근 출입처 기자실에서의 기자와 취재원간의 상호작용을 직접 참여 관찰하고 양자의 관계가 그냥 단순한 공생관계라기보다는 나름의 위계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작동하는 역동적인 관계임을 구체화하였다.⁶⁾ 즉, 출입처의 위상에 따라 기자들 간의 위계적인 권력 관계가 형성되며, 출입처에서 기자가 상대하는 취재원의 지위가 높을수록 그 취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기자의 지위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기자와 취재원은 각각 정보를 얻고 알리기 위해 ‘공생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지만 실제 이들의 공생관계는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취재원의 개인적·조직적 차원의 이익과 기자의 개인적·조직적 차원의 이익을 고려한 친분관계로까지 연결된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출입처와 기자단은 자원의존 관계에 있는 취재원과 기자간의 관계를 일종의 계약 관계로 전환시켜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공생관계를 제공하는 역동적인 기제로 기능한다. 즉, 출입처 기자단은 취재원과 기자 모두에게 정보수집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의 결집체라고 볼 수 있다.⁷⁾

그러나 이러한 공생관계는 양자 모두에게 거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데는 유용하지만 저널리즘의 본질이라는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기 쉽다.

먼저 정보의 편향성이 발생하기 쉽다. 정부나 공공 기관, 단체와 같은 제도화되어 있거나 관료적인 취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관급보도가 보도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다.

둘째, 촌지와 같은 비공식 거래 부문의 활성화라는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낳는다. 우리 언론계에서 촌지는 60년대와 70년대부터 관례화되어 온 비공식 거래 관행 중의 하나이며 언론인의 부패를 낳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기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촌지의 거래는 곧 정보의 비공식 거래로 연결되어 자유롭고 공개적인 정보 유통을 가로막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제한하게 된다.

셋째, 기자단의 존속은 편집국의 취재 시스템과 어울려 기사의 획일성과 내용의 몰개성화를

6) 박동숙, ‘취재원과 기자의 역학관계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언론학술논총2001』,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pp.229-282.

7) 김동규, ‘방송상품생산에 대한 조직경제론적 접근’, 『한국언론학보』 제 28호, 한국언론학회, 1992, p.84.

초래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처음엔 취재의 편의를 위해 형성된 기자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자들에게 집단적 사고(group thinking)를 낳게 하고 기자들은 그 떼거리에 속함으로써 낙종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육체적 수고도 덜게 된다.⁸⁾

결국 출입처와 기자단 운영은 취재의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보도의 본질인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 활동을 제약한다. 즉, 출입처 테두리를 벗어나는 기사의 발굴과 보도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하며 기자들 간의 담합과 자율 검열을 정당화시켜 소위 ‘떼거리 저널리즘(pack journalism)’을 유도한다. 이런 취재 관행은 결과적으로 발표저널리즘의 가장 큰 문제인 보도의 획일성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촌지나 향응과 같은 비공식 거래 관행은 취재원인 출입처의 정보 조작에 이용당함으로써 현실 구성의 변형이나 왜곡을 가져오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때로는 오보의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이라크 전 런치 일병 구출작전 오보사례는 언론이 취재원의 홍보 전략에 희생양이 된 경우이다.⁹⁾ 2003년 이라크 전 때 미국은 기자들을 미군막사에 배치해 보도하도록 하는 동행취재(embedded reporting)를 허용했지만 동시에 기자들이 미군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했다. 이 같은 취재방식의 실시는 전쟁을 영화나 오락게임처럼 극적으로 미화하려는 미 국방부의 미디어 전략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으며 미 해병대의 런치 일병 구출보도는 미 국방부의 전쟁 영웅 만들기 맥락에 편승한 오보임이 드러났다.

정보를 제공하는 취재원들의 대 언론 홍보 전략이 갈수록 정교해지는데 반해 언론이 이에 대응하여 사실 및 진실보도를 확보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신뢰할’ 만하고 ‘영향력 있는’ 정보원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거짓말을 하거나 편파적인 정보를 흘릴 경우 언론이 박자를 맞춰 오보를 낼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¹⁰⁾

3. 발표 저널리즘의 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론은 불확실성이 특징인 조직 환경의 특성상 안정적인 뉴스 공급을 위해 뉴스 망을 구성하며, 취재원으로 다양성과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특히 출입처와 기자실 운영이 체계적이며, 취재원을 밝히지 않고 과들이 있다.

(1) 신문보도

신문기사의 취재원의 분포나 취재 경로를 파악한 연구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분석 대상 시기 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8) 강준만, 『출추는 언론 비틀대는 선거』, 아침, 1992. p.16.

9) 최영재·김남두, ‘언론의 오보·편파보도 생산구조’, 저널리즘 평론 『오보』 통권 15호, 2003, pp.87-88.

10) 최영재·김남두, 같은 논문, p.88.

먼저 1990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중앙 6대 일간지의 정치, 경제, 사회면 스트레이트 기

정보원	부문	정치	사회	경제	총계
국 가 기 관	기사내용의 1차 주체	814 (97.0)	893 (43.5)	656 (66.8)	2363 (61.0)
	기사내용의 2차 주체	21 (2.5)	642 (31.2)	55 (5.6)	718 (18.5)
	기사내용의 주체와 무관	4 (0.5)	520 (25.3)	271 (27.6)	795 (20.5)
	소계	839 (97.8)	2055 (76.5)	982 (75.5)	3876 (80.0)
비 국가 기관		19 (2.2)	622 (23.2)	312 (24.0)	953 (19.7)
불명		0 (0.0)	9 (0.3)	6 (0.5)	15 (0.3)
총계		858 (100)	2686 (100)	1300 (100)	4844 (100)

* 괄호 안은 비율

사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통해 취재원 분포를 분석한 이원락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석 대상 4,844건 중 정부나 국가기관을 취재원으로 하는 소위 관급 기사가 3,876건으로 전체의 80.0%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¹¹⁾

좀더 구체적으로 이들 관급기사 중에서도 정부나 국가기관이 기사 내용의 1차 주체로 등장하는 기사가 2,363건으로 전체 관급기사의 61.0%에 달하고 있으며 기사내용의 2차 주체인 경우가 718건 8.5%이며 취재원이 기사 내용과 무관한 경우는 20.5%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정부와 국가기관이 주요 취재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기사내용의 핵심 주체로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 6개 일간지 기사의 정보원 분석

한편 박용규는 1993년도와 1995년도에 한국언론연구원이 수행한 기자들 대상 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사 작성시 취재원의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정도를 <표 2>와 같이 구체화하였다.¹²⁾ <표 2>에 의하면 1993년과 1995년 조사 결과 모두 기자들이 보도 자료에 ‘크게

11) 이원락, ‘한국신문의 관급보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언론연구회보』 제 14호, 한국사회언론연구회, 1991, pp. 33-38.

의존하는 경우'와 '다소 의존하는 경우'를 합치면 약 80%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곧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 자료에 의존하여 기사를 쓰는 경우가 정도만 달리할 뿐 조사대상 기자 10명 중 8명에 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기사작성 시 취재원의 보도 자료에 의존하는 정도

		1993년	1995년
크게 의존		100(18.0)	151(16.5)
다소 의존		347(62.2)	581(63.3)
별로 의존하지 않음		100(18.0)	160(17.5)
전혀 의존하지 않음		10(1.8)	23(2.5)
계		557(100.0)	915(100)

정보원	부문	정치	사회	경제	총계
국 가 기 관	기사내용의 1차 주체	814 (97.0)	893 (43.5)	656 (66.8)	2363 (61.0)
	기사내용의 2차 주체	21 (2.5)	642 (31.2)	55 (5.6)	718 (18.5)
	기사내용의 주체와 무관	4 (0.5)	520 (25.3)	271 (27.6)	795 (20.5)
	소계	839 (97.8)	2055 (76.5)	982 (75.5)	3876 (80.0)
비 국가 기관		19 (2.2)	622 (23.2)	312 (24.0)	953 (19.7)
불명		0 (0.0)	9 (0.3)	6 (0.5)	15 (0.3)
총 계		858 (100)	2686 (100)	1300 (100)	4844 (100)

←실장님! 이 표 없애주세요. 위에 것이랑 똑같은 것이예요. 여기서 없애면 뒤에 표 또 다 깨져요!!!

* 괄호 안은 비율

출처: 한국언론연구원, 『언론의 책임과 윤리; 전국기자 직업의식조사』 1993,1995,
박용규, '한국 신문의 취재보도체계 개선방안', 『언론연구』, 1996, p.97에서 재인용.

최근까지 우리 신문들은 취재원 수가 적고,

12) 박용규, '한국신문의 취재보도체계 개선방안', 『언론연구』, 한국언론연구원, 1996, p.97.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받는 취재경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연구로는 장호순■오수정의 취재원과 취재경로분석이 대표적이다.¹³⁾ 이들은 2001년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 4개 신문의 1면, 종합면, 정치면, 사회면, 경제면에 게재된 기사 1,503건을 대상으로 취재원과 취재경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취재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기사당 평균 취재원 수는 1.78개로 인물 취재원이 1.23명, 단체 취재원은 0.43개, 자료취재원은 0.13개였다.¹⁴⁾ 구체적으로 먼저 인물이 취재원인 경우 전체 1,842명의 인물 취재원 중 신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익명 취재원이 679명으로 36.9%를 차지했다. 전체 기사 중 인물취재원이 없는 기사가 572건, 1명인 경우가 523건으로 취재원이 1명 이하인 기사가 전체의 79.2%를 차지했다. 그나마 제시된 인물 취재원도 국가기구 관련 취재원의 비율이 57.7%를 차지했으며 일반시민이나 회사원, 노동자, 농민이 취재원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7.9%에 불과했다. 한편 단체 취재원이나 자료 취재원 역시 정부나 기업에 편중되어 있었다. 642개의 단체 취재원 중 53.4%가 국가기구관련 취재원, 기업이 19.6%이었고, 전체 195개의 자료 취재원 중 국가 기구의 제공 자료가 45.1%였고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이 16.4%, 학교나 연구기관의 제공 자료가 14.9%를 차지했다. 반면 시민단체나 시민단체가 제공한 자료가 취재원인 된 경우는 3% 미만에 불과했다.

둘째, 기사의 정보 입수 과정을 의미하는 취재경로 역시 취재 경로를 제시한 기사가 전체의 56.8%에 그쳤으며 그나마 제시된 취재경로도 한 기사당 1개에 그쳐 취재 경로가 다각적이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¹⁵⁾ 그 중에서도 취재 경로의 유형 분석 결과는 이들 신문들의 발표저널리즘 의존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보여준다.

먼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4개 신문이 가장 많이 의존한 취재 경로는 역시 정부 및 공공기관과 관련된 것이었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40.9%를 차지했으며 범죄수사나 국회 회의 등 정부의 공식절차나 행사가 차지한 비율이 10.9%,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경우가 13.1%, 자료나 보고서등 문서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경우가 12.7%였다. 반면 기자가 독자적으로 입수한 정보는 5.9%, 기자가 직접 목격한 사건사고 현장기사는 1.9%에 불과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런 경향이 신문사별로 차이가 없어 이들 신문사들이 출입처 기자실 등을 통해 취재 경로를 대부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13) 장호순■오수정, '한국신문의 취재원과 취재경로 분석', 『한■미 신문의 취재원 이용관행』 보도비평 통권7호, 한국언론재단, 2001, pp.9-52.

14) 장호순■오수정, 같은 논문, pp.36-39.

15) 장호순■오수정, 같은 논문, pp.41-43.

한편 이를 다시 지면별로 구분한 결과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한 정보, 행사, 보고서 자료,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한 기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면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취재경로를 통한 기사의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¹⁶⁾ 다만 1면■종합면의 경우 기자가 독자적으로 입수한 정보나 자료를 근거로 한 기사나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를 근거로 작성한 기사가 다른 면보다 많다는 점, 정치면의 경우 보도 자료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경제면의 경우 정부제공 정보와 문서자료를 근거로 한 기사비율이 높다는 점, 사회면의 경우 지면의 특성상 범죄 수사를 포함한 정부의 공식행사나 행정절차 관련 취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이 나타났을 뿐이다.

요약하면 이 연구결과는 최근까지도 한국 신문들은 취재원과 취재 경로가 모두 정부나 국가기관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런 경향이 신문사나 지면별로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취재원 수가 적고,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받는 취재 경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발표 저널리즘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전히 기능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2) 방송보도

방송 뉴스의 경우도 그 비율의 상대적 차이만 있을 뿐 신문과 유사하게 취재원과 취재경

취재경로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계
정부의 공식 행사 혹은 행정 절차 (범죄수사 포함)	22 (13.0)	22 (8.4)	22 (12.1)	27 (11.2)	93 (10.9)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한 정보	80 (47.3)	113 (43.3)	64 (35.2)	92 (38.2)	349 (40.9)
기자회견/기자 간담회	13 (7.7)	26 (10.0)	14 (7.7)	20 (8.3)	73 (8.6)
예정된 행사	12 (7.1)	27 (10.3)	20 (11.0)	27 (11.2)	86 (10.1)
보도자료/논평/성명	12 (7.1)	13 (5.0)	7 (3.8)	7 (2.9)	39 (4.6)
기타 자료, 통계, 보고서 등 문서자료	19(11.2)	26 (10.0)	25 (13.7)	38 (15.8)	108 (12.7)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	2 (1.2)	7 (2.7)	14 (7.7)	16 (6.6)	39 (4.6)
기자가 직접 목격한 사건·사고현장	3 (1.8)	7 (2.7)	1 (0.5)	5 (2.1)	16 (1.9)
기자가 독자적으로 입수한 정보나 자료	6 (3.6)	20 (7.7)	15 (8.2)	9 (3.7)	50 (5.9)
계	169(100.0)	261(100.0)	182(100.0)	241(100.0)	853(100.0)

16) 장호순■오수정, 같은 논문, p.42.

* 단위 : 개, 괄호 안은 비율

로가 다양하지 못하고 정부나 공공기관 등 공식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보여주는 연

채널	공식 채널	비공식 채널	자발적 채널	북한 뉴스	불확실
건수	783건(55.2%)	60(4.2)	497(35.0)	31(2.2)	45(3.2)

구결과들이 있다.

먼저 90년대 초반 강명구는 시갈(Sigal)의 정보채널 유형의 4가지 분석 범주를 기초로 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방송뉴스 프로그램인 KBS1 TV와 MBC TV 9시 뉴스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정보채널 유형을 분석하였다.¹⁷⁾ 그 결과 아래의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석 대상 1,416건 중 공식채널이 783건 55.2%, 자발적 채널이 497건 35.0%, 그리고 비공식 채널이 60건 4.2%, 불확실한 채널이 45건 3.2%, 북한 뉴스 채널이 31건 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신문별 취재경로 유형

<표 4> 정보채널 유형별 뉴스 분석

* 전체 기사 중 외신은 제외

<출처> 강명구, 『한국 저널리즘 이론』, 나남, 1994, p.398.

이런 결과는 국내 대표적인 방송뉴스프로그램인 9시 뉴스의 과반수 이상의 기사들이 주로 정부기관이나 공식적 기구와 같은 공식적 채널을 통해 수집되고 보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⁸⁾ 이는 방송사가 언론으로서 본래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비공식 채널을 통한 기사보도가 거의 없고 주로 제도화된 기관에서 짜여진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적 채널에 의존함으로써 신문의 경우에서 나타나 바와 같이 기사의 상당수가 취재원의 보도 자료에 의존하는 관급 뉴스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의 의미한다. 특히 공식 채널 중 보도 자료 의존이 공식절차, 기자회견, 비자발적 사건들과 같은 취재경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17) 강명구, 『한국저널리즘 이론』, 나남, 1994, pp.396-407.

18) 공식적 채널에는 재판, 청문회, 사건과 관련된 공식적 절차 등을 포함하는 공식절차, 정부기관 및 공식 기구의 정보제시방식인 보도자료, 정부기관 대변인들의 정보유출을 위한 발표나 당국자 주도의 인터뷰 등을 포함하는 기자회견, 그리고 하나의 기사를 위해 정부나 당국자가 개최하는 모임, 연설, 기념식, 연출된 집회 등 비자발적 사건이 포함된다.

TV 뉴스가 공식 채널에 의존하면서도 주로 폐쇄적이고 수동적인 채널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분석 결과에서 주목되는 점은 공식적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주제별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¹⁹⁾ 공식적 채널을 통해 기사가 보도되는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는 정치(77.9%), 경제■산업(65.4%), 법률(72.9%), 범죄■경찰(53.9%) 등인데 반해 자발적 채널이 활용되는 주제들은 교육(50.0%), 문화(57.6%), 인간 흥미(73.8%)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정치, 외교, 통일/북한, 법률, 군사■국방■경제■산업, 종교, 범죄■경찰, 복지■보건 관련 뉴스의 경우 공식적 채널을 통한 기사의 비율이 높고, 반면 자발적 채널을 통해 나오는 기사의 비율이 높은 것은 농업■농민, 기술■과학, 환경■공해, 교육, 문화, 스포츠, 사고■재난, 인간 흥미, 생활정도, 기타였다. 즉, 정치, 외교, 북한뉴스, 법률, 군사, 경제, 종교, 경찰 관련기사는 주로 해당 분야의 관련기관을 통해 취재가 이루어짐으로써 행정부 활동에 대한 취재가 주로 행정기관의 정보제공에 의존하고 있는 관행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취재 채널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최근의 연구는 2002년도 한국언론재단의 『정치뉴스와 의견의 다양성 연구』가 대표적이다.²⁰⁾ 이 연구는 2002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방송3사의 저녁 종합 뉴스(KBS 9시 뉴스, MBC 9시 뉴스데스크, SBS 8시뉴스) 중 정치 관련 뉴스를 대상으로 그 다양성 여부를 내용분석을 통해 측정하였다.

아래의 <표 5>는 그 중 정치 뉴스의 정보채널을 분석한 것이다. 이는 방송기자들이 정치 뉴스를 작성할 때 어떤 취재원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비공식 채널이 59.7%로 가장 많았고 공식적 채널은 38.6%로 나타났으며 방송사간의 차이는 별로 없었다.²¹⁾ 기존 정치 뉴스연구의 대부분이 정부 및 공공기관 중심의 공식채널 의존이 높은 점을 보여준 것과는 달리 비공식 채널 의존도가 높게 나온 점이 특징적이다.²²⁾ 여기서 비공식 채널이라 함은 취재원이 직접 사건의 대해 해설하는 배경설명, 비공식적 정보유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국회의원 개인, 전직관료, 일반 시민 등이 대부분이었다.

<표 5> 방송사별 정보채널

* 단위 : 방송사별 꼭지수, 괄호 안은 비율

19) 강명구, 같은 책, p.404.

20) 한국언론재단, 『정치뉴스와 의견의 다양성』 연구서 2002-07, 2002.

21) 한국언론재단, 같은 책, p.69.

22) 관련 연구진은 그 이유로 공식적 행사나 발표 등과 같이 논쟁이 되는 이슈가 없는 단순보도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는 점 그리고 분석 대상기간 내 정당 간 상이한 입장이 대립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여 비공식 채널로 기능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발적 채널의 비율은 모든 방송사에서 매우 낮게 나타나 방송의 정치뉴스 보도가 정부기관이나 정당 등 공식적 채널과 여야 의원 등 비공식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취재원이 다양하지 못한 폐쇄적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개선 방안

지금까지 언론 현장에서 발표저널리즘의 관행이 발달하는 이유와 그 현황을 기존 연구 성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러 실증 분석 결과들이 예시하듯이 한국 언론은, 매체별, 취재 영역별로 상대적 차이는 있지만, 취재원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등과 같이 제도화된 취재원 즉, 출입처 위주로 협소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취재 경로 또한 이들 소수 취재원이 제공하는 정보나 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발표 저널리즘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내재화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국내 언론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출입처 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미국 언론의 경우도 역시 정부와 엘리트계층을 주된 취재원으로 이용함으로써 취재원 선택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도 많지만²³⁾ 최근의 분석으로는 미국의 주요 언론감시단체인 FAIR(Fairness & Accuracy In Reporting)가 2001년도에 실시한 미국 3대 네트워크 방송뉴스의 취재원 분석이 좋은 예이

정보채널	KBS	MBC	SBS	전체
공식적 채널	467(40.0)	398(37.1)	244(38.5)	1,109(38.6)
비공식적 채널	678(58.1)	656(61.1)	382(60.3)	1,718(59.7)
자발적 채널	22(1.9)	19(1.8)	8(1.3)	49(1.7)
전체	1,168(100.0)	1,073(100.0)	634(100.0)	2,884(100.0)

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물의 92%가 백인이며 성별로는 85%가 남성이었으며, 정당 관련 뉴스의 75%가 집권당인 공화당원이거나 지지자들인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경우도 취재원을 ‘엘리트’ ‘백인’ ‘남성’이라는 사회 권력 집단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²⁴⁾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국내 언론의 경우 소수 출입처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23) 기존의 대표적 연구로는 L. Sigal., Reporters and Officials, D.C.Heath, 1973; Ericson R.V., Baranek P.M. & Chan J.B.L., Negotiating Control: A Study of News Sources, Univ. of Toronto Press,1983 참조.

24) 안계현(편역), ‘취재보도: 취재원을 통해 살펴 본 미국네트워크 뉴스의 편향성, 『Media Worldwide』 2002년 8월호, pp.50-51.

너무 높다는 데 있다. 이재경의 한·미 신문의 취재원 이용 관행 비교 분석에 의하면 미국신문들은 1개 기사당 평균 10.06개의 취재원을 이용하는 데 반해 한국 신문기자들은 1.75개에 그치고 있어 지극히 적은 숫자의 취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사 작성 시 사용하는 단어 수도 1/4 정도에 그치고 있어 한국기자들은 협소한 취재원과 단신 위주의 기사 작성이 관행화되어 있다는 것이다.²⁵⁾

기실 취재 현장의 기자들은 정부나 국가기구가 제공하는 각종 절차와 행사, 보도자료 등에 의존한 정보를, 그것도 익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마감시간, 기자 수의 한계, 한정된 지면, 출입처 기자실에 의존하는 취재보도 시스템 등을 자주 언급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기획 없이 아침에 기사거리를 결정해 마감시간까지 써야 하는 당일 제작시스템의 문제도 거론하고 한국의 권위적, 일률적 조직문화에서 권위 있는 고급 취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토로하기도 한다.

발표 저널리즘은 이와 같은 언론조직 내·외부의 여러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발표저널리즘 관행을 개선하는 작업은 그리 간단하지 않으며 단기간에 이루어질 일도 아니다. 특히 발표저널리즘의 주요한 인과적 기제인 출입처와 기자단 중심의 취재 관행은 그것이 갖는 조직 경제적 차원의 효율성 때문에 쉽게 폐지되거나 대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동안 대안으로 제시되어왔던 팀제, 전문기자제, 대기자제, 브리핑제 등과 같은 안들이 명분에 비해 취재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람직한 개선 방향은 기존 관행의 부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줌과 동시에 기자의 직업의식과 같은 저널리즘의 원칙을 다시 세워 발표저널리즘의 폐해 즉, 보도 자료의 오용이나 남용을 줄이는 일일 것이다.

먼저 환경의 개선이란 조직적 차원에서 취재원의 증가 및 다양화, 취재경로의 다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취재와 제작시스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신문의 경우 취재관행이 바뀌려면 지면제작 관행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²⁶⁾ 한국 신문에서 다양한 취재원을 활용하는 심층기사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단신위주의 제작이 관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신문과 방송이 뉴스의 주된 공급원이던 시절, 독자들은 신문에게서 조금이라도 빠르고 많은 뉴스를 원했기 때문에 자연히 기사를 많이 제공해야 했고, 그 결과 기사의 길이가 짧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온라인 저널리즘의 발달로 뉴스의 속보성 경쟁에서는 뒤지는 신문으로서는 이제는 속보성 단신기사에서 다양한 심층기사로 제작관행을 바꾸어야 한다.

25) 이재경, '한국과 미국신문의 취재원 사용 관행비교', 『한·미 신문의 취재원 이용관행』 보도비평 통권7호, 한국언론재단, 2001, pp.53-87.

26) 장호순·오수정, 같은 논문, p.50.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존 취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미 기존의 여러 연구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출입처 체제 대신 기자별 전문 분야로 취재영역을 구분하여, 기자들이 다양한 취재원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취재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²⁷⁾ 속보 위주의 단신기사에서 심층기사 위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취재시스템, 특히 출입처 기자실 체제로는 독자들이 원하는 다원적이고 심층적인 기사를 제공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디지털화가 발달하고 있는 취재 환경은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해 주고 있다. 과거 공중전화도 드물던 시절엔 기자들의 취재활동에 출입처 기자실이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급속하게 발달하는 취재 보도 테크놀로지는 취재원 근처에 기자실을 두고 상주하는 것은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안겨준다. 이동전화와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 어디서나 보도 자료를 받고,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데스크와 기자의 수시 연락이 가능해져 기자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 정당, 기관 기업에서 내보내는 각종 보도 자료는 발표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들 보도 자료가 기자의 전유물이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어디서든지 그리고 누구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현실에서 보도 자료에 의존하는 발표저널리즘은 저널리즘의 설자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다음은 취재 현장에서 무디어진 저널리즘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실천하는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저널리즘의 존재가치는 바로 진실 추구에 있다. 1947년 언론의 책임을 강조했던 허친스위원회의 보고서에 드러나 있듯이 저널리즘은 ‘사실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 즉, 사실은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사실만으로는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다. 사실로서는 정확하지만 실제로는 ‘허위’를 보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즉, 취재원이 기자에게 거짓을 말했다면 취재원이 한 말은 사실이지만 그런 사실에 기초한 보도는 진실이 아니다.²⁸⁾

최근 인터넷을 매개로 한 온라인 매체가 확산됨에 따라 정보의 사실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퍼오기’, ‘베끼기’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일반 사용자가 근거 없는 소문, 추측, 거짓 등을 진실과 구분해내기란 매우 어렵다. 저널리즘의 온·오프라인 경계가 무너질수록 정보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해줄 수 있는 기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취재원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하는 발표저널리즘은 그럴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아울러 검증의 규율(discipline of verification)을 다시 세워야 한다. 저널리즘을 오락, 선전, 픽션이나 예술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검증의 규율이다. 빌 코바치와 톰 로젠스틸(Bill Kovach & Tom Rosenstiel)은 보도과학의 지적인 원칙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

27) 장호순■오수정, 같은 논문, p.51.

28) 한국언론학회, 『대통령 탄핵관련 TV방송 내용분석』, 2004, pp.24-25.

다.²⁹⁾ 1) 존재하지 않는 것을 덧붙이지 말라. 2) 독자/시청자를 속이지 말라. 3) 방법과 동기에 관해 가능한 한 투명하라(투명의 규칙: Rule of Transparency). 4) 자신의 독창적인 보도에 의지하라. 5) 겸허하라(자신의 능력에 대해). 최근으로 올수록 취재 현장에서 이러한 검증의 규율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계 안팎의 공통된 지적이며 그 폐해는 ‘포르말린 통조림’ 보도나 ‘불량만두’ 보도 등에서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보니 보도의 객관성도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이용되고 있고 취재원의 정보를 검증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인용 저널리즘이 발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취재 현장에서 검증의 규율을 다시 세우는 일은 발표 저널리즘의 폐해를 줄이고 언론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있어 관건이 될 것이다.

29) Bill Kovach & Tom Rosenstiel, *The Elements of Journalism*, 2001, 이종욱(역), 『저널리즘의 기본 요소』, 한국언론재단, 2003, p.112..

< 참고 문헌 >

- 강명구, 『한국저널리즘 이론』, 나남, 1994.
- 강준만, 『춤추는 언론 비틀대는 선거』, 아침, 1992.
- 김동규, ‘방송 상품 생산에 대한 조직경제론적 접근’, 『한국언론학보』 제 28호, 한국언론학회, 1992, pp.69-103.
- 박동숙, ‘취재원과 기자의 역할 관계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언론학술논총2001』,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pp.229-282.
- 박용규, ‘한국신문의 취재보도체계 개선방안’, 『언론연구』, 한국언론연구원, 1996, pp.87-140.
- 안계현(편역), ‘취재보도: 취재원을 통해 살펴 본 미국네트워크 뉴스의 편향성’, 『Media Worldwide』 2002년 8월호, pp.50-51.
- 안병찬, ‘발표저널리즘 반성과 대안’, 관훈통신 73호, 2001, <http://kwanhun.com/knews>.
- 유재찬이민용, 『정부와 언론』, 나남, 1994.
- 이민용, ‘사회변화와 언론의 취재보도 구조’, 『언론학보』 14집, 한양대 언론문화연구소, 1995.
- 이원락, ‘한국신문의 관급보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언론연구회보』 제14호, 1991, pp.33 - 38.
- 이재경, ‘한국과 미국신문의 취재원 사용 관행비교’, 『한미신문의 취재원 이용관행』 보도비평 통권7호, 한국언론재단, 2001, pp.53-87.
- 장호순오수정, ‘한국신문의 취재원과 취재 경로분석’, 『보도비평』 통권 7호, 한국언론재단, 2001, pp.9-62.
- 최영재·김남두, ‘언론의 오보·편파보도 생산구조’, 저널리즘 평론 『오보』 통권 15호, 한국언론재단, 2003, pp.69-105.
- 한국언론재단, 『정치뉴스와 의견의 다양성』 연구서 2002-07, 2002.
- 한국언론학회, 『대통령 탄핵관련 TV방송 내용분석』, 2004.
- Ericson R.V., Baranek P.M. & Chan J.B.L., Negotiating Control: A Study of News Sources, Univ. of Toronto Press, 1983.
- Fishman M., Manufacturing the News, Vintage Books, 1980.
- Kovach B, Rosenstiel T, The Elements of Journalism, 2001, 이종욱(역), 『저널리즘의 기본 요소』, 한국언론재단, 2003.
- Shoemaker P.J., Reese S.D., Mediating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 on Mass Media Content, Longman, 1991, 김원용 (역), 『미디어사회학』, 나남, 1992.

Sigal, L.V., Reporters and Officials, D.C.Heath, 1973.

수사기관의 발표에 의한 오보와 면책범위

장 영 수

고려대 법대 교수

- 고려대 법과대학 동 대학원,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박사
- 저서 : 『민주헌법과 국가질서』, 『헌법총론』, 『기본권론』 등
- 논문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언론자유에의 구체화」
「대한민국 언론자유에의 현재와 새로운 과제」
「매스미디어의 발전과 기본권 보장」 외 다수

목 차

I. 문제상황과 언론의 책임범위에 관한 접근방법

II. 논의의 기초: 보도내용에 대한 언론의 책임

1. 민주국가에서 언론의 의의와 기능
2.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와 그에 대한 책임의 문제
3.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매체의 법적 책임

III. 보도내용에 대한 책임의 요건과 면책의 요건

1. 언론자유 내용으로서의 보도의 자유와 보도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
2. 보도내용에 대한 언론매체의 책임의 요건
3. 보도내용에 대한 언론매체의 면책의 요건

IV. 수사기관의 발표와 무죄추정의 원칙

1. 수사의 관행과 수사기관의 발표내용의 진실성
2. 헌법적 요청으로서의 '무죄추정의 원칙'
3. 무죄추정에 반하는 수사결과보도와 그 문제점

V.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보도의 방식과 그 문제점

1. 수사결과 발표의 진실성을 의제하는 보도태도의 문제점
2.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보도태도의 문제점
3. 단정적인 표현의 문제점

VI. 수사기관의 발표를 신중하고 공정하게 인용한 보도에 대한 면책

1. 언론의 과제와 중요사건 수사에 대한 보도의 불가피성
2. 수사기관의 발표에 대한 언론보도의 기본방향
3. 신중하고 공정한 보도에 대한 면책

VII. 맺음: 수사활동과 언론보도 사이의 긴장관계와 협조

I. 문제상황과 언론의 책임범위에 관한 접근방법

불량만두 파동과 같은 언론보도의 문제점은
상당부분 구조적인 것이다
(실장님 발문입니다. 편집에 따라 삭제해도 되는 발문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매체들 상호간의 경쟁체제를 전제한다. 즉, 다양한 언론매체들이 자유롭게 설립되고 활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사건들을 분석하고 보도하는 것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시민들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사건의 소개와 분석을 접할 수 있게 되며, 여러 매체들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기호에 맞는 매체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매체들의 경쟁상황은 자칫 매체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짐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성급하게 보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통해 언론수용자들의 눈길을 끌려는 태도가 문제되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검찰 및 경찰의 수사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 다시금 강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그것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불량만두' 파동 당시의 보도태도, 그리고 송두율 교수사건과 같이 세인의 주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에 더욱 눈에 띈다.

불량만두 파동에 대한 보도에서는 언론매체들이 수사당국의 협조요청에 따라 장기간 보도유예(이른바 엠바고)를 했던 점, 그리고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에도 언론매체들이 수사기관의 발표에 일방적으로 의존해서 보도했던 점이 문제되고 있으며, 송두율 교수 사건에서도 역시 객관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수사당국의 발표에 의존하는 보도태도를 취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도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한 비판은 적지 않다.

이러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언론보도의 문제점들은 일과성의 헤프닝으로 취급하기에는 부적절한, 상당부분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보도유예의 관행이 그러하고, 또 기자들이 독자적인 사실확인애 나서기보다는 수사기관의 발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행 수사절차 및 언론매체의 인적·물적 한계도 그러하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가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를 고려할 때,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원인분석과 더불어 개선안의 마련 또한 상당히 시급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가 반복될 경우에는 결국 언론에 대한 불신이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결과는 국민과 언론 모두에게 불행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하에서는 언론보도와 관련된 문제점들 가운데서 수사기관의 발표에 기초한 보도가 결과적으로 오보임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언론매체들이 져야 할 책임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보도내용에 대하여 언론이 져야 하는 책임(II)**을 일반론적으로 검토한 후,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에 대한 책임의 요건 및 면책의 요건(III)**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보도내용에 대한 언론매체의 책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수사기관의 발표에 기초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IV)**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칫 수사기관의 발표에 기초하여 피의자를 유죄인 것처럼 보도할 경우, 무죄추정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곧바로 **수사결과에 대한 언론매체의 보도방식의 문제점(V)**으로 연결된다. 수사결과에 대한 진실성을 의제함으로 인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은연중에 무시하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해결의 방향은 수사결과에 대하여 언론매체들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모아질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신중하고 공정한 보도에 대한 면책(VI)**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 논의의 기초: 보도내용에 대한 언론의 책임

1. 민주국가에서 언론의 의의와 기능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들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보의 유통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여론을 결집시켜서 국가권력을 통제하거나 사회의 부조리를 밝히고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¹⁾

특히 민주주의가 관철되는 과정에서 언론매체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²⁾ 과거 우리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언론매체의 설립이 국가의 인·허가권에 의해 통제되고 보도내용이 검열되던 시기는 민주주의의 암흑기였고, 결국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그러한 문제들도 점차 해소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언론의 역할과 비중으로 인하여 언론매체들이 일반 사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그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위가 인정되는 예가 적지 않다. 헌법상으로도 언론매체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³⁾ 언론의 공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2.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와 그에 대한 책임의 문제

언론매체의 역할과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언론보도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 또한 커졌다. 이러한 강화된 언론보도의 영향력은 국가권력을 통제함에 있어서는 유용한 측면이 있었지만, 일반 시민에 대한 언론보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았다.⁴⁾

1) 언론의 자유 내지 이에 기초한 언론매체의 의의와 기능에 관하여는 장영수, 기본권론, 2003, 344쪽 이하 참조.

2)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자발적 의사의 자유로운 표현과 결집을 가능케 함으로써 민주적 국가 질서형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장영수, 언론자유와 실현구조에 관한 서설, 언론중재 14권 2호(통권 51호, 1994.06), 19-35쪽 참조.

3) 언론기업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는 언론자유에 대하여는 이광진, 언론기업과 언론의 자유, 『한국헌법학의 현황과 과제: 금량 김철수 교수정년기념논문집』, 1998.10, 397-422쪽 참조.

4) 그 때문에 언론의 권력 또한 통제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으며, 이는 특히 독점적 언론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결합하여 언론의 내부적 자유에 대한 요청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가 회복하기 곤란할 정도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에서는 매체간 경쟁관계 때문에 충분한 사실확인보다는 신속한 보도를 앞세움으로 인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한편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중재 등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가 제도적으로 정립·확장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에서도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⁵⁾ 그 결과 최근에는 언론매체들 또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과 관련되는 보도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한 보도태도를 보이는 등 과거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도로 인한 인권 침해의 경우 언론매체의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미묘한 갈등이 존재(발문임!!!)

3.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매체의 법적 책임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중재결정 및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 정립된 바에 따르면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매체의 법적 책임은 다양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

보도대상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보호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이 이러한 인권에 대한 침해로 인정될 경우에는 반론보도, 보도금지의 가처분, 위자료를 비롯한 손해배상, 나아가 형사처벌까지도 그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⁶⁾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언론매체의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전히 미묘한 갈등이 존재한다. 그것은 한편으로 언론보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발언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과는 달리 그 파급효가 크기 때문에 보도대상자의 인권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보도를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에는 언론매체가 담당하는 공적 기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책임의 요건 및 면책의 요건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이광진, 헌법상 언론의 내부적 자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참조.

- 5) 언론피해의 구제제도 및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에 관하여는 양삼승, 언론피해구제대책과 최근 판례의 동향, 시민과 변호사 69호(1999.10), 74-81쪽; 오영권, 언론피해구제제도와 관련 판례, 언론중재 19권 2호(통권71호 1999.06.), 82-85쪽; 정웅태, 언론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민사법연구 7집(1999.01), 1-64쪽 참조.
- 6) 이와 관련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 및 법원판례의 동향에 관하여는 손동권,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과 형사책임, 언론중재 23권 3호(통권88호 2003.09.), 87-103쪽; 송영신, 방송에 있어서 반론권에 관한 연구 : 언론중재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1988; 엄동섭, 언론보도와 초상권 침해 -판례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18권 2호(통권67호 1998.06.), 24-37쪽; 이재진, 언론관련 명예훼손소송 추이 비교: 한·미·일 판례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23권 2호(통권83호 2002.06.), 37-51쪽 참조.

Ⅲ. 보도내용에 대한 책임의 요건과 면책의 요건

1. 언론자유와 내용으로서의 보도의 자유와 보도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

언론매체의 경우 취재, 편집 및 보도의 자유는 그 존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보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언론은 목소리를 잃은 가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보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보도내용에 대한 언론매체의 책임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언론보도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자칫 언론보도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왜곡됨으로 인하여 진실을 오도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막중할 것은 명백하다. 그 때문에 언론매체는 보도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보도내용에 대해서 언론매체가 그 진실성을 담보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은 언론매체의 속성상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취재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는 보도내용에 대한 언론매체의 책임을 인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2. 보도내용에 대한 언론매체의 책임의 요건

언론매체에 의하여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언론매체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① 보도행위와 관련하여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③ 손해가 발생할 것, ④ 보도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요건으로 인정된다.

먼저 보도행위란 언론매체에 의하여 일정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로서, 활자나 영상, 음성 등에 의한 사실의 적시, 논평, 그 이외에 초상이나 보도사진, 만화의 게재, 성명의 사용 등이 해당될 수 있다.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또는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도내용에 관한 언론매체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의란 어떤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보도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과실이란 그 보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것을 알지 못한 가운데 보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⁷⁾

손해의 발생은 피해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예컨대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회적 평가의 하락을 통해 손해의 발생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그밖에 본인의 승락 없이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사진 또는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손해의 발생이

7) 특히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문제되는 명예훼손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하여 그 보도되는 사실이 허위임을 알아야 한다거나 보도되는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관하여는 한위수,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인권과 정의 228호(1995.08), 45-62(53)쪽 참조.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보도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법원은 전통적으로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으나, 최근 간접반증설을 통해 인과관계의 인정을 확장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⁸⁾

3. 보도내용에 대한 언론매체의 면책의 요건

공공성과 진실성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보도내용에 대한 면책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발문 임!!!)

보도내용에 대한 언론매체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면책되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과 관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익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진실에 부합되는 내용일 경우 이를 보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즉, 공공성과 진실성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보도내용에 대한 면책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⁹⁾

공공성이란 국가공동체 전체 또는 다수인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어떤 사항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 가치판단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입증에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의 보도와 사실에 대한 논평을 달리 평가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¹⁰⁾ 하지만 논평이 피논평자에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기초로 하여 행해졌을 때에는 면책되지 않는다.

진실성이란 보도의 내용이 실제의 사실과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실제의 사실과 부합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수적인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¹¹⁾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언론매체 측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언론매체는 타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보도의 경우 공표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IV. 수사기관의 발표와 무죄추정의 원칙

1. 수사의 관행과 수사기관의 발표내용의 진실성

8) 이에 관하여는 김광삼,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침해에 관한 민사책임,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23쪽 이하 참조.

9) 특히 명예훼손과 관련한 형법 제310조에 기초하여 인정되었던 공공성 및 진실성의 요건은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민사법의 영역에서도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언론보도와 관련한 다른 영역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이은영, 명예훼손책임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과 공공성, - 대법원 1988.10.10 선고, 85다카29 판결 -, 민사판례연구 제12집(1990.04), 150-160(155이하)쪽 참조.

10) 이에 관하여는 장영수, 의견보호의 법리와 의견의 범위, 언론중재 23권 1호(통권 86호, 2003.03), 4-15쪽 참조.

11) 보도의 내용이 사실을 과장한 것일 경우에는, 그 과장의 정도가 문제될 것이다. 즉, 과장의 정도가 심각하여 사실과 다르게 인식될 경우에는 보도의 진실성이 부인될 수 있지만, 과장의 정도가 미세한 경우에는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종래 정부기관의 발표에 근거한 보도의 법적 책임 등이 문제된 예가 적지 않았다.¹²⁾ 심지어 국회의원 뇌물유사건이나 수서 사건과 같이 정부가 바로 비난의 대상인 경우에도 정부에 대한 채널 의존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면서, 보도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신문이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좀더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쪽에 편중된 정보소스에서 벗어나 채널 및 정보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¹³⁾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기관의 발표에 의존하는 보도관행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수사기관의 발표와 관련해서는 언론매체들이 독자적인 판단에 앞서서 수사기관의 발표 내용의 진실성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언론매체들의 범죄보도는 취재원이 수사기관의 발표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¹⁴⁾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론보도도 오보가 되는 것이다.

언론보도가 수사기관의 발표에만 의존했다가 오보가 되었던 예는 1989년의 공업용유지 사용라면 파동의 경우에도 있었고, 1998년의 통조림 포르말린 검출 사건의 경우에도 찾을 수 있는데, 최근의 불량만두 파동에서도 다시금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¹⁵⁾

2. 헌법적 요청으로서의 ‘무죄추정의 원칙’

현행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다. 즉 무죄추정의 원칙을 형사절차의 운용에 관한 원칙으로 국한시킬 것인지(이른바 형사절차 국한설), 아니면 법생활의 전영역을 지도하는 일반적 법원리로 이해하여 일체의 법생활 영역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범죄사실의 인정과 그에 수반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과할 수 없다고 볼 것인지(일반법원칙설)가 논란되고 있는 것이다.¹⁶⁾

그러나 “공소제기가 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된다고 할 것으로 가사 그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제한에 그치도록 비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며, 여기의 불이익에는 형사절차상의 처분에 의한 불이익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제한과 같은 처분에 의한 불이익도 입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¹⁷⁾을 통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 관한 것으로 넓게 해석되는 것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12) 이에 관하여는 안상운, 공적 자료에 의한 보도의 법적 책임, 언론중재 15권 4호(통권 57호, 1995.12.), 13-26쪽 참조.

13) 박종수, 한국신문의 기사 분석, 『언론의 윤리강령과 보도기준』(한국언론연구원 연구서 14), 1991, 203쪽.

14) 이에 관하여는 김옥조, 범죄보도와 언론윤리, 언론과 법 제3권 제1호, 2004, 175-224(202)쪽 참조.

15)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제5항은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6항에서는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가 인권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제3조 제5항과는 별도로 제6항을 두어 진실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도관행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16) 이에 관하여는 신동운, 무죄추정의 원칙(헌법재판소 1990.11.19. 선고, 90헌가48 결정), 헌법재판자료 4집(1991.12), 340-349(343이하)쪽 참조.

17) 헌재 1990.11.19. 90헌가48. 이후의 헌법재판소 판례들이 일관되게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5412 판결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국가의 수사권은 물론 공소권, 재판권, 행형권 등의 행사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고 그 신체의 자유를 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권질서의 중심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질서 내에서 형벌작용의 필연적인 기속원리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원칙이 제도적으로 표현된 것으로는, 공판절차의 입증단계에서 거증책임(學證責任)을 검사에게 부담시키는 제도, 보석 및 구속적부심 등 인신구속의 제한을 위한 제도, 그리고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금지 등이 있다”고 인정되고 있다.¹⁸⁾

3. 무죄추정에 반하는 수사결과보고와 그 문제점

단지 수사기관의 발표에만 의존, 피의자를 범죄인으로 단정하는 보도태도는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자유 범위를 넘어서는 것(발문 임!!!)

결국 수사기관의 발표에 의존한 언론보도의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과 이를 신뢰하고 진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한 언론매체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언론매체의 경우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의 발표를 신뢰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헌법상 요청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이와 결부되어 있는 피의자의 인권보호 필요성에 따라 언론기관도 진실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기관의 공신력에 대한 의존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정부기관의 통계자료 발표 등이 있을 때, 언론이 그 사실부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후에 비로소 보도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범죄사건과 관련된 수사결과에 있어서는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¹⁹⁾

18) 헌재 2001. 11. 29. 2001헌바41.

19)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1994.1.21. 선고 93나22236호 판결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가 추정되므로, 그 이전에 혐의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일용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인격의 존엄과 그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개인의 명예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그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지만, 헌법상 다른 권리나 제도, 즉 언론의 자유와 아울러 그와 표리의 관계에 있는 국민의 알 권리나 재판공개 원칙 등 공공의 이익이 더 우월한 경우도 많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언론기관이 확정판결 이전에 혐의사실을 보도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10222 판결에서는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 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공적인물이 아닌 사인(私人)의 경우 가급적 익명을 사용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보도기관은 수사기관과는 달리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조사에도 어

수사기관은 단지 그동안의 수사과정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 그것도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 발표할 뿐이고,²⁰⁾ 그것이 과연 진실과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법원의 판결을 통한 확인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다.²¹⁾ 더구나 헌법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사기관의 발표에만 의존하여 피의자를 범죄인으로 단정하는 보도태도는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²²⁾

V.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보도의 방식과 그 문제점

1. 수사결과 발표의 진실성을 의제하는 보도태도의 문제점

최근 문제되었던 언론보도들은 대부분 범죄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들이었다. 외국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의존도가 범죄보도의 가장 큰 오보

는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도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신중한 보도의 요청을 분명히 했다.

- 20)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와 관련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2.9.24. 선고 2001다49692 판결에서는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21) 그에 따라 언론매체의 범죄보도에 있어서도 익명성의 원칙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만 관계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그의 공적 역할과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한 신원의 공개가 인정될 수 있으며, 사인의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요건 하에서 공익적 필요성과 형량하여 신원의 공개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박용상, 범죄보도와 익명보도의 원칙, 언론중재 23권 3호(통권 88호, 2003.09), 67-86쪽; 23권 4호(통권 89호, 2003.12), 36-53쪽 참조.
- 22) 다만 피의자가 도주 피신하여 수사에 곤란을 겪고 있을 때에 시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라디오·텔레비전·신문지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라든가, 포악한 범인이 도주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의혹을 품게 되는 경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손창열, 범죄보도와 인권침해에 관한 형사적 고찰, 검찰 100호(1990.09), 362-466(438)쪽 참조.

원인으로 꼽히는 경우가 있지만,²³⁾ 우리 언론매체들의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의존도는 매우 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불량만두 파동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보도유예(이른바 엠바고) 요청에 따라 1개월 이상 보도가 지연되다가 뒤늦게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²⁴⁾ 보도과정에서도 일부 경찰이 제공한 화면을 사용하여 보도하는 등으로 인하여 언론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언론보도, 특히 사회적 파급효과 큰 범죄에 관한 언론보도의 존재의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의 전달에 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일방적인 보도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언론매체들이 경찰의 협조요청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정보의 전달을 장기간 미루다가, 보도유예기간 동안에 독자적인 사실조사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경찰의 수사발표가 있자, 이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여 보도하였다는 것은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²⁵⁾

2.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보도태도의 문제점

최근 문제되었던 언론보도들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취재원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앞서 지적되었던 것처럼 국내 언론매체의 수사관련 보도가 수사기관의 발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언론매체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의 발표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취재원을 밝히는 대신에 마치 기자가 직접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이다.²⁶⁾

이러한 보도태도는 선진외국의 언론매체들의 경우, 이미 여러 차례의 오보에 대한 경험 및 그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제외하면 기자의 직접 경험이 아닌 사실의 보도에 대해서는 취재원을 밝히는 것이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²⁷⁾과는 대조적이다.

23) 예컨대 일본에서는 범죄보도와 관련한 오보 원인 가운데서 가장 큰 원인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의존도가 높은 점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치열한 특종경쟁, 집중호우식 보도경향, 기자들의 인권의식 희박의 순서로 오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김옥조, 일본언론의 오보, 『저널리즘 평론, 오보』, 2003, 123쪽 이하 참조.

24) 엠바고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김옥조, 범죄보도와 언론윤리, 언론과 법 제3권 제1호, 2004, 175-224(179이하)쪽 참조.

25) 불량만두사건의 보도유예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어지자, 언론매체들은 과거 수사기관의 발표에 의존해서 보도했다가 법원에서 보도대상자들이 무죄판결을 받아 낭패 당한 전례를 엠바고 수용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기간동안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한 독자적인 취재는 없었고, 그 결과 나중에도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보도가 행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26) 이러한 현상은 범죄보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 제1항에서 “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한 밝혀야 한다”고 명시된 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특히 취재원이 수사기관일 경우는 취재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취재원을 밝히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한국언론2000년위원회에 의해 편집된 한국언론보고서(2000) 80쪽 이하에서 지적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7) 이에 관하여는 조용중, 최근의 사과, 사고(社告), 오보 정정의 몇가지 경우, 관훈저널 2002년 여름호(통권 83호), 278-288쪽 참조.

3. 단정적인 표현의 문제점

수사기관의 발표내용과 부합되는 사실관계 또는 대립되는 주장 등에 대해서 함께 보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발문임!!!)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존하여 보도를 하면서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기자 자신의 목격담인 양 보도를 하다 보니, 보도의 표현 또한 단정적인 경우가 많다. 그것은 유죄가 확정되기 이전에 용의자를 범인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범행과 관련해서도 수사기관의 발표에 의존해서 구체적인 범행을 확인된 사실로 간주하고 보도하는 것이다.

예컨대 2004년 중반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보도의 경우 “살인행각을 벌였다”, “현장에 불을 지르거나 시신을 잘라 야산에 묻는 잔혹함을 보였다” 등과 같은 단정적인 표현들이 적지 않게 사용되었다. 더구나 그것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용의자를 검거한 것에 불과한 상태에서 언론매체들이 앞서 나가면서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²⁸⁾

이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는 언론매체의 수용자들에게 정보를 간결하고 강력하게 전달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보가 잘못된 것일 경우에는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당사자에게 야기하게 된다.

선거보도의 경우 여당과 야당의 목소리를 함께 보도하는 것처럼, 범죄수사의 보도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의 발표나 보도에만 편향되지 않고 언론매체가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전문(傳聞) 내용의 보도는 이를 반드시 표시함으로써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VI. 수사기관의 발표를 신중하고 공정하게 인용한 보도에 대한 면책

1. 언론의 과제와 중요사건 수사에 대한 신속한 보도의 불가피성

언론매체들의 기본적인 과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세상이 좁아졌고, 각종 매체들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의 양도 엄청나게 증가함으로써 언론매체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신속하게 전달해야 할 과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국민적 관심을 끌 정도의 중요한 범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언론매체들이 중요사건의 수사에 접근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편집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수사기관들의 속성상 수사과정에 대해서 함구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의 발표 이외에 기자들이 수사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28) 현재 연쇄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소의 제기 이전부터 단순히 용의자로서 혐의사실에 대하여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객관적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일정한 범죄사실을 행한 범죄자로 단정하고 보도하는 태도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이와 연계되어 있는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의사실 자체를 공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언론매체들이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는 시기가 수사기관의 발표시점과 다르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언론매체는 수사기관의 발표 이외에 독자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 어렵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범죄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의 발표에 의존하여 신속하게 보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²⁹⁾

2. 수사기관의 발표에 대한 언론보도의 기본방향

**수사기관의 발표에 기초한 것임을 정확히 밝히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중립적인 보도의 경우
면책되는 것이 원칙(발문임!!!)**

이상에서 검토한 바를 종합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와 관련한 언론보도의 방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적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언론매체가 모든 수사상황에 대해서 예외 없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신속한 보도의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의 발표에 의존하여 보도하는 것도 인정될 수밖에 없다. 다만, 충분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한 독자적 취재가 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사기관의 발표에 의존한 언론보도의 경우에도 이를 독자적인 취재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되며, 수사기관의 발표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발표내용과 부합되는 사실관계 또는 대립되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보도의 태도와 관련하여 취재원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중하고 공정한 보도에 대한 면책

따라서 언론보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때에도 언론매체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보도하였을 경우에는 면책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³⁰⁾ 예컨대 수사기관의 발표에 의존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도 보도내용이 수사기관의 발표에 기초한 것임을 정확하게

29)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시간과 싸우는 신문보도에 오류를 수반하는 표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러한 표현도 자유토론과 진실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함께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데도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헌재 1999.6.24. 97헌마265; 헌재 2000.10.25. 2000헌마483).

30) 특히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표성수, 명예훼손 면책사유로서의 상당성 기준 - 언론의 주의 의무와 관련한 판결을 중심으로 -, 언론중재 20권 2호(통권 75호, 2000.06), 33-48쪽 참조.

밝히고, 이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보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9.1.26. 선고 97다10215,10222 판결에서는 “신문기자가 담당 검사로부터 취재한 피의사실을 그 진위 여부에 관한 별도의 조사 및 확인 없이 보도했으나 위 기사가 검사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행한 발표 및 배포 자료를 기초로 객관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같은 판결에서 “일간신문사 기자가 타 신문사의 기사 내용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만을 열람한 것만으로는 위 기자가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더욱이 피의자가 범행혐의를 받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직접 취재에 의하여 그 범행이 확인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사를 게재한 경우, 일간신문에 있어서의 보도의 신속성이란 공익적인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사를 게재한 것이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Ⅷ. 맺음: 수사활동과 언론보도 사이의 긴장관계와 협조

**언론매체와 수사기관 사이는 긴장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동행관계 내지 기능적 분업의 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있어(발문임!!!)**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비공개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관련당사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³¹⁾ 다른 한편으로는 증거의 확보 및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비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사활동의 속성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언론매체와 수사기관 사이에는 일정한 긴장관계가 형성된다. 즉 정보의 확보 및 신속한 전달을 목표로 취재에 나서는 언론매체와 수사의 보안을 위해 노력하는 수사기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이다. 만일 언론매체와 수사기관 사이의 신뢰가 약해질 경우에는 이러한 긴장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언론매체와 수사기관 사이에 긴장관계만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양자 모두 실제적 진실의 발견에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고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언론매체와 수사기관은 일종의 동행관계 내지 기능적 분업의 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³²⁾

그러나 최근 문제된 몇몇 사례들은 정상적인 협력관계가 아니라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났다고 평가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표에 일방적으로 의존함으로써 발생하였던

31)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관련당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특정기업이 수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그 기업의 경영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비공개수사의 중요성이 쉽게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32) 실제로 범죄혐의자의 수배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언론매체의 협조를 받을 경우도 적지 않으며, 거꾸로 수사기관의 활동을 언론매체에서 동행 취재함으로써 언론이 수사기관의 협조에 효율적으로 취재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였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기관의 내부적 반성에 기초하여 언론보도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제공한 것이건, 아니면 관련당사자가 제공한 것이건, 철저하게 검증된 값진 정보가 아니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더구나 언론보도가 오보로 밝혀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상실할 경우에는 언론매체들의 존립기초 자체가 위태롭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수많은 언론매체들의 무한경쟁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언론매체들은 설자리를 찾기가 더욱 어렵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정치적 폭로에 대한 중계보도와 언론의 법적 책임

이 재 진

한양대 신방과 교수

1. 문제제기

언론의 전통적 기능은 사실을 전달하는 기능이다.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즉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교육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시행하는지 등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런데 아마도 현대적 의미에서의 언론의 본질적 기능, 즉 언론이 꼭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아마도 권력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¹⁾ 언론의 감시비판은 권력을 가진 자나 그 소속집단의 무능과 부패를 파헤치고 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언론의 기능은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을 전달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지며 더 나아가서 정치적 문제가 되는 의제를 설정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까지 확장되어 있다. 그런데 언론은 사실의 전달과 여론수렴을 거치는 등의 정치적 현실의 매개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현실을 구성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다.²⁾ 여기서 언론은 사회적 논의를 구성하고 정치적 언어를 정교화 하는 등 세밀한 작업을 통해 정치인과 유권자가 함께 현실로서 받아들이는 경험을 조직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정치인이 반대 정당에 대해 어떠한 기자회견을 했다면 언제, 어떤 정치인이 어떤 언술 행위를 했다는 사건 자체가 사실적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정치적인 행위로서 주목을 끌고 언론에 보도되면 특정 시점에서 이 정치인의 언술이 일종의 '도발' '제안' '항복' '약속'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어 이러한 의미에 따라서 다른 행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언론의 정치적 현실구성능은 구성된 사실의 존재적 근거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존재적 근거보다는 그것에 기초한 일련의 의미구성 과정이 중요하고 이러한 의미구성이 곧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³⁾

다시 말하자면 언론은 중립적 기관의 역할이 아니라 "정치현장의 편파적 해설가 겸 심판이 되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⁴⁾ 언론의 보도는 권력투쟁의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기 보다는 자신의 시각과 관점에서 정치 세력의 동기와 목적을 분석하며 권력 투쟁의 현상과 의미를 해석한다. 이러한 언론기능의 확장은 정치적 보도에 있어서 여러 형태의 취재·보도 관행을 형성하게 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소위 '발표저널리즘'이다. 발표저널리즘이란 언론인이 사실확인이나 사실에 대한 분석 및 해석을 하지 않고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나 이에 대한 해석, 정의를 그대로 서둘러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발표저널리즘의 가장 큰 문제는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의 진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은 물

1) Blasi, V. (1971), "The checking value in the First Amendment theory." *American Bar Foundation Research Journal* 1977, p.538.

2) 양승목(1997). 언론과 여론: 구성주의적 접근. 『언론과 사회』 제17호.

3) 손태규(2004), 『서술적 보도와 해석적 보도』. 서울: 미디어연구소., 11-12쪽.

4) 같은 책, 13쪽. 팔로우(James Fallows)는 언론이 가족, 간호원, 교사 등과 같이 공적인 역할을 하고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단순히 그들의 일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따져야 한다고 꼬집는다. Fallows, J. (1996). *Breaking the news*. New York: Pantheon Books, Inc., p.9.

론이고 이러한 정보에 대한 분석과 해석마저도 취재원에게 크게 의존함으로써 단순한 전달자의 역할만 하고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이다. 이때 언론매체의 현실규정 역할은 포기하고 취재원, 특히 정치인, 정부의 고위관료, 검찰, 경찰, 대기업 및 유력기관의 전문가들이 현실규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언론인과 취재원의 역할이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오히려 발표저널리즘으로 인하여 언론이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에 의해서 이용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발표저널리즘은 비록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보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격권의 침해는 발표저널리즘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데 특정 정치인에 대한 '들추어내기식 사실폭로'를 중계보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정치적 폭로를 중계하는 발표저널리즘은 대체로 선거기간이나 정쟁이 치열한 시점에서 문제되는데 이 때에는 정책에 대한 보도보다는 특정 제보를 기초로 작성된 폭로형 보도가 난무하는 경향이 있다. 폭로의 내용은 주로 정치인의 뇌물수수나 인사 청탁과 같은 비리에 대한 것에서부터 이념공방, 지역주의, 인신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인 폭로가 누군가의 제보나 주위를 환기시키려는 전략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언론은 대개의 경우 엄밀한 확인과정은 생략하고 여기에 따옴표를 붙여서 일단 보도부터 하게 된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런 사건들은 문제가 된 당시에는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제보자와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만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당사자 간에 화해를 통해 소송이 취소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보도들은 현대가 이미지 정치시대라는 점에서 당사자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피해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확산시키고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나 냉소를 초래하며 궁극적으로는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역행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언론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정치인이나 공적 인물에 대한 제보나 폭로를 확인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보도하지 못하게 되면 비록 당사자의 기본권은 보호를 받게 되지만 언론으로서의 취재보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받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투표와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의 기회를 박탈하여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해를 근거로 이 글에서는 언론이 정치적 폭로나 특정 제보자의 근거가 없는 발언을 그대로 전제한 뒤 사후에 이것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이에 대한 제보자와 폭로자 그리고 언론 간의 책임의 범위와 그 한계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계보도와 관련된 국내외의 법리와 사례 등을 살펴보고 어떻게 비교형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언론이 정치적 제보와 관련된 보도를 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발표저널리즘의 원인과 언론의 법적 책임

우리 언론의 역사를 살펴보면 언론은 다른 기관의 입을 통해 발표된 것을 확정하는 역할을 해 온 것을 부정하기 힘들 것 같다. 예를 들어 올해 발생한 '불량만두' 파동에서 뿐만 아니라 송두율 교수 사건과 같은 공안사건이나 정치인의 비리혐의 관련 수사에서도 처럼 수사당국이 미확정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이 이를 그대로 받아쓰거나 과장·윤색하여 보도하는 관행의 문제점은 이미 오랫동안 지적되어왔다.

이러한 언론의 관행은 선거 때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다. 특정 시점에서 정치인들이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출처불명의 제보를 근거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비리 등을 폭로

내지 발표하고 이를 언론이 대대적으로 받아 중계하게 되는데 이는 상당한 후폭풍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정치적 폭로를 중계하는 발표저널리즘의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이 본질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제설정기능(agenda setting)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의제설정의 주도권을 언론이 아닌 발표자가 맡게 되어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을 언론의 적절한 손질을 거치지 못하고 발표자의 시각에 의해 끌려가게 되어 본질적인 측면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의제설정의 시기나 방향도 정치적 폭로를 담당할 사람들의 손에 맡겨져 버린다. 즉,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핵심적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의제설정'의 주도권은 발표자에게 넘어가고 언론보도는 획일화되며, 그 결과 독자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당하게 된다.⁵⁾ 뿐만 아니라 발표를 통한 정보에는 그 정보에 대한 해석의 방향까지 심어져 있기 마련이어서 의도성을 띤 정보의 대량유통으로 인한 여론조작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은 언론은 정치적 폭로자의 의도를 알면서도 홍보자의 역할밖에 못하는 신세가 된다고 하겠다. 한국의 경우 발표저널리즘의 병폐는 몇 차례 군사 독재 정권을 거치는 동안 언론이 정통성 없는 정권의 발표를 대서특필해 주고 그 답례로 이권을 챙기는 과정을 통해서 고착되었다고 한다.⁶⁾ 사실 기자들이야말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언론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타이밍을 시의적절하게 맞추어 전달해야 한다. 그런데 왜 이처럼 정치적 폭로의 단순한 중계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일까?

첫째, 이는 무엇보다 언론이 낙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연유한다. 어떤 유명 정치인이 어떠한 목적이나 계기로 정치를 폭로를 단행할 때 그 사실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의심 없이 보도하는 것은 나중에 오보가 되어 사과하거나 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더라도 기사를 보도하지 못해서 무능함을 질타당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잘못된 인식의 결과이다.

둘째, 출입처의 공보담당관들의 보도자료 등에 의지한 소극적인 취재관행으로 인하여 언론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⁷⁾ 다시 말하자면 기자실 제도나 정치권력과의 유착 등으로 편리하게 취재보도를 하게 되면서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적인 취재보도기능은 퇴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기사를 발굴하고 취재원을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포기하면서 최근에는 전문성을 갖춘 언론인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고 한다.

셋째, 언론의 전문성의 부족이 발표저널리즘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또 다른 이유이다. 즉, 발표저널리즘은 정보 내용의 판단이나 평가보다 '그런 발표가 있었다, 발언이 있다, 발표의 예고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따로 전문가에게 민첩하게 조언을 구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보인다.

넷째, 무엇보다 언론인들이 사실의 진위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코바크와 로젠틀(Kovach & Rosentiel)은 그들의 저서에서 언론의 사실 확인 작업이야말로 언론을 언론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사실 확인의 원칙'(discipline of verification)이야말로 저널리즘을 오락, 선전, 허구 또는 예술과 구분하는 요소라고 피력한다.⁸⁾ 이들은 오락은 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선전은 설득과 조작에 초점을 두며, 허구란 진실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개인적 인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나리오에 집

5) 장호순(2004). 『언론의 자유와 책임』. 서울: 한울 아카데미, 224쪽.

6) 김정기(1999). 『우리언론의 숨겨진 신화개기』. 서울: 한겨레신문사, 14쪽.

7) 같은 책.

중하는 반면 저널리즘만이 바로 현재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가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언론인들의 게으름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즉 언론인들이 게을러지면서 실제로 거리를 누비며 발로 뛰는 취재를 하기 보다는 출입처를 통해서 편하게 기사거리를 제공받는데 익숙해지면서 전통적인 기자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언론2000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취재원의 경우 약 93%가 취재기자들에게 통조림 뉴스(canned news)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통조림 기사를 언론이 광고하는 듯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⁹⁾

여섯째, 기자직의 사사화(私事化) 현상과도 연관되어 있다. 기자직의 사사화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이기적 사사화로 가족 지향적이며 개인 지향적인 성향을 말한다. 예컨대 기자들이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보다는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기자직을 선택하고 수행하는 성향, 다시 말해 봉급생활자에 안주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공익성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기자들의 고발정신, 문제의식, 비판의식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일곱째, 디지털 정보 네트워크의 급속한 보급에도 원인이 있다. 현재까지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대상이었던 정부, 기업체, 지자체, 시민사회가 저마다 스스로 정보를 만들어 발신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처럼 어디서나 누구나 다 정보를 보내고 상대방과의 의견교환이 가능해진 현재 발표저널리즘에 의존하는 취재관행은 저널리즘의 설 자리를 언론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여덟째, 언론 내부의 구조적 요인이 문제 된다. 예를 들어 기자의 전문성 부족, 취재 시스템의 문제, 인력 부족, 그리고 관료와 기업 등 기성권력의 홍보강화 등의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 특히 기자들의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공공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 참여하려는 자발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공공문제에 대한 취재의 경우 문제의식 없이 넘어가게 된다.¹⁰⁾ 기자들에 대한 한국언론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기자들은 정확한 취재가 가장 중요한 취재원칙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실행은 못 미치고 있으며 두 번째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중립적 보도조차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이렇게 여러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발표저널리즘은 어떠한 해약을 가져오는가? 이에 대해 조용철·김진홍·송정민은 기자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발표저널리즘과 같이 단순히 받아쓰거나 중계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권력과 물질이 소수에 독점되었던 전근대적인 시대에는 정보가 권력자와 부자들의 손에 있었으며, 이들이 거짓말을 해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지만, 과학의 발달과 정치적·경제적 민주화로 인하여 정보의 독점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말만이 무조건 진실이고 뉴스일 수는 없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이들은 받아쓰지 말라는 것은 취재원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말라는 뜻과 함께 이들의 말이 절대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과 함께 사실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¹²⁾

8) Kovach, B. & Rosenstiel, T. (2001). *The elements of journalism*. New York: Crown Publishers, p.71.

9) 한국언론2000년위원회(2000). 『한국 언론의 좌표』. 서울: 관훈클럽.

10) 이민웅(2002). 좋은 뉴스의 으뜸가는 조건으로서 진실 보도: 사실, 사회적 구성, 진실보도. 『언론과 사회』, 제32호; 이민웅(2004). 『저널리즘/위기·변화·지속』. 서울: 나남.

11) 한국언론재단(2003). 『한국의 언론인 2003: 제8회 신문·방송·통신사 기자 의식조사』. 서울: 한국언론재단.

정치적 폭로의 단순한 중계는 일차적 규정자가 언론이 아닌 취재원이 됨으로써, 취재원의 의도와 때로는 거짓이 녹아들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즉, 마치 독이 들어 있는 깡통(can)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이를 소비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1922년 리프만(Lippman)이 그의 유명한 저작인 “Public Opinion”에서 한 ‘거짓을 알아 낼 수 있는 정보가 없는 사회는 자유가 없다’는 주장에서 잘 알 수 있다. 즉, 언론은 정치권력의 거짓을 파악하고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 신문발행인들이 현실을 똑바로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분노한 여론이 의회를 통해 도끼를 들고 달려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런데 언론이 이러한 검증의무를 도외시한 채 단순히 정치권의 입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은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¹³⁾

한국의 경우 이러한 측면에서 발생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몇몇 사건들을 간략히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치적인 차원의 소송은 중간에 당사자 간의 화해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럼에도 과연 언론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유사한 판례를 살펴봐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3년 1월 한나라당이 한인옥 씨의 10억 수수설과 관련하여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기양건설 상무와 시사저널 측을 상대로 낸 이 사건 소송에서 “이씨는 1억원을 배상하되 이 중 5,000만원은 시사저널이 함께 책임지라고”고 판결했다. 법원은 “당시 기사는 이회창 후보와 한인옥씨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중요한 대선을 앞둔 한나라당의 명예도 훼손했다”며 “기사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진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씨의 주장에만 의존해 단정적으로 보도해 위법성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2003년 11월 30일 “정대철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나해 말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부인인 한인옥 여사가 기양건설의 돈 10억원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고 주장하며 민주당 관계자 등 20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었다. 한나라당은 당시 한 여사에 대한 기양건설의 10억원 제공 의혹을 제기한 기양건설 전 상무 이00 씨 및 민주당 관계자 13명, 그리고 관련 기사를 보도한 시사저널과 한겨레21 관계자 6명을 고발대상에 포함시켰다. 시사저널 등은 기양건설 관계자의 폭로가 있자 이를 받아서 보도하였는데 기양건설이 부천시 범박동 신양촌 재개발 사업권을 차지한 의혹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법원이 비록 그 내용이 공익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성 입증이 가장 요구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보도에 있어 내용의 진실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이미 1998년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된 바 있다. 대법원은 1998년 한국통신 노동조합과 노조 간부인 도00 외 4인이 박홍 전 서강대 총장과 중앙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박홍은 손해배상하고 중앙일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¹⁵⁾ 여기서 김정일의 사주를 받아서 파업을 했다고 발표한 피고 박홍과 관련 “피고 박홍이 한통 노조원들의 농성사태가 북한이 조종한 것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노동조합은 물론 그 핵심간부들인 원고 도00

12) 조용철, 김진홍, 송정민(2003). 『취재보도론』. 서울: 법문사.

13) Lippmann, W. (1922). *Public opinion*. New York: Free Press.

14) 국민일보, 2004년 4월 22일자, 4면.

15) 대법 1998.10.27. 선고 98다9892 판결.

외 4인이 북한의 조종을 당한 것처럼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저하시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히며 “원고 도00 외 4인의 성명을 특정지어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표현 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표현이 원고 도00 외 4인까지 지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정되지도 않은 피해자에 대해 배상을 명한 것이거나, 이중으로 배상을 명한 것이므로 위법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원고들의 피고 중앙일보사에 대한 상고에 대해서는 “피고 중앙일보가 원고들이 북한의 조종을 받아 성당과 사찰에 들어가 농성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 박홍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논평 없이 그대로 게재한 진실한 보도라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명예훼손의 범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1995년 파업당시 주요 중앙일간지가 일제히 박홍 당시 서강대 총장의 발언을 인용, 한통 노조원들의 농성이 북한의 사전 조종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자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고,¹⁶⁾ 중앙일보의 경우 원고들이 정정보도문을 1면에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여 불성립되자¹⁷⁾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1, 2심에서 법원은 피고 박홍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리고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는 법원이 중앙일보에게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¹⁸⁾

발표저널리즘이 문제가 된 또 다른 사건에서 사법부는 언론이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기 보다는 독자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도록 보도하는 경우 언론의 배상을 명하였다. 2003년 1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는 한나라당이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지난 해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이재오 의원이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마이뉴스와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마이뉴스측에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오마이뉴스는 작년 한나라당이 김대업 테이프가 조작됐고, 이에 관한 물증과 제보자까지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금모 씨에게 테이프 조작 증언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했다고 보도하는 등 김대업 테이프가 한나라당의 조직적인 공작정치의 결과라는 인상을 줘 한나라당 및 이재오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¹⁹⁾

법원은 “당시 기사는 한나라당이 이회창 부부의 병역비리(병풍) 확산을 막기 위해 금씨에게 기자회견을 강요하고 조작증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등 공작정치를 했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표명했으므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대업 테이프의 조작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과 국회의원의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한 공익성은 인정되나 진실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씨는 2002년 9월 한나라당에 “내가 김대업 테이프 조작에 가담했다”며 기자회견을 약속했다 어긴 뒤 민주당 인사와 오마이뉴스 기자를 만나 “한나라당이 조작증언 대가로 3,500만원을 줬다고 말했으며 오마이뉴스는 2002년 12월 인터넷과 주간지에 한나라당이 김대업 테이프가 조작이라는 양심선언을 요구했다는 의혹 기사를 보도했다.

16) 95서울중재166-170.

17) 95서울중재169.

18) 1995. 12. 30.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반론보도청구의 경우에도 그 청구명이 정정보도청구였다. 당시 게재된 정정보도문은 사실은 현재의 반론보도문이다.

19) 세계일보, 2003년 11월 13일, 8면.

언론의 정치보도의 구태는 여러 영역에서 드러나지만 아직도 전체적으로 보면 언론이 정치권이나 검찰 발표를 따라가는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에 대해 보도하는 수많은 기사들이 '~라고 주장했다', '~으로 알려졌다' 또는 '~라고 전해졌다' 식의 기사로 지면을 채우고, 정치인들의 정치적 폭로에 가까운 일방적인 주장을 단편적으로 나열하는 데 그쳤다. 이 경우 기자는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정보에 대한 분석과 해석마저도 취재원에게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단순 전달자의 구실을 하기 때문에 부딪쳐야 하는 문제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것이 국가원수에 대한 폭로이다.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의혹 폭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3년 8월 30일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노 대통령이 각종 측근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해 노 대통령을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김 의원은 장수천 사건, 용인 땅 매매 의혹, 대통령 친인척 부동산 투기의혹 등을 제기하여 노 대통령은 물론 여타 관련자들로부터 총 2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상태였다. 김 의원은 언론에 대해 자신의 주장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으며 검찰은 사실을 은폐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기존에 밝힌 것 이외에도 거제도 국립공원 내 별장 신축 특혜 등 몇 건의 논란 등을 추가로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노 대통령이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언론사와 야당을 상대로 전략적인 봉쇄소송을 제기한 것은 역대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부도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2003년 8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 해 9월 "대통령 재임 도중에 소송을 진행하면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다"며 소송절차 중지 신청을 재판부에 냈고 중지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법 민사 26부는 "노 대통령이 소송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제시한 사유가 민사소송법상 소송 중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노 대통령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한 재판을 진행해 판결 선고를 할 것"이라고 밝혀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동아, 조선 등 4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가 시작되게 되었으나 노대통령은 이를 취하하기로 하였다고 한다.²⁰⁾

이러한 사건들은 언론이 특정 제보자의 근거 박약한 발언을 사실확인 없이 그대로 전제한 뒤 사후에 이것이 허위로 밝혀져 이에 대한 제보자와 폭로자 그리고 언론 간의 법적 다툼이 생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언론의 입장에서 정치인들의 폭로성 주장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이미 국민들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가 되기 쉽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과거 사례를 보면 폭로식 기사는 선거가 끝나면 거의 대부분 바로 다음날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 버린다. 근거 없는 폭로전을 중계보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경마저널리즘과 같다. 언론인 또한 단순히 인용부호를 했다고 면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보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회견내용이 잘못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보도의 핵심은 발표내용의 사실 여부이다. 발표 당사자가 누구이든 근거 없는 주장은 기사화될 수 없다. 선거 후에 폭로식 기사는 사라지지만 이 때문에 발생하는 소송은 남게 된다.

3. 외국 사례 분석

1) 일본의 경우

20) 경향신문 2004.6.14. 2면.

‘발표저널리즘’이란 용어는 일본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조작된 저널리즘’의 위험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²¹⁾ 발표저널리즘 문제를 일본에서 처음 제기한 이는 <교도통신>의 편집주간과 중역을 거친 하라 토시오(原壽雄)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객관보도를 다시 본다’라는 글에서 발표저널리즘을 소개하면서부터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하라 토시오는 “문제는 발표를 객관적 사실로서 쓴다는 ‘발표저널리즘’인데 정보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속보적 뉴스가 한층 강화되었고 흘러 전하는 객관보도가 점점 그대로 통하고 있다. 정보내용의 판단이나 평가보다는 우선 그러한 발표가 있었다, 발언이 있다, 발표의 예고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의거하여 보도하며 그 정도도 강해지고 있다. 기자 또한 발표의 일상화에 지나치게 익숙해져 뉴스원의 확인을 태만히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속보’가 요구되는 시대의 위험성이 그것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간파하였다.

하라 토시오는 1979년 12월 『신문연구』 특집 ‘70년대의 검증/80년대의 좌표’라는 주제로 “발표저널리즘 시대의 저항”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일방적 발표보도는 원래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없으며 발표저널리즘이라는 조어에 따옴표를 붙여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발표저널리즘에 대한 대처방안이 곧 정보관리나 정보조작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1986년에 『신문연구』 2월호에 다시 발표한 논문에서 정치가를 비롯하여 경제계와 관청의 수뇌가 한 한두 마디 발언이 그대로 뉴스가 되어 국내외에 흘러 다닌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이런 종류의 발표 또는 발언이 모두 뉴스성(가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발언이 의도와 동기 없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볼 때, 그 숨은 의도와 동기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보도한다는 것은 정보원의 정치적 동기 또는 상업적 이기주의에 놀아나는 셈이 된다고 경고하였다.

그는 언론인이라면 학자의 연구발표조차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의학 관련 학회 리포트의 경우에도, 제약회사가 스폰서로 연구비를 대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 홍보 기사를 쓰게 될 때가 가끔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설명에서 더 나아가 1987년에 하라 토시오는 “신문기자의 처세술”이라는 글에서 발표저널리즘의 문제를 총정리하면서 그것을 객관보도의 문제로 승화시켜 거시적으로 다루었다. 그는 객관보도의 문제로 언론이 정보조작의 무기로서 뉴스원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점과 기사가 표면적·피상적·단면적·획일적으로 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발표를 기다리는 것이 일상화 되어 ‘생각 없는 기자’를 양산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일본은 언론계 내부에서도 발표저널리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마이니치신문>은 1985년 6월 23일자 ‘미디어 정보’라는 특집 기사를 싣고 발표저널리즘의 문제를 나름대로 깊이 다루면서 취재원이 기자클럽을 역이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경고하였다. 신문은 “뉴스원의 발표공세 때문에 기자들은 문자 그대로 기자클럽을 한시도 비울 수 없는 족쇄에 묶이고 이러한 악순환으로 기자클럽 발 기사는 신문마다 엇비슷하게 평균화되어 깊이가 없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고드는 데 소홀하게 된다”고 보도하였다. 예를 들어 문부성 기자클럽은 연간 200건이 넘는 발표를 소화하고 있으며, 도청의 경우에는 발표가 연간 300건에 이른다. 일본의 기자클럽은 많은 보도가 기획된 발표에 의존하는 소위 ‘발표 절임’ 상태에 있다.

21) 김옥조(2003). 『미디어 윤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308쪽(하라 토시오(原壽雄)는 1979년 발표저널리즘이라는 암이 객관성과 연결되어 한층 더 우려해야 할 사태가 초래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문제는 발표저널리즘의 관행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1975년 5월 9일에 발생한 한 엘리트 은행원을 자살하게 만든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당시 일본 신문들이 도쿄대학을 나온 미쓰이은행 차장이 어린 딸을 굶겨 죽였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1976년 1월 유죄판결을 받은 날 밤, 하리가야 히로시란 42세의 이 중견 은행원은 전철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그의 자살은 발표저널리즘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본의 한 언론인이 이 사건을 추적하여 고발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아사히신문> 편집위원인 게이치로는 1976년 '어느 사건기사의 잘못'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내었고 이는 『조사실보』와 편집국보 『연필』에 실렸으나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기자 출신 평론가 주이치로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문예춘추』(1977년 1월호)에 '지점장은 왜 죽었나'란 제목의 글을 발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비정한 아버지가 지체아인 둘째 딸을 굶겨 죽였다고 보도한 것은 실제로는 언론이 경찰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판과정을 거치면서 차츰 진실이 드러났지만 당시 신문은 실체에 대해서 한번도 속보를 쓰지 않았고, 판결기사가 신문에 실렸지만 당사자는 이미 전차에 투신하여 목숨을 끊은 후였다. 『문예춘추』의 기사는 심도 깊은 조사를 거쳐서 비정한 아버지 상은 실제로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먹을 것을 주어도 받아먹지 못하는 아이 때문에 번민하는 아버지의 상을 신문은 전달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일본 신문들은 태연하게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정보에 달려들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이면에는 '객관주의'라는 보도관행이 깔려있다. 일본 신문들은 그 발표되는 사실이 진실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조사해 보려는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 히키다는 보고서에서 발표저널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찰발표내용을 반드시 의심해 보고 현장에 가든지 관계자를 만나서 사건에 대한 뒷받침 취재를 하고, 부족한 재료로 무리하게 이야기 줄거리를 만들지 말며, 경찰이 제공한 정보라는 것을 밝혀 '경찰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든지 '이상이 경찰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는 표현을 더 많이 반복해서 쓸 것을 권유하고 있다.

아울러 저널리즘 관행을 과감히 깨야 한다고 지적들도 많다. 일본의 3대 신문의 정치면은 똑같이, 사실을 중립적 태도로 보도한다.²²⁾ 흥미로운 점은 한 가지 쟁점에 양쪽의 견해를 이용하는 미국 신문들과는 달리 일본 신문에는 정부관리들의 의견이 거의 실리지 않는다. 일본 언론은 의제설정 기능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실제 의제를 설정하는 관리들의 행동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한다.²³⁾ 기자클럽 같은 취재방식으로 인해 틀에 박힌 취재관행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행정부의 정책 과정에 대해 깊이 있으면서도 센세이셔널하거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기자클럽은 신문별로 차이 없는 보도를 조장하고 기자들이 정부관리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만든다. 일본 언론인들은 기자클럽 이외에 정부의 자문기구인 각종 심의회에 참여함으로써 중립적 관찰자의 위치와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책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²⁴⁾

22) Krauss, E. (2003). Journalism and press-government relations in Japan: Facing strains or opportunity? *Japanese Media Review*, October 3.

23) Hamada, Y.(2002). Doing public journalism in Japan: The practices of Asahi Shimbun. YourSITE.com, July 29. Retrieved November 7, 2004 from <http://www.imdp.dp.org/artman/publisher/prntr>.

24) Nomura(2003). How the Japanese press became lapdogs instead of watchdogs. *Japanese Media Review*, September 5.

2)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정치제도의 수준이나 정치보도의 수준이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이 정치를 멀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적은데 이는 정쟁과 정략을 강조하는 언론보도 탓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많다. 즉, 혼란한 정치판에서 정치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객관성'이라는 미명 하에 그대로 중계하는 보도현실에서 유권자들은 등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정치 선진국에서조차도 국민의 77%가 자신들이 매일 접하게 되는 뉴스에 대해 상당한 정치적 편견이 있다고 대답하였다는 연구가 있다.²⁵⁾

잘 찾아보기 힘들지만 미국에서의 전형적인 발표저널리즘의 폐해로는 1950년대의 조셉 매카시(Joseph R. McCarthy)의 매카시즘(McCarthyism)을 들 수 있다. 1950년까지 주목받지 못하던 초선 연방상원의원이었던 매카시는 같은 해 2월 9일 공화당 선거유세차 들른 웨스트 버지니아주 휠링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그 지역의 공화당 부녀회원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미국무부에 2백5명의 공산당원이 숨어 있고 자신이 그 명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충격적 발언을 AP 통신이 전국에 알렸고 1950년도에서 1960년도까지 미국 지식인 사회를 혼란의 폭풍 속으로 몰아넣었다.²⁶⁾

매카시는 자신에게 동조하는 일부 신문의 과장된 보도를 십분 이용하였다. 그는 정보관련 기록의 '반역'을 '반역자'로 묘사하고 '피의자'는 '중요한 피조사자'로, '러시아인 이름'을 가진 세 명'은 '러시아인 3명'으로, '고위관리'는 '고위관리들', 그리고 '첩보원'은 '첩보원들'로 조작하였다. 또한 소련의 '포섭대상'은 '소련의 첩보원', '친공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사람은 '공산주의자'로 바꾸어서 발표했으며 언론은 이를 그대로 보도하였다. 매카시는 연일 시간과 장소를 바꾸어 가며 적대 세력과 무고한 관리와 지식인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였다.

매카시의 '무분별하고 자의적인 발표'와 이를 받아서 사실검증을 하지 않고 중계한 언론 그리고 시대적인 냉전상황이 겹쳐서 당시 약 1만 명 이상이 공산주의자로 몰려 직장을 잃고 뉴딜 정책이 좌초됐으며 자유로운 표현과 정치활동이 불가능해 졌다. 또한 월남전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미국사회에 분열을 가져왔다. 매카시는 항상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언론의 힘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묘히 이용하였다.

매카시즘의 열풍이 지나가면서 미국의 언론은 많은 논의와 반성을 거치면서 한국의 경우와 같은 발표저널리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발표저널리즘의 병폐로 지적되는 정치적 폭로와 같은 사안을 무분별하게 기사화하는 것은 드문 일이 되었다. 그러나 비록 한국과 같은 의미의 발표저널리즘은 아니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폭로주의적 가십보도와 같이 발표저널리즘과 유사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 존재한다.

가십보도는 그야말로 가십거리에 불과한 것을 언론이 보도하여 쟁점화하거나 대중의 이목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대개 독자나 시청자를 겨냥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십거리에 대한 보도는 언론이 대중화 되면서 계속되어 온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기본권인 인격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1890년에 워렌과 브렌다이즈(Warren & Brandeis) 판사가 하버드 로 리뷰에 기고한 글에서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그들은 "언론은 모든 방면에서 그 우월성(priority)과 품위(decency)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가십(gossip)은 더 이상 게으르고 사악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이는 철면피(effrontery)는 물론이고 언론(press)에 의해

25) Center for Media and Public Affairs(1997). What the people want from the press. CMPA Archive, September.

26) 김정기(1999). 앞의 책, 47쪽.

서도 추구되는 것이 되고 있다”고 갈파하여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가십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였다.²⁷⁾

1890년대 말에 소위 황색저널리즘(Yellow Journalism) 시대를 구가하면서 사건, 사고 소식은 물론 뜬소문이나 어깨너머로 들은 소식들이 ‘뉴스가치’(newsworthiness)를 얻기 시작하였다.²⁸⁾ 즉, 언론인이 직접 사실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받아서 쓰거나 인터뷰, 이벤트 등 의도된 공시가 뉴스의 가치를 지니기 시작하였다. 비록 한국에서와 같은 출입처의 보도자료는 없지만 이처럼 언론의 뉴스관의 변화와 점증하는 언론의 사회적 위력은 언론이 진실의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언론이 직접적으로 진위를 판단하기 보다는 공식력을 두고 있는 공식적인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그대로 믿고 보도하는 태도가 계속됨으로써 진정으로 언론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²⁹⁾

실제로 정치보도는 물론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을 구할 때도 지나치게 공적인 취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³⁰⁾ 정부 관리들의 경우 주로 익명으로 인용된다. 그런데 만약 정치 과정에서 공직자의 목소리가 지배적이고 다른 목소리를 압도할 경우 국민들은 오도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는 정부가 정보 통제에서 거의 절대적 우위를 누리거나 정보를 왜곡시킬 수 있는 국가안보나 외교 관련 사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³¹⁾ 이 때문에 언론인들은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우호적인 회의주의를 넘어서 선거 후보자들의 말을 믿지 않거나 그들의 전략, 전술을 단순히 화젯거리로 치부하는 냉소주의에 빠지기도 한다.

또한 미국 언론은 ‘받아쓰기’ 저널리즘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밀러(Miller)는 정치보도가 공직자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서술하는 받아쓰기에 주력하기 때문에 언론은 양당의 한복판에서 양쪽의 입장만 공평하게 반영할 뿐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언론이 받아쓰기에만 몰두하게 되면 정치적 판단을 위한 공적 토론은 일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³²⁾

미국에 있어 발표저널리즘이 존재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와 같은 법적인 위반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언론사의 메카니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어진널리즘이다.³³⁾ 언론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의 해결은 실제로 대단한 경제적·시간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어 이를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매우 높은 경제적·시간적인 투자를 강요한다. 시겔(Siegel)은 "명예훼손소송 비용은 엄청날 수 있다.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배심원의

27) Warren, S. D. & Brandeis, L. D. (1890).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4(5), p.1996.
28) Sigal, R. V. (1986). "Sources make the news." In Manoff, R. & Schudson, M. (eds). *Reading the news*. New York: Pantheon Books, p.13.
29) 김진홍(편)(2001). 『한국 저널리즘의 쟁점』. 서울: 법문사, 230-232쪽.
30) Hallin, D. (1986). *The "uncensored war": The media and Vietna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31) Page, B. (1996). *Who deliberates? Mass media in modern democra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2) Miller, M. (2003). A tyranny of symbols: Neither political party is serious about addressing our major domestic problems. Can the press move them off the dime? *Columbia Journalism Review*, November/December.
33) 엄규호(2001). 방어진널리즘과 변호사의 역할. 『언론중재』 v.81, 겨울호, 72-73쪽.

손해배상 평결이 더 이상 특별한 뉴스거리가 아니다 ... 필요한 소송비용과 이미 보도된 기사를 방어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사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 등은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는 기사를 아예 보도하지 않으려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⁴⁾ 명예훼손소송 등으로 인한 미국 언론의 위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으로 이른바 "방어 저널리즘"(defensive journalism)이 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그리고 출판사에게 통상적인 것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987년 포러(Forer) 판사는 '방어 저널리즘'에 대해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변호사가 심사하는 것으로 언론사로 하여금 앞으로 있을지 모를 소송에 의한 비용을 줄여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³⁵⁾ 'Preventative Counseling'이라고도 불리는 방어 저널리즘은 한마디로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한 기사로 인한 문제" 등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언론사가 극단의 경우에는 아예 그 기사를 기사화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⁶⁾ 실제로 변호사들이 언론사의 기사작성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예를 들어 1920년대 미국의 주요 신문사들은 명예훼손 검열 전문 변호사를 자주 이용했다.

변호사들에 의한 기사사전열람이 언론사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없지만 기자의 시각과 구분하여 언론사의 입장에서 보면 방어 저널리즘의 유용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1930년대 초에 보스턴과 워싱턴에 있는 각 두 개의 신문사가 '엄격한' 사전 명예훼손방지 체제를 도입한 후 명예훼손소송사건을 거의 완전히 제거했다.³⁷⁾ 그 결과, 1년도 안되어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비용이 거의 전무할 정도가 되었다.³⁸⁾ 이처럼 방어 저널리즘이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정치적 폭로를 사실로서 기사화 하는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5. 결론

선거나 보궐선거를 치르는 시기에 정치인들은 상대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끊임 없이 비리의혹을 제기했고, 언론매체들은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그것을 경쟁적으로 인용 보도했다. 2003년의 경우에도 대선을 앞두고 발표저널리즘이 기승을 부렸는데 예를 들어 2003년 10월 30일자 한 신문에 "노 캠프 50억대 추가 모금"이란 제목으로 민주당 김경재 의원의 주장을 1면 머리기사로 실었고 4개면에 걸쳐 관련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기사내용을 보면 사실로 드러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언론매체들은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선정적으로 키워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언론의 관행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합리화 되어 왔다. 이러한 중계보도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의혹 관련자로 실명 거론됨으로써 명예나 프라이버시 같은 인격권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고 동시에 국민들은 혼돈상태에 빠지고, 정치에 대한 혐오감과 불신이 커지게 되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34) Siegel, P. (2002). *Communication law in America*. New York: Allin & Bacon, Inc., p.80.

35) Forer, L. G. (1987). *A chilling effect: The mounting threat of libel and invasion of privacy actions to the First Amendment*. New York: W.W.Norton & Company, p.31.

36) 염규호(2001). 같은 논문, 80쪽.

37) Rosenberg, N. L. (1986). *Protecting the Best Men*, NC: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p.225.

38) Rosenberg, G. (2000). "A newsroom lawyer's life: Passion and prevention", *Columbia Journalism Review*, September/October, p.43.

언론이 정치인이나 정부기관의 발표나 폭로가 있을 때 그 내용을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면 이는 통상 객관보도나 사실보도는 될지언정 진실보도는 아니며,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진실보도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는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도 아니고 언론인은 수사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 증거확보를 위한 행동을 할 수 없다. 특히 상업주의가 팽배하고 취재경쟁이 불붙은 상황에서 낙종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할 수밖에 없다고 언론사측은 주장한다. 그러나 정치인의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중계보도하는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언론플레이에 이용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더욱이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하고 말겠다는 논리가 작용하는 선거정국에서는 그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언론인들로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널리즘적 측면에서 발표저널리즘은 언론인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스스로 언론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미국의 경우 매카시즘으로 인한 사회적 반성과 방어저널리즘의 등장으로 언론에는 더 이상 발표저널리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아직 발표저널리즘이 존재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기자단 제도의 잘못된 운영에 기인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일본과 유사하나 최근 기자단 제도의 개혁과 브리핑 제도의 정착으로 인하여 발표저널리즘의 폐해는 상당히 줄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선거철만 되면 되풀이 되는 인신공격성의 폭로를 진위여부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언론이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객관주의를 명분으로 한 언론의 단순 중계보도는 가장 큰 저널리즘적 문제이다. 왜냐하면 언론의 검증이야말로 저널리즘을 오락, 허구, 선전과 구분 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언론은 비록 뉴스보도의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³⁹⁾ 즉, 그 내용이 공익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다(형법 제310조). 국회의원의 경우 대개의 경우 직무상의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지만(헌법 제45조) 언론은 이와 관련된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⁴⁰⁾ 속보성에 치우치다 보면 자칫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의혹과 문제의 제기는 언론의 중요한 임무다. 언론매체의 가장 기본적 기능인 정보전달과 의제설정 그리고 상징적 환경의 구성은 사회에서 존재하는 갖가지 사안들을 비판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언론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만 그 사회는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다는 리프만의 선지적인 시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겠다. 다만 언론의 미확인 보도는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많고 그 사회적 파장이 크므로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도를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자의 경우 모든 정치적 발언에 대하여 그 진위를 면밀하게 확인하여 보도하도록 한다면 언론의 정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대단히 위축시키게 되고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기자의 면책특권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도록 비교형량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39) 이계진(2003).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40) 안병찬(2001). 발표저널리즘 반성과 대안. 관훈통신 제73호.

보인다.

참고문헌

- 김옥조(2003). 『미디어 윤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정기(1999). 『우리언론의 숨겨진 신화깨기』. 서울: 한겨레신문사.
- 김진홍(편)(2001). 『한국 저널리즘의 쟁점』. 서울: 법문사.
- 손태규(2004). 『서술적 보도와 해석적 보도』. 서울: 미디어연구소.
- 안병찬(2001). 발표저널리즘 반성과 대안. 『관훈통신』 제73호, 2월 11일자.
- 양승목(1997). 언론과 여론: 구성주의적 접근. 『언론과 사회』 제17호, 6-40.
- 염규호(2001). 방어진널리즘과 변호사의 역할. 『언론중재』 제81호, 겨울호, 72-89.
- 이재진(2003).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이민웅(2002). 좋은 뉴스의 으뜸가는 조건으로서 진실 보도: 사실, 사회적 구성, 진실 보도. 『언론과 사회』, 제32호, 9-50.
- 이민웅(2004). 『저널리즘/위기·변화·지속』. 서울: 나남.
- 한국언론재단(2000). 『언론인의 직업윤리』. 서울: 한국언론재단.
- 장호순(2004). 『언론의 자유와 책임』.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조용철·김진홍·송정민(2003). 『취재보도론』. 서울: 법문사.
- 한국언론2000년위원회(2000). 『한국언론의 좌표』. 서울: 관훈클럽.
- Blasi, V. (1977). "The checking value in the First Amendment theory." *American Bar Foundation Research Journal* 1977, 521-538.
- Center for Media and Public Affairs(1997). *What the people want from the press.* *CMPA Archive*, September.
- Fallows, J. (1996). *Breaking the news.* New York: Pantheon Books, Inc.
- Forer, L. G. (1987). *A chilling effect: The mounting threat of libel and invasion of privacy actions to the First Amendment.* New York: W.W.Norton & Company,
- Hallin, D. (1986). *The "uncensored war": The media and Vietna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mada, Y. (2002). Doing public journalism in Japan: The practices of Asahi Shimbun. YourSITE.com, July 29. Retrieved November 7, 2004 from <http://www.imdp.dp.org/artman/publisher/printer>.
- Kovach, Bill & Rosenstiel, Tom(2001). *The elements of journalism.* New York: Crown Publishers.
- Krauss, E. (2003). Journalism and press-government relations in Japan: Facing strains or opportunity? *Japanese Media Review*, October 3.
- Lippmann, W. (1922). *Public Opinion.* New York: Free Press.
- Miller, M. (2003). A tyranny of symbols: Neither political party is serious about

addressing our major domestic problems: Can the press move them off the dime? *Columbia Journalism Review*, November/December.

Page, B. (1996). *Who deliberates? Mass media in modern democra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atterson, T. (2000). *We the people: A concise introduction to American politics*. Boston: McGraw Hill.

Sigal, R. V. (1986). "Sources make the news." In Manoff, R. & Schudson, M. (eds). *Reading the news*. New York: Pantheon Books,

Warren, S. D. & Brandeis, L. D. (1890).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4(5), 1993-1996.

의견 면책의 한계

-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부

민 성 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III. 우리 나라의 이론 및 판례 개관

1. 우리 나라에서의 논의 개관

가. 개관

우리 학설 및 판례는 대부분 '순수한 의견은 면책된다'는 점에 특별한 이론이 없다. 그러나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는 순수 의견이 그 표현 방식이 거칠고 모멸적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책임을 인정한다면 어떠한 이론 구성에 의하여 인정할 것인가, 표현의 자유로서 면책되는 의견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인신공격적인 의견은 어떻게 한계를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특별한 논의가 없고 원론적인 수준의 학설만 존재할 뿐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의견의 표현방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일정한 한계를 넘는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그 후 책임의 이론적 구성방법과 요건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나.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1) 견해의 대립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학설들은 크게 그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이를 긍정하는 견해는, ① 도를 넘어서서 인신공격이나 중상비방에 해당한다면 제재의 필요성이 있으나 전제되는 사실이 진실인 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과도한 명예감정의 침해 또는 모욕이라는 별개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거나¹⁾, ② 모욕은 의견과는 구별되는 욕설이라는 전제 하에 타인의 인격감정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욕설 등 모욕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라고 볼 수 없으나, 일회적인 욕설만으로 바

1) 한위수, 같은 논문 17면.

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그런 욕설을 들으면 누구나 명예감정을 손상당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얼마간 지속되리라고 인정될 정도의 욕설인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거나²⁾, ③ 일반적인 명예감정의 침해도 우리 민법 제751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침해로 유형화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거나³⁾, ④ 타인을 경멸, 인신공격, 모욕하는 의견 표명은 공정논평의 원리에 의하여 의견 표명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한다.⁴⁾

반면 이를 부정하는 견해는, ① 언론에서의 의견 표명은 전제사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의견에 의한 명예훼손은 전제사실의 진실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전제사실이 진실이라면 그에 기한 의견 표명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토론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판명되어야 하므로, 비록 그 표현이 거칠어서 모욕적이라고 하더라도 면책되어야 한다고 하고, 이 견해는 의견 표현의 방식이나 표현내용을 들어 불법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사실상 판사의 주관에 의하여 불법행위 책임의 성부가 결정되게 되고 이는 언론의 자유에 chilling-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고 하거나⁵⁾, ②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경멸적인 언사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의견/사실 구분론에 입각하여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책임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살려 전반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⁶⁾

(2) 생각건대, 이는 기본적으로 인격권과 충돌하는 언론의 자유의 한계와 관련된 문제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

2) 전원열, 같은 논문 242면.

3) 이광범,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그 구제방법", 헌법문제와 재판(하) 132면.

4)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1997) 393면.

5) 위 견해는 정진경 부장판사의 견해로서 이는 제1회 언론법학회 세미나에서의 토론내용과 필자가 개인적으로 정진경 부장판사께 문의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서 견해의 전달에 오류가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다만 정진경 부장판사는 의견 표명이 전제사실에서부터 도저히 도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잘못된 의견으로서 면책되지 않는다고 한다.

6) 신 평, "새로운 명예훼손법 체계의 구축을 위한 시도", 공법연구(31-3) 208~209면. 이 견해는 피해자의 법익침해 정도에 따라, ①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의한 형법상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해당행위, ②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형법상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행위, ③ 어떤 사람의 외부적 객관적 평가를 해치지 않는 단순한 명예감정의 침해행위로 나눈 후, ②③에 대하여는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나 이러한 해석이 우리 법 해석으로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한 후,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이로 인한 명예 또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헌법상 근거를 바탕으로 형법 제311조는 사실 적시가 아니지만 모욕적인 표현에 대하여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1조는 명예 기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를 근거로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이유로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도 면책된다고 하는 해석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⁷⁾ 즉 인신공격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살핀 미국 연방대법원의 *Falwell* 판결에서와 같은 헌법에 근거한 의견 면책은 우리 법의 해석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견 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신공격적이라 평가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문제될 뿐이다.

(3) 다만 전원열 판사는, 의견은 ‘어떠한 대상에 대한 생각이나 느낀 바를 표현한 것’이라 정의하고 모욕은 ‘욕설’이기 때문에 의견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으며 사실/의견 구별 이전에 모욕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⁸⁾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모욕의 개념을 ‘욕설’로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한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첫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것으로서 ‘모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비단 ‘욕설’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욕설이라고 해서 항상 모욕적인 언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그 표현이 갖는 의미를 해석한 연후에 결정될 일이기 때문이다.⁹⁾ *Falwell* 사건이나 뒤에서 살필 김홍신 의원의 ‘공염용미성발언’사건을 보

7) 신 평 교수의 견해 중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는, 민사상 규제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인 형사상으로 위법성이 인정된 사안을 민사적으로 면책시킨다고 하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박철, 같은 논문 20면도 같은 취지이다.)

8) 전원열, 같은 논문 242면.

9) 욕설은 대부분 모욕적인 언사로서 인신공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욕설도 전체적인 문맥과 독자들이 받아들이는 인상에 따라 모욕적이지 않은 경우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신

아도 욕설이 아닌 것도 욕설에 못지 않게 모욕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치적인 소재에 대한 만평 등에서 상대방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과 같이 비언어적인 만평에 의하여 상대방을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비언어적인 표현행위가 욕설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둘째, 형법상 모욕의 개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외부적인 명예를 손상할 만한 구체적인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바, 이는 사실의 적시가 없이 구체적 판단을 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원열 판사의 '의견'의 개념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표현의 정도에 있어서 지나치거나 모멸적인 것이 모욕죄에 의하여 규율될 뿐이다. 전원열 판사는 선형적으로 모욕이라는 것이 의견과는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계시나, 선형적으로 모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가 아닌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명 중에서 한계를 넘는 것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¹⁰⁾

셋째, 위 견해와 같이 모욕을 '욕설'이라고 하는 획일적 기준에 한정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탄력적인 기준 적용이 불가능해진다. 즉 대상의 공공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표현의 자유는 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적시뿐만 아니라 의견의 표명에서도 그대로 유효한 명제일 것이다. 이렇듯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문제인데, 사실적시가 아닌 것 중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욕설뿐이라고 해석한다면 대상의 공적인 정도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게 된다.

넷째, 욕설 등에 의한 모욕적인 의견 표명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위 견해는 실제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사실과 의견 이전에 모욕이 존재한다고 하는

체적 장애가 있는 고위 공직자 A에 대하여 'A가 국제회의에서 연단으로 다리를 절뚝거리며 올라가고 있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절름발이'라니 이게 무슨 국가적 망신인가'와, '현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정책기조는 성장을 도외시키고 분배에만 역점을 둔 '절름발이'의 모습이다.'에서 '절름발이'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는가? 처음의 '절름발이'는 앞서 언급한 사실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된 사실이 이미 모두 적시되어 있고, '절름발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상대방의 신체적인 결함에 대한 경멸적인 의사가 표현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뒤에 나온 국가적 망신이라는 평가와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표현들은 모두 필자가 상정해본 가상의 표현들이다.)

10) 의견의 표명이면서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로는 후술하는 김홍신 의원의 '공업용미싱발언'사건을 참고할 만하다.

것이나, 의견 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모욕이라고 하는 것이나 결과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한계를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5) 따라서 이하에서는, ① 의견 표명 행위가 경멸적이거나 모욕적인 경우 그 책임의 근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명예훼손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살피고, 이를 위하여 우리 민법에서의 '명예훼손'의 개념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② 만일 명예훼손과는 별도의 불법행위 유형을 인정한다면 양자를 구별할 실익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③ 구체적으로 경멸적이거나 모욕적인 의견 표명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검토하기로 한다.

다. 두 가지 접근 방법 - 명예훼손 책임인가 아니면 독립된 불법행위책임인가

과도한 의견표명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구성은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번째는 우리 민법상 명예훼손의 근거 규정인 민법 제751조에서 사실 적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의 적시에 의하여서든 의견의 표명에 의하여서든 일응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그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의견 표명의 상당성' 내지는 '공정한 논평'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입장이다.¹¹⁾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의견과 사실이 동시에 적시된 경우 청구원인 단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일응 '사회적 평가의 저하로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한 다음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사실 적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진실성, 상당성에 의하여 위법성을 검토하고, 의견 표명 부분에 대하여는 공정논평의 법리에 따라 그 요건을 충족하면 면책되고 그렇지 않은 과도한 의견 표명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두번째는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순수 의견'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다만, 그 의견 표명이 모욕적인 경우에는 인격권의 침해로서 별개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¹²⁾ 이러한 입장에서는 청구원인 단계에서부터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여 사실의 적시에 의하여 사회적 평가의 저하가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되고, 의견 표명 부분 중에서 그 표현이 과도하여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과는

11) 박용상, 같은 책 105면, 122면, 145면 ;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 (1997), 393면.

12) 전원열, 같은 논문, 242면.

별도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이론 구성 및 입증 책임과 관련하여 의미를 갖는데, 먼저 우리 민법에서 '명예훼손'을 사실의 적시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여 볼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기로 한다.

라. 민법상 '명예훼손'의 의미

(1) 우리 법 규정

형법은 사실 적시 유무에 따라, 제307조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형법 제311조에서 '공연히 타인을 명예훼손하는 행위'를 모욕죄로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상 명예훼손의 근거규정인 민법 제751조는 이러한 사실 적시 유무를 가리지 아니하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문의 취지만으로 보아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한 유형인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 유무를 가리지 아니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2) 판례의 태도

우리 판례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즉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¹³⁾라고 하여 일응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의하여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¹⁴⁾라고 판시하여 사실의 적시에 의하지 아니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어떤 의견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 표현하는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

13)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판결

14)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판결.

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 훼손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¹⁵⁾. 즉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은 문제가 된 의견 표현 행위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제된 사실의 적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의해야하며, 위 판례의 태도를 뒤집어서 해석한다면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진실한 이상 의견 표명의 표현방식 및 그 내용과 무관하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결국 우리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을 다소간의 표현 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이 직접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사실을 암시한다고 해석되거나, 또는 그 표현 자체로는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는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견에 전제된 사실이거나, 이러한 사실의 적시에 의한 사회적 평가의 저하로 이해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명예훼손을 '사실의 적시'를 요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대하여는 명예훼손과는 별개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도 타당하다.

첫째, 민법 제751조가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나, 민법 제751조는 '명예훼손'만의 근거 규정이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의 일반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다.¹⁶⁾ 따라서 명예훼손 역시 민법 제751조에 의한 불법행위 중의 한 유형에 불과한 것으로, 민법 제751조에서 사실의 적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사실의 적시 뿐 아니라 의견의 표명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이다.

둘째, 영미법상 공정 논평의 법리는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던 Common Law 시절, 명예훼손이 사실의 적시 뿐 아니라 의견의 표명에 의하여도 가능했다가, 명예훼손적 진술은 허위로 추정된 결과, 의견에 대하여는 진실을 입증할 수 없어(즉, 허위의 추정을 반복할 수 없어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어) 공적인 논쟁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판례는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판

15)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판결 외 다수.

16)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민법 채권각칙 8권(2000) 269면 이하 참조.

결 이래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판결에 이르기까지 사실과 의견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고 실무 또한 사실과 의견의 구별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굳이 '공정 논평의 특권'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의견 표명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셋째, 만약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의하여 일응 명예훼손 책임이 성립하고 공정논평의 법리에 의하여 면책된다는 논리를 취한다면, '의견 표명의 상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가 부담하게 될 것인바, 이는 사실적시에 비하여 의견 표명을 두텁게 보호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보아 부당하게 피고측의 입증책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마. 명예훼손과 다른 별도의 불법행위 유형을 인정하는 실익¹⁷⁾

(1) 명예훼손을 사실의 적시에 의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상,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은 이와 행위태양을 달리하므로 그 둘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2) 그리고 양자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면책시키는 기준이 상이하다. 명예훼손에서는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에 의하여 그 위법성을 조각하게 되나, 의견 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에서는 진실성(truth)을 따질 수 없고 오직 표현의 적정성(propriety)만이 문제되게 된다.

(3) 또한 양자는 그 입증책임의 분배에 있어서도 상이하다. 명예훼손에서는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 또는 상당성을 피고가 입증해야하나, 의견 표명에 의한 불법행위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에서 진실성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는 표현의

17) 한위수,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사법논집 제24집 410면에서는 "민사상으로는 명예훼손과 모욕을 반드시 구별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모멸적 언사나 추상적 사실의 언사를 놓하는 경우도 넓은 의미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모두 외적 명예로 공통적이라는 점에 기초한 것으로서 한위수 부장판사도 명예훼손에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와 모욕에서의 그것이 상이함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견해는 학설 및 판례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이전의 견해로서, 한위수 부장판사도 최근에는 모욕적인 표현에 대한 별도의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한위수, '논평과 명예훼손' 민사법학 제21호(2002. 3.), 한국사법행정학회 18면 참조)

18) 이광범, '불법행위로서의 명예훼손과 그 구제방법', 재판자료 제77집, 법원도서관 : 법원행정처, '언론재판실무편람' (2002), 18면은 주 57)의 한위수 부장판사의 견해를 인용하며, '민사상 명예훼손과 모욕은 그 성립요건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이유에 비추어 일반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적정성 혹은 과도성을 포함한 성립요건을 모두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바. 소결

(1) 결국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의한 불법행위는 그 표현 행위 자체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없고, 민법 제751조에 근거하여, 명예훼손과는 다른 유형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상판결에서도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은 이러한 관점에서 타당하다.

따라서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과 동시에 전제된 사실관계가 적시된 경우, 전제된 사실관계의 진위에 따라 명예훼손 책임이 성립함과 병존적으로 혹은 독립적으로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2) 그러나 전제사실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의견 표현 자체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성립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더하여 위자료 액수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실제 이 논의가 독립적인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은, ① 대상 판결에서와 같이 전제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② *Falwell* 사건에서와 같이 그 의견에 전제된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아니하고 그 의견 표현행위 자체로도 어떠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될 것이다.

2.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가. 학설의 검토

우리 학설은 일부 반대 견해¹⁹⁾가 있으나 대부분 인신공격적인 중상비방, 또는 모욕적인 언사에 의한 의견 표명에 의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²⁰⁾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표현행위가 있어야 위법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가 성립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논의가 없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현재까지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준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19) 신 평, 같은 논문 208~209면 및 각주 43)에 소개된 정진경 부장판사님의 견해가 있다.

20) 한위수, 같은 논문 17면; 표성수, 같은 책 395면; 전원열, 같은 논문 242면.

나. 형법상 모욕죄와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역시 인정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의 논의 대상이 되는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대하여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해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형법상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외부적인 명예를 손상할 만한 구체적인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모욕의 개념 정의는 사실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는 '의견'과 동일하고 다만 표현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논하고 있는 인신공격적 의견 표명과 유사하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는 결국, 의견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는 문제인데, 형법상 모욕죄에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자 법문상으로도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²¹⁾ 그렇다면 모욕죄의 경우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2) 모욕죄의 적용 사례

지금까지 모욕죄가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도둑놈, 죽일 놈'²²⁾, '빨갱이, 계집년, 만신(무당)²³⁾, '야 이 개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번을 갈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 같은 년'²⁴⁾, '저 망할 년'²⁵⁾ 등과 같이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로서,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간의 분쟁 과정에서 나오는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언사가 대부분으로서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논쟁에서의 의견 표명과는 거리가 멀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문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3) 공적인 존재에 대한 모욕죄의 성부와 관련된 사례²⁶⁾

21) 대법원 1959. 12. 23. 4291형상539판결,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는 '모욕행위라도 표시된 판단이 진실하고 또한 그 표시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형법(IV) (2001), 590면.)

22) 대법원 1960. 9. 21. 선고 4293형상251판결

23)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판결

24)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629 판결

25)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873판결

26) 아래에서 언급할 사례 이전의 공적인 대상에 대한 모욕죄 성립이 문제된 사안으로는 대법원 1960. 9. 21. 선고 4293형상251판결이 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연히 'X같은 이승만 정치에 못살겠다.

그러나 최근 공적인 대상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에 대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성부가 문제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0. 9. 26. 2000노770사건-김홍신 의원의 ‘공업용미싱발언’으로 잘 알려진 사건-에서, 피고인이 김대중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몇십년 동안 거짓말을 해왔다. 우리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말에 속았다. ... 사람이 죽으면 염라대왕이 거짓말한 것만큼 바늘로 뜨는데 김대통령은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속여서 바늘로 한뼘한뼘 뜰 시간이 없어서 공업용 미싱을 갖다가 드르륵 드르륵 박아야 할 것이다. 말바꾸기의 천재성을 가진 사람, 거짓말의 인간문화재, 유별나게 사기치는 사람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다”라는 내용으로 연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김대중 대통령을 모욕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모욕죄가 피해자의 개인적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공직자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인 평가가 형성되는 과정이 통제되어서는 아니되고, 그 전제로서 정책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언행이나 품성 등에 대한 비판의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공적인 인물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표현행위가 피해자에 대하여 사회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의 다양성, 피해자의 반박을 위한 입장 표명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외부적인 명예를 실제로 훼손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 사건 표현행위가 공인의 정치적인 행태에 관하여 풍자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면이 일부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상대방 후보의 자질논평 외에 의도적으로 상대방 총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켜 자신이 속한 당의 후보의 득표를 올리려는 인식을 가지고, 청중에게 선명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비판의 범주를 넘어서 모욕적인 측면이 강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표현행위는 모욕죄를 구성한다.”²⁷⁾

이승만 어서 죽어라, 김일성아 어서 싸워라, 이승만 정치 왜놈정치만 못하다, 이승만 늙어빠진 것이 무슨 정치를 하나, 자유당 썩은 정치가 무엇을 한단 말인가, 이승만, 자유당 개놈의 새끼들은 모조리 때려 죽여야 한다’는 등의 언사를 고성으로 반복한 사안에 대하여 ‘이는 이승만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동인을 공연히 모욕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판시하였다.

27) 위 판결은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는데, 대법원의 판시내용에서는 모욕죄의 성부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위 견해가 대법원의 입장인지는 분명치 않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도4595 참조)

(5) 위 사건에서 김홍신 의원의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몇십년 동안 거짓말을 해왔다’라고 한 부분은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으나, 그 이후의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김대중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를 전제로 한 의견의 표명이다. 또한 발언의 대상은 대통령으로서 그 공공성이 어느 공적 존재보다 강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적인 존재의 인격과 품성에 대한 비판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인격에 대한 비판이라면 그것이 인신공격적이라 해석될 가능성이 다른 경우보다는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 판결에서 김홍신 의원의 위 발언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위 발언 중 ‘공업용 미싱으로 드르륵 박는다’는 과도한 표현이 독자들에게 환기시키는 혐오성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6) 위 판결은 공적인 인사에 대하여 행해지는 의견 표명의 한계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양자의 한계점을 찾는 데 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가 위법성 단계에서 검토되는 것과는 달리, 모욕죄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에서 ‘모욕’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임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공적인 대상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표현이 있어야 사회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 모욕죄가 성립할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판례와 학설의 집적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다. 판례의 태도

인신 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정면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그다지 많지 않다. leading case로 볼만한 판결들을 검토기로 한다.

(1)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전제한 다음 “‘북한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원고 민노총의 그와 같은 노동운동이 결과

적으로 북한을 이익되게 하는 운동이라는 주관적인 평가를 '노동당운동'에 비유한 과장표현이라 할 것인바, 앞에서 전제한 바와 같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공개와 토론이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제시된 정황 및 현실투쟁의 강도와 양태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도의 과장표현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하였으나, "원고 민노총의 투쟁방법을 '공산계릴라식 빨치산전투'라고 표현한 부분은 비록 그 표현 자체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원고 민노총의 투쟁방법을 그에 비유한 평가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공산계릴라식 빨치산전투'라 함은 공산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적의 배후에서 파괴와 살상 등으로 기습, 교란하는 비정규부대의 유격전투를 뜻하는 표현으로서, 원고 민노총의 투쟁방법, 투쟁 과정에서 나온 과격한 구호 등을 참작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그 비유가 지나치고 감정적이고도 모멸적인 언사에 해당하여 이러한 모욕적인 표현까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8626 판결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의사당 내에서 도박성 내기 바둑 및 장기를 둔 사실을 적시한 기사 및 사설을 게재하며 그 일부에서, '막가파 구의회', '막가파 구의원', '동네 반장보다 못한 놈'이라 표현한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은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볼 수 없으나 원고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나타낸 표현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01. 4. 12. 선고 2000나59199)을 지지하였다.²⁸⁾²⁹⁾

(3) 검토

위 판결들 및 앞서 살핀 공업용미싱발언 사건, 대상판결을 기초로 하여 판례의 태도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먼저, 위 각 사건들은 그 대상의 공공성이 서로 상이

28) 다만 이 판결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와 함께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도 별도로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한 취지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견해로는 권기훈, '의견 표명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결례 검토', 24면.

29) 이 사건의 1심 판결(서울지방법원 2000. 11. 8. 선고 99가합69544판결)은 '언론기관이 정치인의 행동에 관하여 평가를 함에 있어 관련 정치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취지로 그 정치인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난의 정도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꾸짖는 의미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함은 언론기관의 논평의 자유에 비추어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표현은 그 정치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위 표현들이 언론기관의 비평의 한계를 넘어서 모욕에 해당하는 이유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다. 구의회 의원, 정치적 이념집단, 대통령은 그 자체로 공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행정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그 자체로 공적인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변호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서만 공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각 사건에 대하여 판례는 그 표현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상에 대한 평가를 과장하여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인신공격'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판례의 태도를, 대상이 갖는 공적인 의미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인신공격적인 표현'이라면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판례의 태도를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상의 공적인 정도에 따라 언론의 비판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가 달라지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사회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비판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업용미싱발언 판결에 적시된 바와 같이 대통령은 최고의 공적인 존재로서 그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인품이나 성격에 대하여도 언론에 의한 비판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변호사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을 넘어서 그 인격이나 성품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즉 대통령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존재에 대하여는 인품이나 성격에 대한 비판도 기본적으로 가능하므로, 결국 표현 자체가 갖는 혐오성이나 과도성에 의하여 인신공격인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변호사에 대하여는 그 표현행위가 당해 업무와의 관련성을 넘어서 인격에 대한 모독으로까지 나아갔는가 그리고 그 표현 자체가 갖는 혐오성 및 과도성이 모두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양자에 있어서 상이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라. 요건의 검토

(1) 앞서 살핀 대법원 판례에서 적시한 요건들을 민법 제751조에 맞게 구성요건을 재구성 해보면, ① 당해 의견은 전제된 사실관계로부터 지나치게 과장하여 표현할 것, ②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모멸적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언사를 사용하여 인신공격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③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첫 번째 과장의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즉 우리 판례 및 미국 판례에서 의견 표명의 자유 범위 내

로 인정되고 있는 수사적 과장(rhetorical hyperbole)과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두 번째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모멸적이어서 인신공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의 두 가지 요건을 어떻게 구체화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2) 대상에 대한 평가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할 것

대상판결은 판결이유에서 ‘대상에 대한 평가를 확대·과장한 결과에 따른 표현’이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의견 표명은 ① 사실에 대한 인식, ② 인식한 사실을 기초로 한 평가, ③ 평가에 따른 표현의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는데, 위 판시 내용에서의 ‘확대·과장’이란 평가를 기초로 표현행위를 함에 있어 그 표현행위의 내용 및 방식이 과장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³⁰⁾ 대법원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과장된 표현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는 표현행위가 의견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견의 표명을 넘어서 추가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는 것이고³¹⁾, 두 번째는 대상판결과 같이 추가적인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는 경우 표현방식 등이 의견 표명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첫 번째는 흔히 ‘수사적 과장’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고에서 다루는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의 문제이다.

(가) 이른바 ‘수사적 과장(rhetorical hyperbole)’의 문제

① 수사적 과장의 의미

수사적 과장이란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과장되게 꾸며서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 대상의 어떠한 특성에 착목하여 그 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자 그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는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의 방법에서 현저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표현행위의 문언상의 의미(the literal meaning of a defendant's words)와 법원이 해석한 그 표현행위의 진정한 의미

30) 인식된 사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그르친 경우-즉 비합리적인 의견 표명-는 어떠한가? 이는 잘못된 의견으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는 견해(정진경)가 있으나, 의견이 비합리적이란 이유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는 잘못된 의견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의혹 제기의 외양을 띄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제 사실과 논리적 연결이 부족하여 그 자체를 추가적인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적인 경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01. 4. 19. 선고 2000나9859판결 참조)

31) 대법원 2002. 10. 24. 선고 2000다14613판결

(Court's interpretation of their real meaning)상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데, 전체적인 문맥, 문제된 표현행위의 문언상의 의미, 발언자의 의도 및 독자들이 받아들이는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행위가 수사적으로 과장하였을 뿐 추가적인 명예훼손적 사실을 암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사적 과장'으로 의견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면책되는 것이다.³²⁾

② 고려 대상 : 필자의 의도, 문맥, 독자가 받아들이는 인상³³⁾

결국 이러한 수사적 과장의 본질은 필자의 진의가 표현 내용의 문언 그대로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문언상 의미와 자신의 진의 사이의 공통점을 연상케 하지만 결코 독자들에게 문언 그대로의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³⁴⁾ 이것과 관련하여 'unbelievability'라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는 앞서 본 *Falwell* 사건에서 *Hustler*의 ad-parody에 나온 인터뷰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사회 평균인이라면 위 광고에 *Falwell*에 대한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데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³⁵⁾

③ 미국 판례 및 우리 판례상 나타난 수사적 과장

미국 판례상 수사적 과장을 인정된 것은 노조의 출판물에서 비노조원들에 대하여 'Scabs'라고 표현한 것, 비도덕적인 협상태도를 '협잡 (blackmail)'이라고 표현한 것, 정치적 주변 그룹의 지도자에 대하여 '파시스트의 추종자'라고 한 것을 들 수 있다. 반면 미국 판례는 특정한 범죄나 잘못을 부과하는 것은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아 수사적 과장과 구별하고 있는데 'SS(Nazis) 배경이다' 또는 'Gestapo'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의견이나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32) 이러한 판례의 경향에 대하여, 수사적 과장은 표현행위의 문언상 의미와 실제 의미의 차이를 설명할 뿐이므로, 밝혀진 실제 의미가 '사실'인지 '의견'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이러한 과정을 하지 아니한 채 '수사적 과장'에서 바로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의견'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Post, 같은 논문 652면)

33) Leslie Kim Trieger, "Protecting Satire Against Libel Claims ; A New Reading of the First Amendment's Opinion Privilege", *The Yale Law Journal* Vol.98, no.6 (89.04), 1227면.

34) 서울고등법원 2001. 5. 17. 선고 99나67484판결 참조.

35) 그러나 이러한 'unbelievability' 요건을 적용한 결과, 풍자적 표현을 비롯한 의견 표명 중 터무니 없는 내용은 의견으로 보호되나, 사실적인 풍자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며 이를 비판하는 견해(Leslie Kim Trieger, 같은 논문 1227면.)도 있으나 풍자이건 무엇이건 사실적이란 말은 독자들이 받아들이기에 그 내용을 사실의 적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아 사실의 적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들을 구별하는 한계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³⁶⁾

우리 판례도 명시적으로 '수사적 과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판결들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수사적 과장을 인정한 사례로는,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에서 민주노총의 노동운동을 '북한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원고 민주노총의 노동운동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익되게 하는 운동이라는 주관적인 평가를 '노동당 운동'에 비유한 과장 표현으로서 이러한 정도의 과장표현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판시한 것과,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6405판결은, 조선일보 기자인 원고가 최장집에 대한 사상검증 과정에서, 원고가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여 조선일보 및 월간조선의 논조와 궤를 같이 한 것을 두고 피고가 "지식인이 아무런 해명 없이 자신의 기존 논리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학행위이다. 그에게서 마조히즘적 정신분열증세가 감지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은 원고가 피학적 변태성욕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지식인인 원고가 아무런 해명 없이 자신의 기존 논리를 부인한 것에 대한 의견 또는 논평의 비유적 표현'으로서 기본적으로 진실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01. 5. 17. 선고 99나67484판결)을 유지한 것이 있다.

반면, 수사적 과장의 범위를 넘는다고 본 사례로는,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³⁷⁾에서, KBS의 PD인 원고가 제작한 '대통령에 도전한다'와 '한국 전쟁 누가 일으켰는가'등의 다큐멘타리에 대하여 피고 한국논단이 '이 프로그램들은 역사적 사실을 늘 왜곡하여 이승만을 사대주의자로 여운형을 민족주의자로 미화하는 말도 되지 않는 저질의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내보냈다. ... 이것이 당시 이 프로그램을 연출했던 원고의 해석이었다면 그는 분명히 주사파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 이는 원고의 사상적 경향을 그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평가한 소위 '순수의견'으로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으나, '주사파'가 그 당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갖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수사적 과장으로서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한 모욕적인 언사를 넘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36) Dwight L. Teeter, Jr, 같은 책 320면.

37) 위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박철, '표현의 자유에 의한 명예훼손의 제한과 관용'이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 판례의 입장은 표현행위의 문언 내용을 전체적 문맥, 사회적인 함의, 독자들이 받아들이는 인상 등에 비추어 해석한 후 표현행위에 사용된 어휘가 전제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표현이 전제된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이를 수사적 과장으로서는 면책시키고, 그 표현이 전제된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새로운 명예훼손적 사실에 대한 암시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로 보아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수사적 과장은 순수 의견에서 과장의 한계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는 의견으로 보이는 당해 표현행위가 전제 사실에 대한 순수한 평가인가 아니면 새로운 명예훼손적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 적시 여부의 문제인 것이다.

(나) 독립된 불법행위 성립요건인가?

의견의 표명이 과장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의견 표명은 다양한 방식과, 수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전제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을 충분히 변호하지 못하였다'라는 일응의 평가를 내린 후 이를 표현함에 있어서, '변호사가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부터 '변호사로서 의뢰인에 대하여 충실하지 못한 변론을 한 것이다'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사람답지 못하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고 이러한 다양성은 의견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인 것이다. 따라서 자칫 과장된 의견 표현에 대하여 쉽게 불법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언론을 통하여 '긍정적이다' 아니면 '부정적이다'라는 극히 무미건조한 논평만 들어야할지도 모를 것이다. 그리고 과장 자체만을 이유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되는 또 다른 이유는 과장이나 사소한 오류를 비롯한 의견의 당부는 기본적으로 토론을 통하여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과장을 이유로 불법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토론의 기본적인 내용에 법원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반대의견에 대한 억압적 수단으로서 자유로운 토론 자체를 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최소한의 한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어디까지가 사상의 자유시장의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법원의 개입이 허용되는 영역일까?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인신공격'에서 그 한계를 찾고 있다.

(3)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인신공격에 이를 것

(가) 판례는 그 표현이 인신공격에 이를 정도로 상대방에게 모욕적일 것을 요건

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신공격이라는 개념 또한 ‘모욕’ 만큼이나 모호한 개념이 아닐 수 없다. 인신공격은 사전적으로 ‘남의 일신상에 관한 일을 들어 비난함’을 의미한다.³⁸⁾ 이러한 사전적 정의를 대법원 2000다37524판결 중 ‘아무리 공적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방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부분과 함께 검토하면, ‘의견 표명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평가를 넘어서 상대방의 일신상에 관한 일을 들어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예컨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정치인에 대하여 신체적 약점을 들어 ‘병신’이라고 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³⁹⁾

① 당해 주제와의 관련성

의견 표명은 경우에 따라 상대방에게 폄훼적이거나 정신적인 손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에서의 논쟁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면, 이는 비판적인 의견 표명을 말살시키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의견 표명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는 것 이상의 요건이 필요한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은 이 점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하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바이에른 주의 전 수상인 슈트라우스에 대하여 ‘강제에 의해 또는 기회주의적인 이유에서만 민주주의를 지킬 뿐 이 정치형태를 형식적으로만 다루는 억지민주주의자의 한 사람’이라고 비난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하나의 의견 표현이 제3자에 대하여 폄훼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비방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심하게 꾸짖는 과도한 비판도 그 자체만으로는 진술을 비방으로 만들지 않는다. 가치저하적 표현은 사안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인신공격이 그 전면에 나타나는 경우에 비로소 비방의 성격을 갖게 된다. 그것은 논쟁하는 비판과 침예한 비판을 넘어 인신에 대한 헐뜯기에 존재한다.

의견 자유의 이익을 위하여 좁게 파악된 이러한 비방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면 고등

38) <http://krdic.naver.com/krdic.php>

where=krdic&docid=103181

39) 박철,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제한과 관용’, 20면.

법원이 제시한 사실관계는 그 표현을 비방으로 보기에 충분치 않다. 금지된 ‘억지 민주주의자’라고 하는 표현행위는 우선 민주주의의 정체를 외부적으로만 승인하고 내적으로는 거부하는 인사에 의해 민주주의 질서가 위협받는 점을 지적하려는데 있었다. 그들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민주주의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정이 달라지면 곧 비민주주의적 성향을 실행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로소 신청인은 원고를 그러한 억지 민주주의자의 유형의 한 예로 거명하였다. 전면에 실질적인 진술이 있고 누가 그 기술된 유형에 해당하는가 하는 설명을 위하여 원고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 사안의 논쟁 테두리 안에서라면 민주주의적인 정치가라 하더라도 ‘억지 민주주의자’라고 하는 표시에 포함되는 비난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⁴⁰⁾⁴¹⁾

② 그러나, 공적인 인사에 대하여 그 인격이나 품성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바로 인신공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는 그 상대방 혹은 주제가 갖는 공적인 성질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대통령에 대한 경우에는 그 성품이나 인격에 대한 비판 역시 보호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당해 주제에 대한 비판을 하며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발언이 행해졌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인신공격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인신공격이 될 것인가? 이 문제는 결국 아래에서 살피게 될 표현 자체가 갖는 모욕성에서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나) 표현의 모욕성

주관적으로 심각한 모멸감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사회적인 품위(decency)에 반할 정도로 극단적인 표현일 것을 요한다. 객관적으로 사회적인 품위를 벗어난, 즉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사용된 언어의 문언상 의미, 대상 및 주제가 갖는 공공성, 전체적인 문맥, 발언자의 의도, 듣는 이들이 받아들이는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일 것이다. 판례상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정된 것으로는, ‘막가파 의회’, ‘공업용미싱으로 드르륵 드르륵 박아야 한다’, ‘공산계릴라식 빨치산전투’, 그리고 대상판결에서의 ‘사람답지 못한 사람’ 등의 표현이 있다.

40) 박용상, 같은 책 349면.

41) 같은 취지의 판결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02. 12. 17. 1 BvR 755/99, 1 BvR 756/99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2003. 가을) 152면 참조)

(다) 대상의 공공성과의 관계

①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욕과 공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욕은 서로 다른 취급을 하여야 할 것이다.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욕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상충이 문제될 여지가 별로 없으나, 공적인 영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본권의 상충 문제가 전면으로 부각되게 된다. 따라서 대상의 공적인 성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비록 그 의견 표명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인신 공격에 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의견 표명의 자유는 넓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⁴²⁾ 앞서 살핀바 있는 김홍신 의원의 ‘공업용미싱발언’에 대한 판결 중 ‘비판의 범주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다소 비난성의 표현을 가미하거나 풍자의 목적으로 단순하고 극적인 비유법을 활용하는 정도만으로는 모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한 것은 이러한 측면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② 한편, 최근 대법원 판례는 공적인 존재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신장하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이나 업무와 관련된 내용, 또는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측의 입증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향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하는가? 의견의 표명은 사실의 적시보다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공적 존재에 대한 의견 표명에 대하여 의견 표현 자체를 문제 삼아 불법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⁴³⁾

③ 인신공격적 의도와 공공성

공공성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 또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일 것과 동시에 주관적으로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을 요하나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하여 사익의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⁴⁴⁾ 이렇듯 우리 판례는 공공성은 객관적인 사안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도

42)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판결은, “민주정치제도 하에서는 정당활동의 자유도 너무나 중요하여 그 보장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되고,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수사적 과장표현은 용인될 수 있으므로,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43) 최근의 판례 경향에 대하여, 공적인 존재에 대한 사실 적시에 관하여는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고 있으나, 의견 표명의 문제에 대하여는 아직 대법원의 판례가 그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박철, 같은 논문 20면)

44)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527판결; 법원행정처, 언론재판실무편람(2001), 52면.

그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적인 대상에 대하여 논평하면서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하였다면 항상 이러한 공공성이 부정되어야 하는 것일까? 나아가 공적인 대상에 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며 이에 부가하여 인신공격적인 의견을 부가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표명에 인신공격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여 진실한 사실에 대한 공공성까지 모두 부정되어 결과적으로 표현행위 전체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하는가?

생각건대, 공적인 대상에 대한 표현이 일부 지나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위법성을 인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면 안될 것이다. 특히 공공의 이해에 관한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⁴⁵⁾ 또한 대상판결은 사실과 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병존하는 언론 보도에 대하여 사실의 적시 부분과 의견 표명부분이 병존하는 경우, 의견 표명부분만이 사실의 적시 부분과 독립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제 사실이 모두 사실이고, 공익에 관한 사항이라면 의견 표명 부분의 일부 지나친 표현을 들어 표현행위 전체의 공공성을 부정하기보다는, 의견 표명 부분에 대하여만 그 표현의 과도함을 문제삼아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대상판결은 이러한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⁴⁶⁾

3. 입증책임의 문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의견의 표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다만 판례의 태도는 그러한 의견 표명이 모멸적인 표현을 수반하여 인신공격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면 의견 표명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측이 의견 표명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⁴⁷⁾⁴⁸⁾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으로 인한 불법행

45) 대법원 2003. 7. 8. 선고2002다64384판결은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 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46) 그 실제적인 차이는 위자료 산정에 있을 것이다. 허위의 사실 적시보다 모욕적인 표현에 대하여 낮은 위자료가 정해진다고 하는 견해로는 법원행정처, 언론재판실무편람(2001) 18면이 있다.

47) 막가과 구의회 사건의 1심판결인 서울지방법원 2000. 11. 8. 선고 99가합69544판결에서도, 청구원인 단계에서 '언론의 논평의 자유를 일탈하여 모욕이 성립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8) 현재 언론소송 실무에서, 원고는 기사 중 문제 부분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기사 전체를 통하여 명예가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별 및 의견 중에

위를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관점에서 보아도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원고가 입증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며, 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적시보다 더 보호되는 의견 표명에 대하여 그 상당성의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부담시키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비판적 의견 표명이 모두 일응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바, 한계 설정이 불분명한 표현의 상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자칫 의견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4. 소결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판례는 의견 표명이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면책되나, 의견이라고 하여 지나치게 거칠고 모멸적인 경우까지 모두 의견 면책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님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보호받는 의견과 보호받지 아니하는 의견 사이의 한계를 공적인 의견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 표명이 인신공격이라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르고 있다. 이는 의견 표명이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공적인 논쟁 과정에서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이라면 비록 그 상대방이 불쾌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논쟁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모멸적인 표현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의견 표명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Falwell* 판결에서 천명한 사실 적시가 없는 한 공적 존재에 대한 의견 표명은 헌법적으로 보호받는다든 것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대법원의 이같은 태도,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의견과 보호받지 못하는 의견의 한계를 '인신공격'이라는 관점에서 찾는 것도 그 자체로 명확한 선을 제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논쟁의 대상이 된 공적인 존재의 행동이나 이념이 그

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것을 골라내는 작업은 대부분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가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입증책임을 거증책임일 뿐만 아니라 심증이 형성되지 아니하였을 때 그 불이익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의 판단규칙이기도 하며, 이러한 입증 책임의 분배를 바탕으로 각 당사자들에게 석명 등을 통하여 입증을 촉구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재판부의 심리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개인의 인격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의견이 과연 인신공격적인지를 판단하는 작업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분 역시 장차 판례와 학설의 집적에 의하여 정리될 부분이라고 본다.

IV. 결론

1. 본 판결의 의의

가. 본 판결은 의견 표명행위에 있어서 전제된 사실 관계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과는 별도로, 의견 표명 자체에 의한 독자적인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을 제시한 판결이다. 또한 의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진실이라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견의 표현 자체의 위법성에 의하여 독자적인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다.

나. 그리고 의견의 표현 자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검토함에 있어 전제 사실에 대한 과장과 인신공격적 요소라는 두 가지 요소를 제시한 판결로서 그 요건의 구체화는 장차 학설과 판례의 축적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의견 표명에 상징적이거나 풍자적 요소가 있다기보다는 직접 원고에 대하여 원색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인바, 원고는 변호사로서 대통령 등의 공무원과는 달리 원고의 변호사로서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넘어서 그의 인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언론의 비판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원고에 대하여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라는 모멸적인 표현을 한 것은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비판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들의 의견 표명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우리 법에서의 의견 표명의 "breathing space"

미국에서는 *Falwell*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의견의 표명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비록 사실의 적시가 없는 의견의 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 자체의 과도함을 이유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우리 법에서 의견 표명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의견 표명이라고 보일지라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거나, 또는 사실관

계를 전제할 때에는 그 암시되었거나 전제된 사실의 진실성 및 상당성에 의하여 불법행위의 성부가 결정될 것이고, 두 번째 그 의견 표명 자체의 표현 방식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한계 내에서 의견 표명의 자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조사보고>

2004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조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코리아리서치센터(책임연구원 오창엽 팀장)에 의뢰해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년간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했던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에서는 조사목적 및 방법, 조사결과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 그리고 조사내용 등을 게재한다.

참고로, 본 조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전년도 조사’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의 언론중재위원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03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연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조사와 1년 단위의 조사가 아닌 전년도 조사를 직접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참고 자료로는 볼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편집자 주

제 1 장 조사 목적 및 방법

본 조사는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년간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 그리고 위원회 내에 설치된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 이용만족도 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 : 언론중재제도 이용자(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의 신청인 517명, 피신청인 444명)
- 조사지역 : 전국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우편조사
- 표본크기 : 총 203명(신청인 110명, 피신청인 93명)
- 조사기간 : 2004년 10월 15일(금) ~ 11월 19일(금)
- 조사대행 : 코리아리서치센터

제 2 장 요약 및 시사점

제1절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대부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비해 비교적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신청인의 경우 전년도 조사 대비 다소 인지도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를 알게 된 방법으로는 신청인의 경우 방송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신청인의 경우는 신문보도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이점은 신청인의 경우 전년도 조사 대비 방송보도뿐만 아니라 신문보도나 TV광고, 주변 사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2003년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필요 이유로는 기

본권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와 명예와 같은 인격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제고되어 있으며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제2절 중재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중재처리과정에서의 중재위원들에 대한 평가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적극적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비율로는 피신청인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위원의 중재 중립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중립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아 전반적으로 중재 위원들의 중재중립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비율은 피신청인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위원의 중재권한은 신청인의 경우 응답의 분포가 정규분포의 모양을 나타내어 미흡하다는 의견과 강력하다는 응답이 골고루 나왔음을 알 수 있다. 피신청인의 경우 전년도 조사 대비 강력하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왔으며, 미흡하다는 의견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심리의 분위기는 자유롭다고 응답한 비중이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70% 이상을 차지해 절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비율은 전년도 조사와 대비해 볼 때 +30%p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중재제도가 법원의 재판과는 달리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분쟁해결에 이르러자 하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의 본 취지를 잘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3절 중재신청사건 관련 질문

중재신청 대상매체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에 대한 사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문제가 된 기사의 오보 유형에 대한 질문에서는 신청인의 약 58%가 편파보도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도 조사 대비 악의적 보도, 왜곡보도라고 응답한 비중이 다소 높아졌으며, 과장보도라고 응답한 비중은 다소 낮아졌다.

신청인은 문제가 된 보도로 인해 어떠한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명예훼손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년도 조사와 대비해 볼 때, 신용(재산)침해라고 응답한 비중이 다소 높아졌는데 이는 신용(또는 재산) 침해로 인한 중재 신청도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하기 전에 문제가 된 보도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한 조치로는 해당 언론사와 접촉해 항의를 하거나 반론을 요구한다는 응답비중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언론사와 접촉하여 먼저 반론을 요구하고 이것으로 해결이 안 되면 중재신청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하기 전 직접 항의하기 위해 언론사와 접촉한 경우, 그 접촉방법을 묻는 질문에서는 전화 접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직접방문, 서면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직접방문은 전년도 조사 대비 다소 증가한 추세를 보이나 서면 접촉은 다소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년도에 비해 서면보다는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인터넷게시판을 통해 언론사와 접촉했다는 비율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청인의 약 80%가 40대 이상의 연령대에 속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신청인이 항의를 위해 언론사와 접촉시, 언론사측은 어떤 지위에 있는 자가 그 항의를 접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담당기자 및 PD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도 조사와 대비해 볼 때 이 비중은 약 +6%p 증가한 반면 언론사 간부가 항의를 접수한 비중은 약 -5%p 떨어졌다.

신청인이 언론사에 직접 항의한 경우 가장 먼저 어떠한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정 및 반론문 게재요구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사과 요구에 대한 비중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이 직접 항의를 한 경우 언론사측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신청인은 언론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는 응답비율이 전체의 약 75%정도를 차지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비율은 약 21%정도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유사한 질문을 한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할 것을 제의했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중재신청 전에 언론사에 직접 항의를 한 적이 없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언론사와 접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효과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응답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청인들은 언론사의 벽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재신청을 한 이후에 신청인이 해당 언론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그 내용으로는 호의적인 기사 게재를 약속하면서 취하를 요구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조건 취하를 강요한다는 비중도 전년도 조사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질문을 피신청인에게 물어본 결과 호의적인 기사나 후속보도의 제안을 목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의견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의 경우 중재심리시 중재대리인으로 참석할 때 중재 대리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질문에서 위임인으로부터 중재와 관련하여 전권을 부여받는다는 응답비중이 57.8%로 나타나 전년도 조사 대비 +15.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재대리인들이 실질적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재대리허가여부와 관련하여 중재부의 심사가 보다 엄격해진 결과로 보인다.

제4절 언론중재위원회의 이용

중재신청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정신적인 보상을 받기 위함이라는 응답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확실한 피해 구제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중이 27.5%를 차지했다. 전년도 조사와

대비해 볼 때 정신적 보상을 위해서라는 응답비중은 증가하고 피해구제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비중은 감소했다.

중재신청 과정에서 상담을 경험한 경우 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의 약 56%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조사 대비 그 비율은 다소 낮아졌는데, 이는 상담결과 신청인이 인식하게 된 중재범위나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중재신청 처리결과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경우 평균 3.14점, 피신청인의 경우 평균 3.20점을 보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만족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 당사자의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합의도출이라는 중재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합의되었을 경우 만족도는 비슷하다. 그 밖에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전년도 조사 대비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결과 중재가 불성립된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신청인은 언론사가 잘못을 강력하게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한 보도문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취하한 이유로는 피신청인이 이미 잘못된 보도를 바로 잡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언론사의 조치 약속, 언론사의 사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전년도 조사 대비 이미 잘못된 보도를 바로 잡았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중이 다소 높아진 결과를 보이고 있다.

신청인이 중재가 불성립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소송에 따른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소송, 재판절차가 번거롭다는 응답이 있었다. 전년도 조사 대비 소송에 따른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비중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재판절차에 대한 번거로움 때문이라는 응답 비중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청인이 법원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소송과정에 요구되는 정신적·경제적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재위원회의 재이용 의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차후 다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대응 방법으로 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겠다는 응답이 약 7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 비중은 전년도 대비 약 +10%p 상승한 것이다. 또한 중재제도 이용 경험을 가진 신청인이 타인에게 중재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유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전체 비중의 약 90%가 중재신청을 권유하겠다고 하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추천할 의향을 보였다.

제5절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지난 2004년 4월 1일 언론중재위원회 내 설치된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에 대한 인지도조사에서 상담센터에 대해 알고 있는 비중은 신청인(25.5%)보다 피신청인(39.1%)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까지는 인지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며 상담센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담센터를 알게 된 경로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신문에 난 보도를 통해서라는 응답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밖에 신청인은 방송에 난 보도 및 언론중재위원회 발행책자, 그리고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한 인지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피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 발행책자, 신문광고를 통한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주내용으로 하는 상담센터의 교육·홍보 기능에 대해서는 이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각각 약 70%, 80%대의 높은 이용 의사를 보이고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주내용으로 하는 법무·상담 기능에 대해서도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약 85%의 높은 이용 의사를 나타냈다.

피신청인의 경우 언론사 내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해 본 비중은 약 43%로 나타나며,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참석해 본 적이 없다는 비중도 약 38.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교육프로그램이 있어도 참석해 보지 않은 경우가 약 18%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 참여를 위한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내 자체 교육프로그램 내용의 충실도에 대해서는 교육내용이 부실하다

는 의견이 전체의 약 13%를 차지하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9%를 보이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실시 주기로는 가끔 실시하는 비중이 약 7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 프로그램의 정착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 시간은 다소 부족하다는 비중과 보통이라는 비중이 각각 약 50%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충분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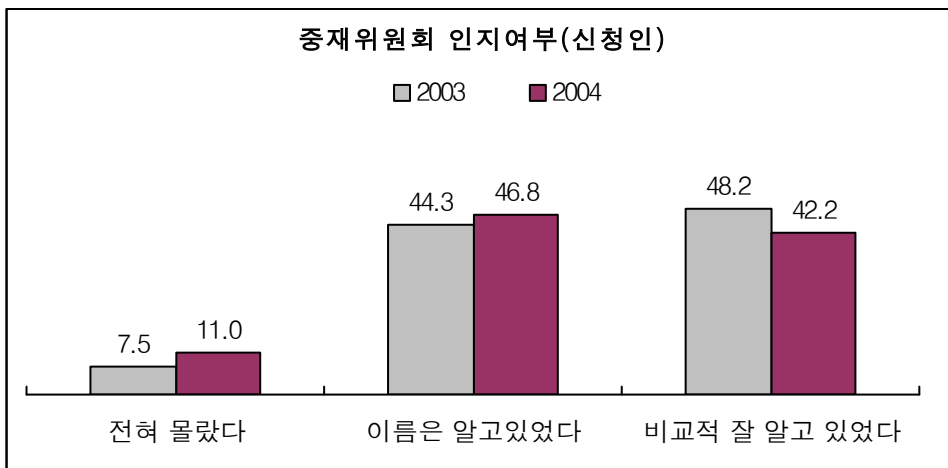
제 3 장 조사결과

제 1 절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

1. 언론중재위원회의 인지도

<표 1> 언론중재위원회 인지여부(신청인)

	2003		200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몰랐다	17	7.5	12	11.0
이름은 알고 있었다	100	44.3	51	46.8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	109	48.2	46	42.2
무응답	10	-	1	-
총계	236	100.0	1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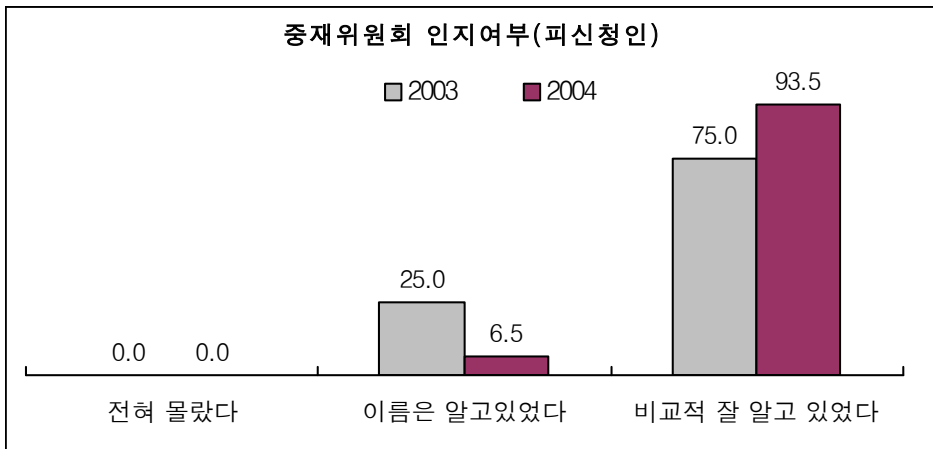


신청인에게 ‘중재신청 이전에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 역할을 알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이름은 알고 있었다(46.8%),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42.2%)로 전체의 89%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대외적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언론중재위원회 인지여부(피신청인)

	2003		200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몰랐다	0	0.0	0	0.0
이름은 알고 있었다	29	25.0	6	6.5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	87	75.0	87	93.5
무응답	11	-	0	-
총계	127	100.0	9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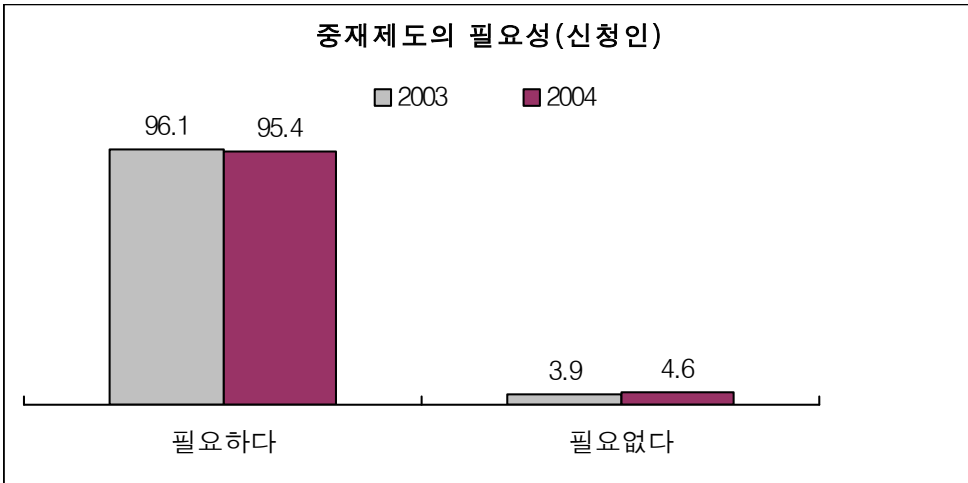


피신청인의 경우 모든 응답자가 인지는 하고 있었으며, 93.5%의 응답자가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전년도 조사(75.0%) 대비 인지여부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2.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

<표 3>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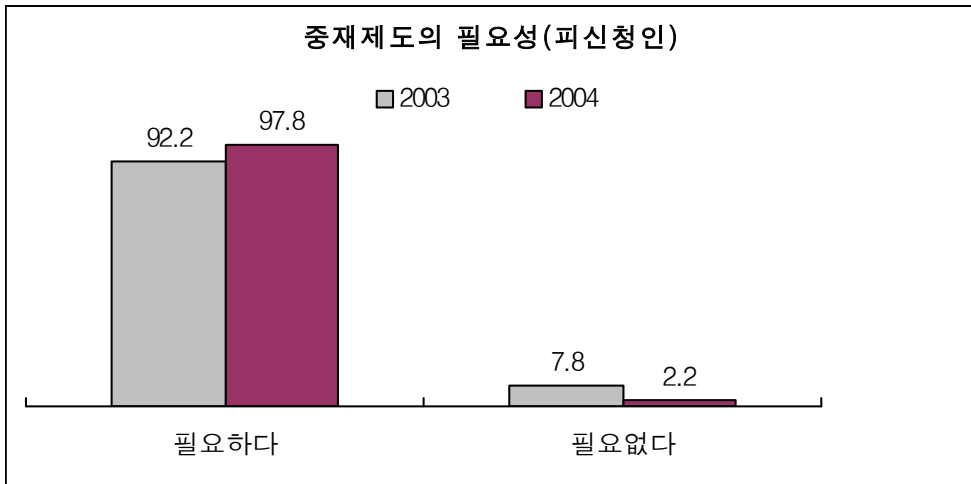
	2003		200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필요하다	220	96.1	104	95.4
필요없다	9	3.9	5	4.6
무응답	7	-	1	-
총계	236	100.0	110	100.0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언론중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신청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95.4%로 매우 높게 나타나, 대부분 중재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피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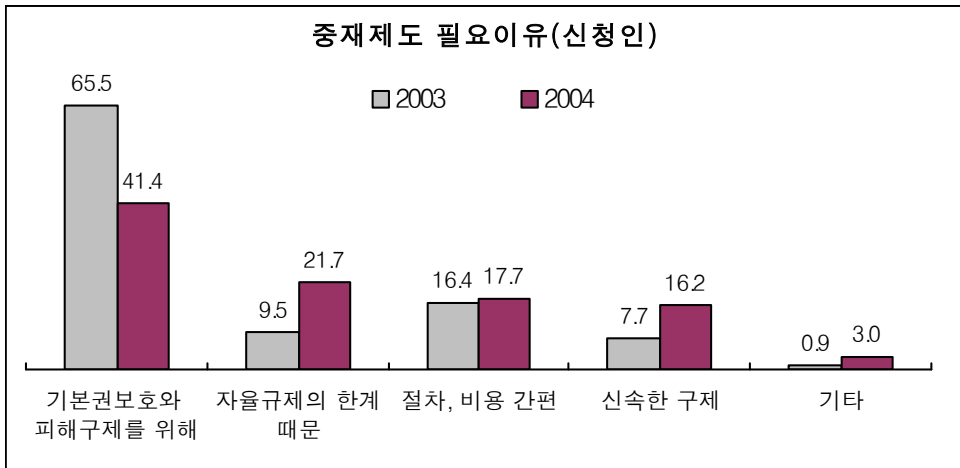
	2003		200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필요하다	106	92.2	91	97.8
필요없다	9	7.8	2	2.2
무응답	12	-	0	-
총계	127	100.0	93	100.0



피신청인의 경우 중재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97.8%로 전년도 조사(92.2%) 대비 +5.6%p 높게 나타났으며, 신청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중재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5> 중재제도의 필요이유(신청인-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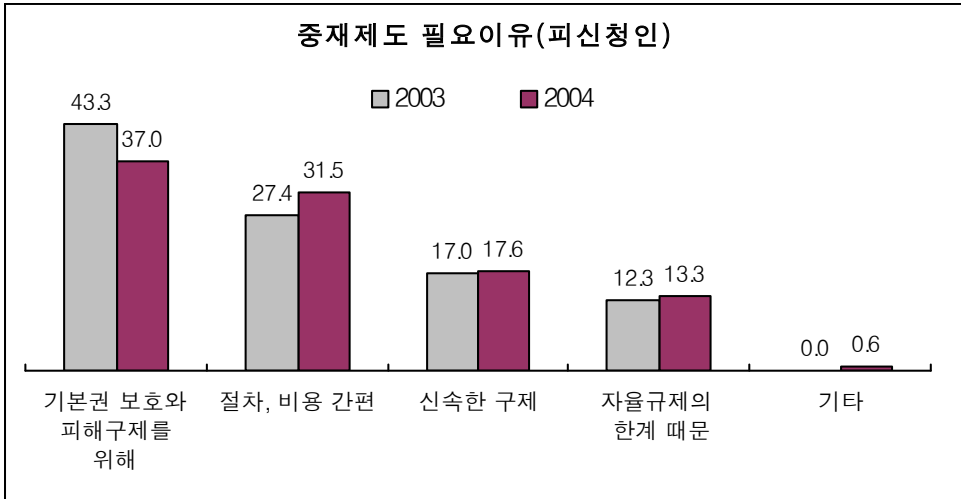
	2003		200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본권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144	65.5	82	41.4
자율규제의 한계 때문	21	9.5	43	21.7
절차, 비용 간편	36	16.4	35	17.7
신속한 구제	17	7.7	32	16.2
기타	2	0.9	6	3.0
무응답	16	-	1	-
총계	236	100.0	199	100.0



신청인의 경우 언론중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기본권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41.4%)’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자율규제의 한계 때문(21.7%)’ → ‘절차, 비용 간편(17.7%)’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중재제도의 필요이유(피신청인-복수응답)

	2003		200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본권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46	43.3	61	37.0
절차, 비용 간편	29	27.4	52	31.5
신속한 구제	18	17.0	29	17.6
자율규제의 한계 때문	13	12.3	22	13.3
기타	0	0.0	1	0.6
무응답	21	-	0	-
총계	127	100.0	1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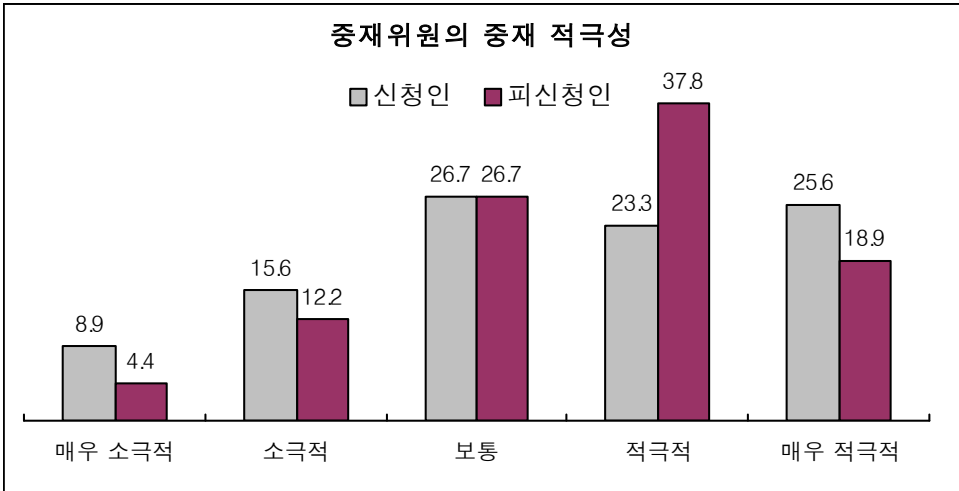
피신청인의 경우 ‘기본권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37.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절차, 비용 간편(31.5%)’ → ‘신속한 구제(17.6%)’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년도 조사와 대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제 2 절 중재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1. 중재위원에 대한 평가

<표 7> 중재위원의 중재 적극성(중재심리 참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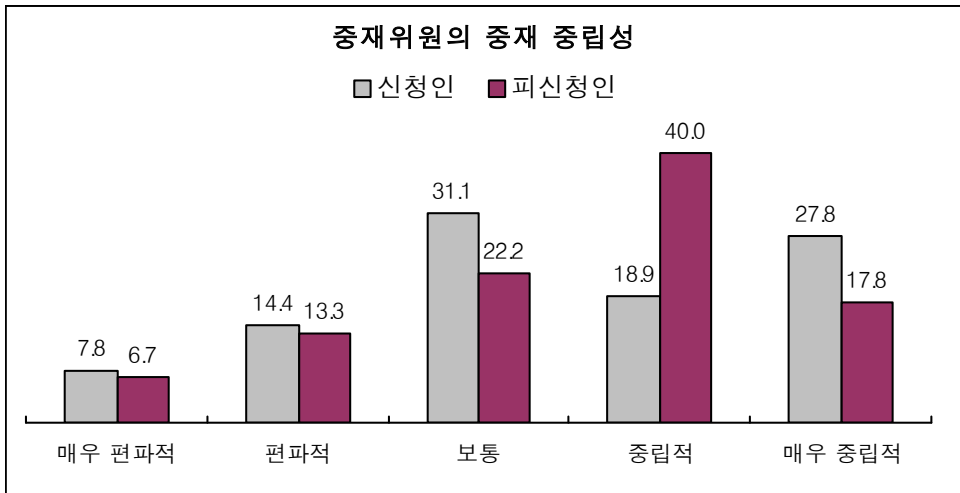
	신청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소극적	8	8.9	4	4.4
소극적	14	15.6	11	12.2
보통	24	26.7	24	26.7
적극적	21	23.3	34	37.8
매우 적극적	23	25.6	17	18.9
무응답	0	-	1	-
총계	90	100.0	91	100.0



중재 처리과정에서 받았던 중재위원들과 언론사에 대한 인상 중 ‘중재위원들의 중재 태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적극적+매우 적극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신청인의 경우 48.9%, 피신청인의 경우 56.7%로 나타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중재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중재에 적극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비율로는 피신청인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중재위원의 중재 중립성(중재심리 참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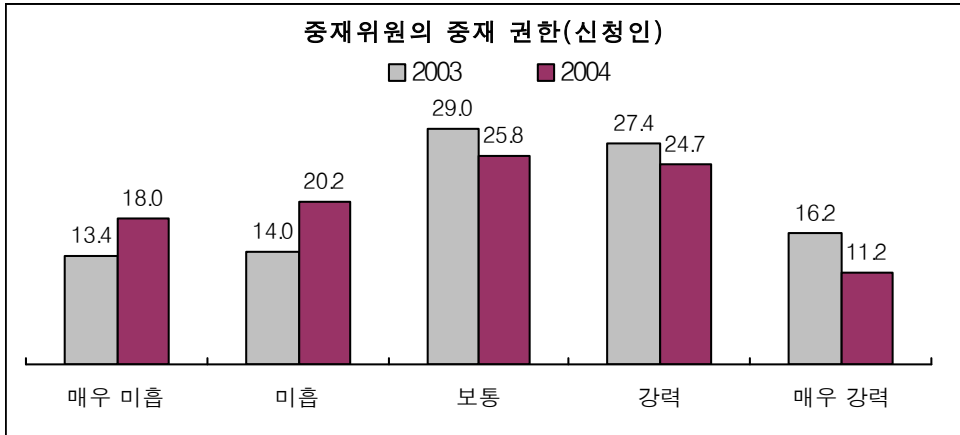
	신청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편파적	7	7.8	6	6.7
편파적	13	14.4	12	13.3
보통	28	31.1	20	22.2
중립적	17	18.9	36	40.0
매우 중립적	25	27.8	16	17.8
무응답	0	-	1	-
총계	90	100.0	91	100.0



‘중재 중립성’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경우 ‘중립적+매우 중립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6.7%, 피신청인의 경우 ‘중립적+매우 중립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57.8%를 보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전반적으로 중재 위원들의 중재 중립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중재위원의 중재권한(신청인-중재심리 참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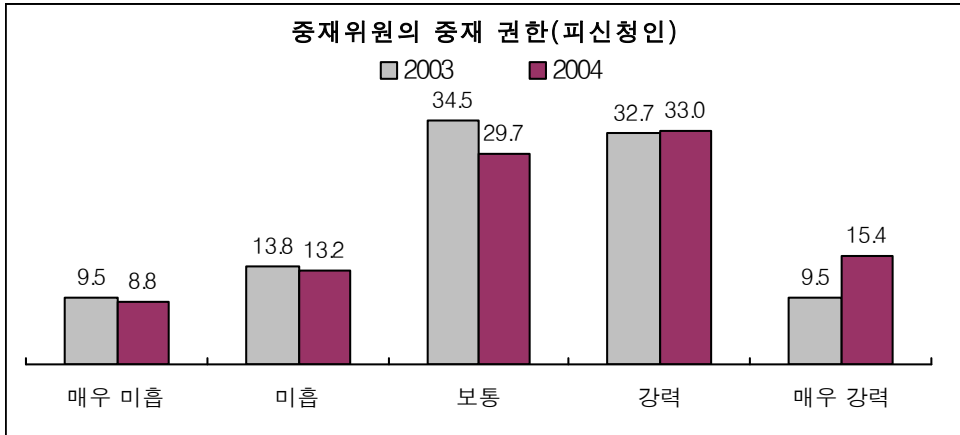
	2003		200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미흡	24	13.4	16	18.0
미흡	25	14.0	18	20.2
보통	52	29.0	23	25.8
강력	49	27.4	22	24.7
매우 강력	29	16.2	10	11.2
무응답	57	-	1	-
총계	236	100.0	90	100.0



중재위원의 중재 권한에 대한 평가에서는 신청인의 경우 ‘강력+매우 강력’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5.9%로 나타나며, ‘미흡+매우 미흡’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8.2%를 보여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전년도 대비 미흡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다소 높아졌다.

<표 10> 중재위원의 중재권한(피신청인-중재심리 참석자)

	2003		200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미흡	11	9.5	8	8.8
미흡	16	13.8	12	13.2
보통	40	34.5	27	29.7
강력	38	32.7	30	33.0
매우 강력	11	9.5	14	15.4
무응답	57	-	0	-
총계	236	100.0	9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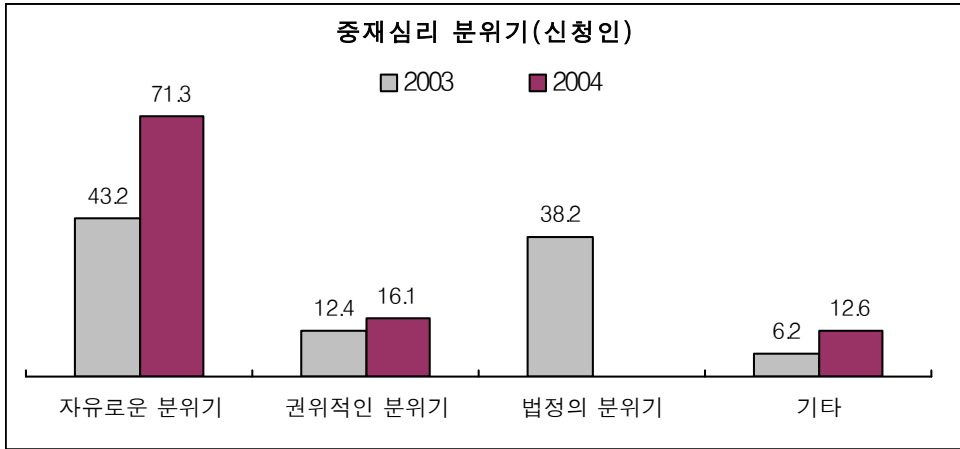


피신청인의 경우 중재 권한에 대해 ‘강력+매우 강력’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8.4%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조사(42.2%) 대비 중재 권한이 강력하다고 느끼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신청인의 경우와 다소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 중재신청사건과 관련된 신청인·피신청인의 입장

<표 11> 중재심리 분위기(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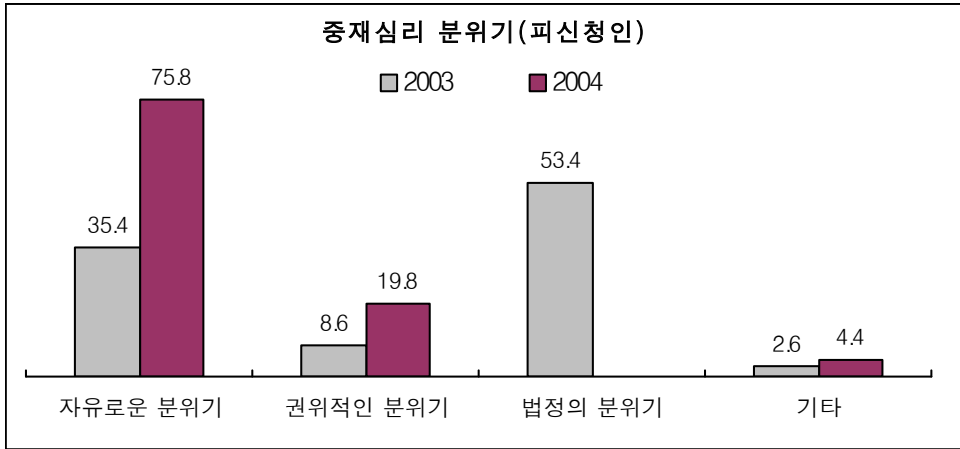
	2003		200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자유로운 분위기	77	43.2	62	71.3
권위적인 분위기	22	12.4	14	16.1
법정의 분위기	68	38.2	-	-
기타	11	6.2	11	12.6
무응답	58	-	3	-
총계	236	100.0	90	100.0



중재 심리 분위기에 대해서 신청인은 71.3%가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응답했으며, 권위적인 분위기라는 응답은 16.1%로 나타났다. 전년도 조사(43.2%) 대비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응답한 비중이 +28.1%p 높게 나타나며, 권위적인 분위기는 다소 높아진 것처럼 보이나 법정의 분위기를 합한다면 실제적으로 중재심리는 대체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타 의견으로 자유로운 분위기도 아닌 법정의 분위기도 아닌 중간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표 12> 중재심리 분위기(피신청인)

	2003		200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자유로운 분위기	41	35.4	69	75.8
권위적인 분위기	10	8.6	18	19.8
법정의 분위기	62	53.4	-	-
기타	3	2.6	4	4.4
무응답	11	-	0	0.0
총계	127	100.0	9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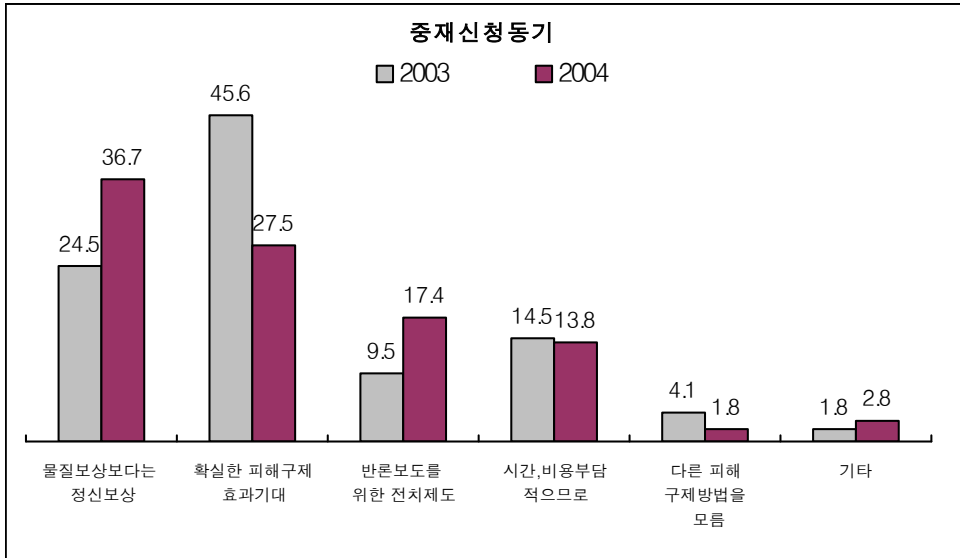
피신청인의 경우 중재심리 분위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75.8%)’가 높게 나타나며, 전년도 조사(35.4%) 대비 +40.4%p 높게 나타났다.

제 3 절 언론중재위원회의 이용

1. 중재신청 동기

<표 13> 중재신청 동기(2003-중복응답, 2004-단일응답)

	2003		200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물질보상보다는 정신보상을 원함	54	24.5	40	36.7
확실한 피해구제 효과기대	100	45.6	30	27.5
반론보도를 위한 전치제도이므로	21	9.5	19	17.4
시간, 비용부담 적기 때문	32	14.5	15	13.8
다른 피해구제방법을 모름	9	4.1	2	1.8
기타	4	1.8	3	2.8
무응답	0	-	1	-
총계	220	100.0	1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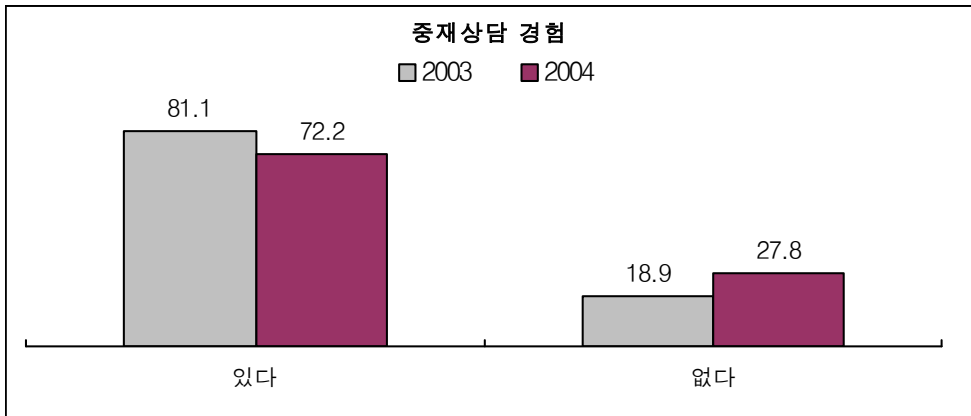


신청인이 중재신청한 동기로는 ‘물질보상보다는 정신보상(36.7%)’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확실한 피해구제 효과기대(27.5%)’ → ‘반론보도를 위한 전치제도(17.4%)’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조사 대비 정신보상을 받기 위해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다소 늘었으며, 반면 확실한 피해구제 효과를 기대하는 비중은 다소 떨어진 결과를 보인다.

2. 상담경험 및 만족도

〈표 14〉 중재상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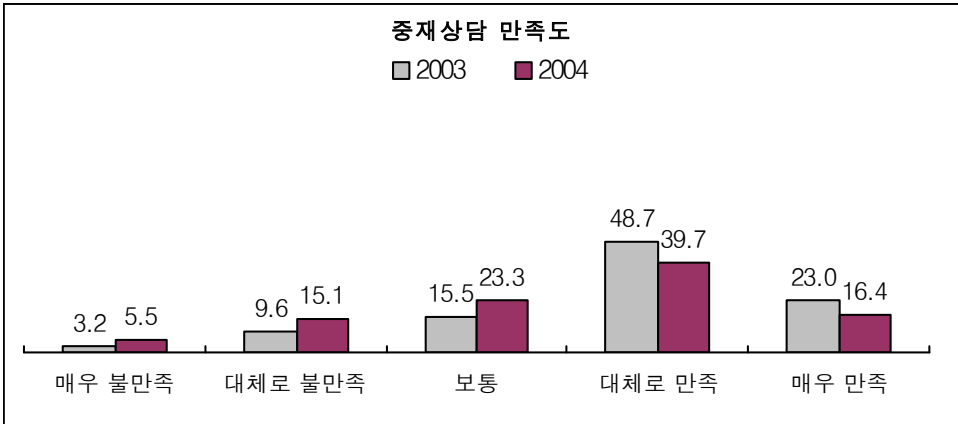
	2003		200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있다	187	81.1	78	72.2
없다	43	18.9	30	27.8
무응답	6	-	2	-
총계	236	100	110	100.0



중재상담을 경험했는가라는 질문에 경험이 있는 비중이 전체의 72.2%로 전년도 조사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나긴 하였으나 중재상담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상담 횟수로는 1회가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3회 상담자도 전체의 41.9%를 차지하고 있다.

<표 15> 중재상담 만족도

	2003		200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불만족	6	3.2	4	5.5
대체로 불만족	18	9.6	11	15.1
보통	29	15.5	17	23.3
대체로 만족	91	48.7	29	39.7
매우 만족	43	23.0	12	16.4
무응답	0	-	5	-
총계	187	100.0	7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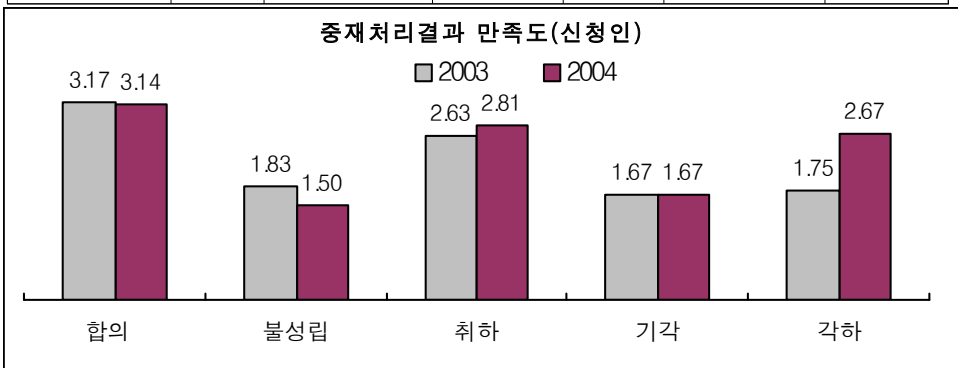


중재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의 56.1%가 ‘대체로 만족’ 내지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해 상담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도 조사 대비 그 비율은 다소 낮아졌는데 이는 상담 결과 신청인이 인식하게 된 언론중재 위원회의 중재범위나 권한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3. 중재처리결과

<표 16> 신청인의 중재처리결과 만족도(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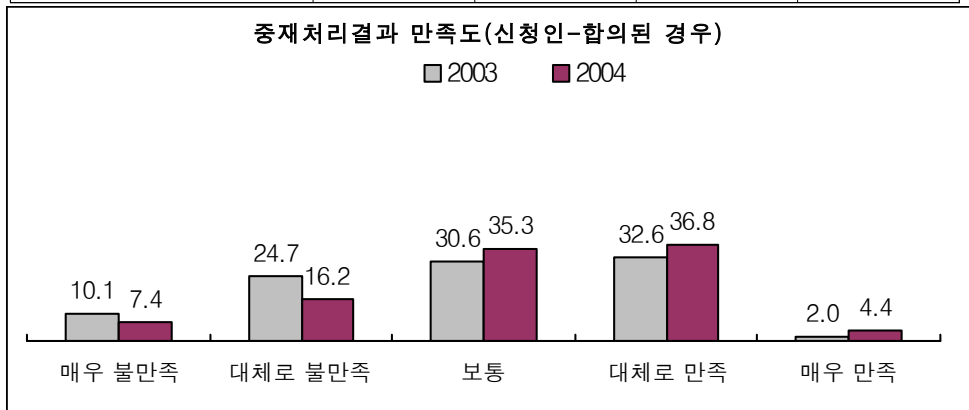
	2003			2004		
	개체수	평균(Mean)	표준편차	개체수	평균(Mean)	표준편차
합의	152	3.17	0.89	77	3.14	1.00
불성립	43	1.83	0.95	25	1.50	0.86
취하	42	2.63	1.09	22	2.81	1.42
기각	13	1.67	0.89	4	1.67	0.58
각하	9	1.75	0.89	5	2.67	2.08
총계	259	-	-	133	-	-



중재처리 결과 만족도 평가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신청인의 경우 중재 합의됐을 경우가 평균 3.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각하(2.67점)의 경우 전년도 조사 대비 평균 +0.92점 높게 나타났다.

<표 17> 중재처리결과 만족도(합의된 경우-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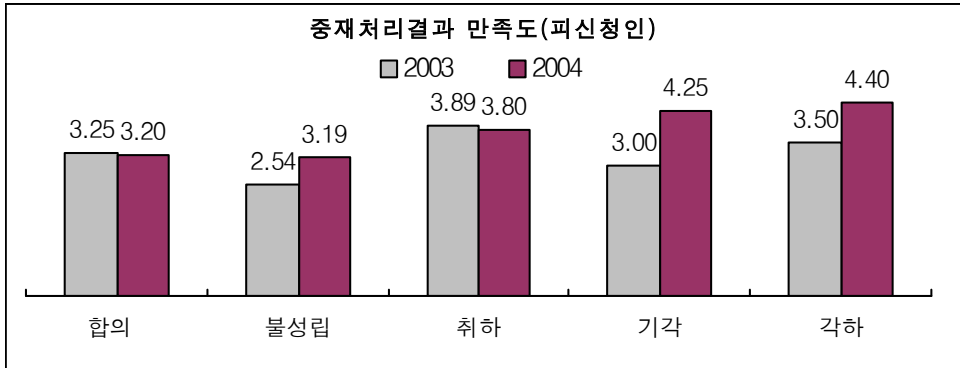
	2003		200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불만족	15	10.1	5	7.4
대체로 불만족	37	24.7	11	16.2
보통	46	30.6	24	35.3
대체로 만족	49	32.6	25	36.8
매우 만족	3	2.0	3	4.4
무응답	0	-	9	-
총계	150	100.0	77	100.0



중재 처리 결과 합의된 경우 신청인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전년도 조사대비 신청인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피신청인의 중재처리결과 만족도(중복응답)

	2003			2004		
	개체수	평균(Mean)	표준편차	개체수	평균(Mean)	표준편차
합의	81	3.25	1.03	74	3.20	0.88
불성립	35	2.54	1.31	38	3.19	1.27
취하	9	3.89	1.05	11	3.80	1.03
기각	5	3.00	1.22	14	4.25	0.62
각하	2	3.50	2.12	10	4.40	0.84
총계	132	-	-	14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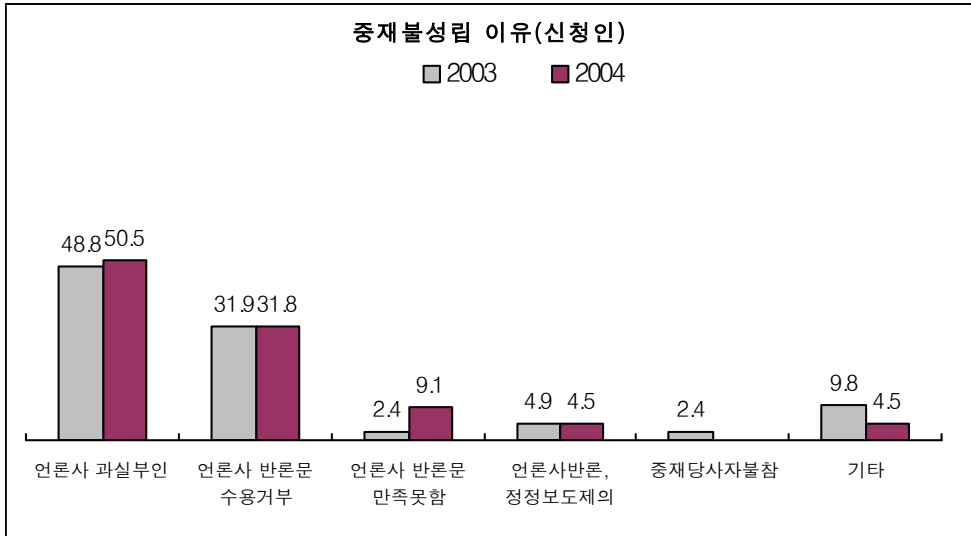


피신청인의 경우 중재처리 결과 전반적으로 전년도 조사 대비 만족도가 비슷하거나 높게 나타난 가운데, 기각, 각하되었을 경우의 만족도가 각각 +1.25점, +0.9점 높아진 결과를 보인다.

4. 중재불성립 이유

<표 19> 중재불성립 이유(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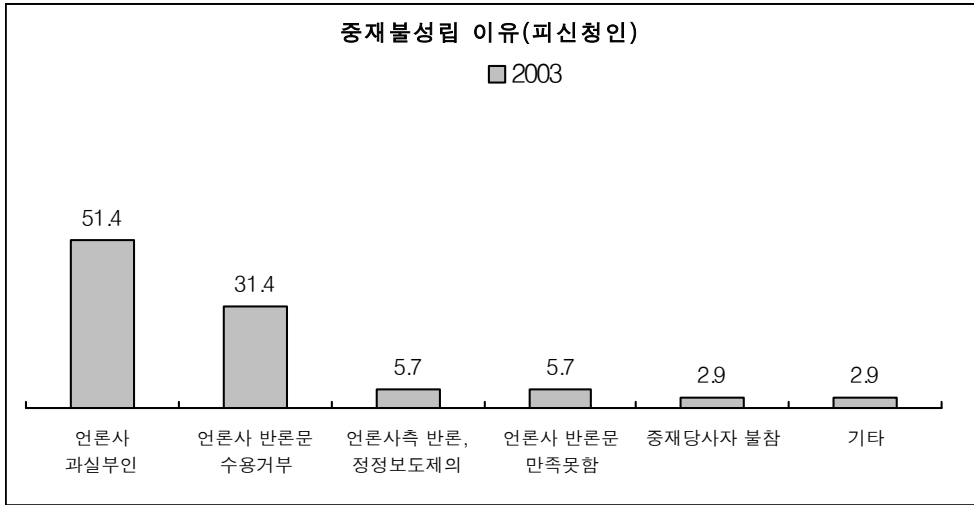
	2003		200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언론사의 과실부인	20	48.8	11	50.0
언론사가 반론문 수용거부	13	31.9	7	31.8
언론사 반론문에 만족 못함	1	2.4	2	9.2
언론사측의 반론, 정정보도제의	2	4.9	1	4.5
중재당사자 불참	1	2.4	-	-
기타	4	9.8	1	4.5
무응답	-	-	3	-
총계	41	100.0	25	100.0



신청인의 중재가 불성립된 이유로는 ‘언론사 과실부인’이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그 다음으로 ‘언론사 반론문 수용거부(31.8%)’ → ‘언론사 제시 반론문 만족 못함(9.1%)’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조사 대비 전반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이나 언론사 반론문에 대해 만족 못하는 비중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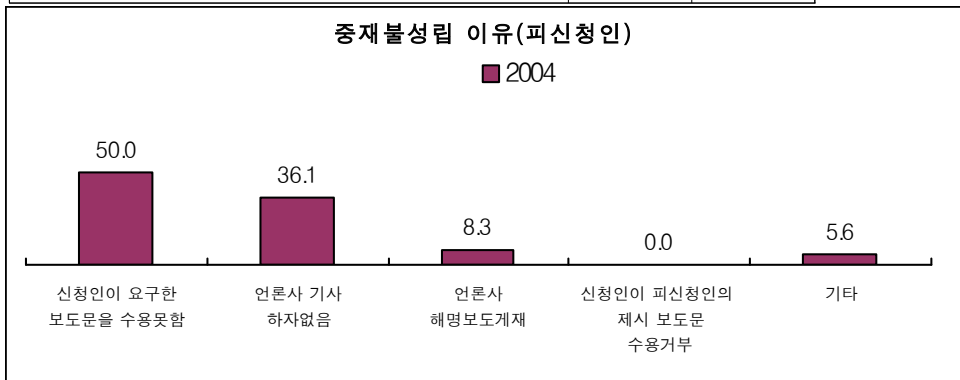
<표 20> 중재불성립 이유(피신청인-2003)

	2003	
	빈도	백분율
언론사의 과실부인	18	51.4
언론사가 반론문 수용거부	11	31.4
언론사측의 반론, 정정보도제외	2	5.7
언론사 반론문에 만족 못함	2	5.7
중재당사자 불참	1	2.9
기타	1	2.9
총계	35	100.0



<표 21> 중재불성립 이유(피신청인-2004)

	2004	
	빈도	백분율
신청인이 요구한 보도문을 수용못함	18	50.0
언론사의 기사에 하자가 없음	13	36.1
언론사에서 해명보도 게재	3	8.3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제시 보도문 수용거부	0	0.0
기타	2	5.6
무응답	2	-
총계	3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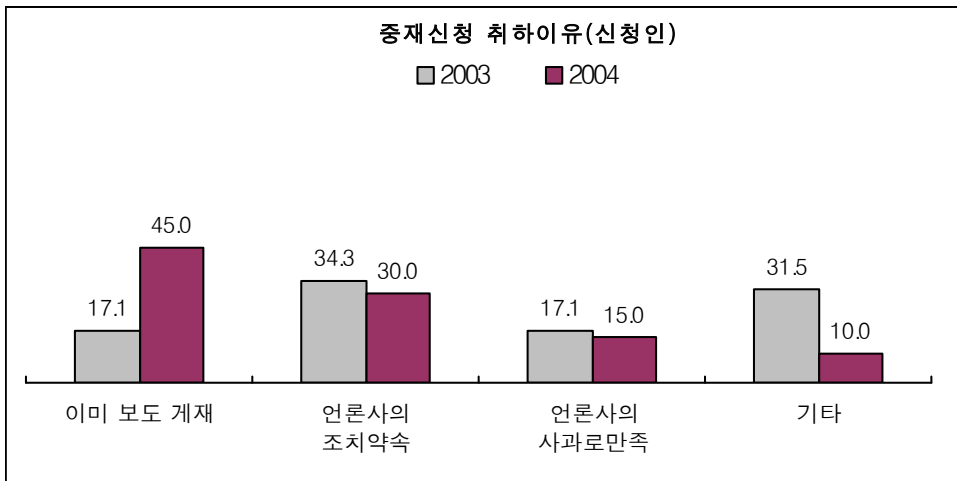
피신청인의 중재 불성립 이유로는 ‘신청인이 요구한 보도문을 수용 못함’이 50.0%로 응답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그 다음으로 ‘언론사 기사 하자 없음 (36.1%)’ → ‘언론사 해명보도게재(8.3%)’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같은 중재불성립 이유를 물어보았는데도 이유에 차이가 있는 것은 중재 당시 자

신의 입장을 조금 더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중재신청 취하이유

<표 22> 중재신청 취하이유(신청인)

	2003		200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이미 보도 게재	6	17.1	9	45.0
언론사의 조치약속	12	34.3	6	30.0
언론사의 사과로 만족	6	17.1	3	15.0
기타	11	31.5	2	10.0
무응답	0	-	2	-
총계	35	100.0	2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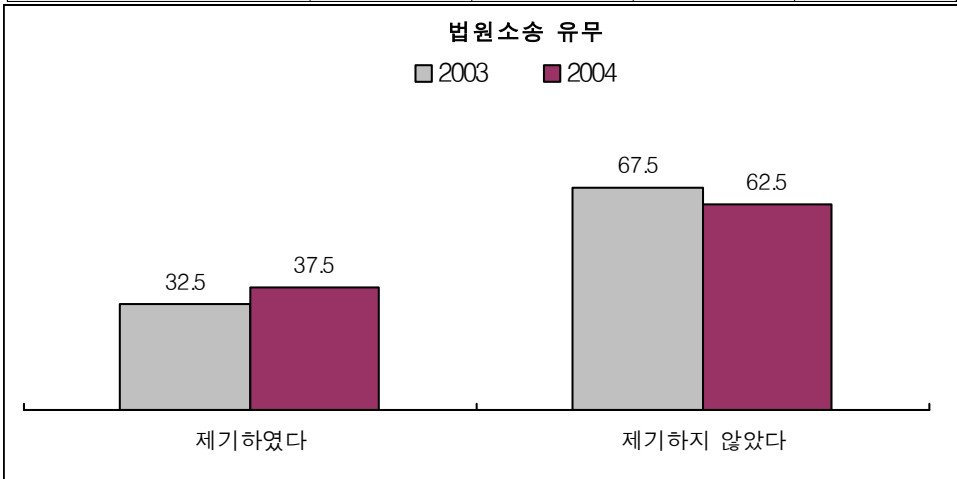


신청인의 경우 중재신청을 취하한 이유로는 ‘이미 보도게재(45.0%)’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그 다음으로 ‘언론사의 조치약속(30.0%)’ → ‘언론사의 사과로 만족(15.0%)’ 순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조사 대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응답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이유는 다소 떨어지게 나타났다.

6. 법원 소송여부

<표 23> 법원소송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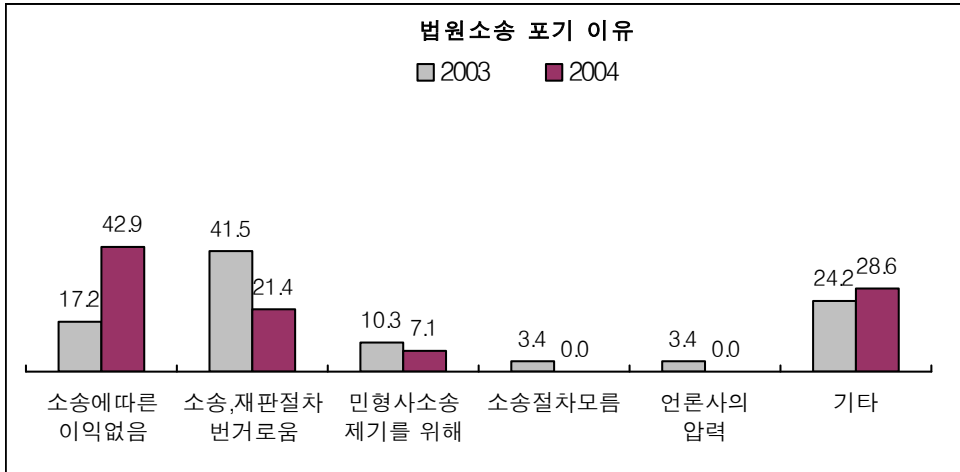
	2003		200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제기하였다	13	32.5	9	37.5
제기하지 않았다	27	67.5	15	62.5
무응답	3	-	1	-
총계	43	100.0	25	100.0



중재불성립 사건 중 신청인이 법원소송을 제기한 비중은 37.5%로 나타나며, 2003년 대비 +5.0%p 높게 나타났다.

<표 24> 법원소송포기 이유

	2003		200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소송에 따른 이익 없음	5	17.2	6	42.9
소송, 재판절차의 번거로움	12	41.5	3	21.4
민, 형사소송제기를 위해	3	10.3	1	7.1
소송절차를 모름	1	3.4	0	0.0
언론사의 압력 때문	1	3.4	0	0.0
기타	7	24.2	4	28.6
무응답	0	-	1	-
총계	29	100.0	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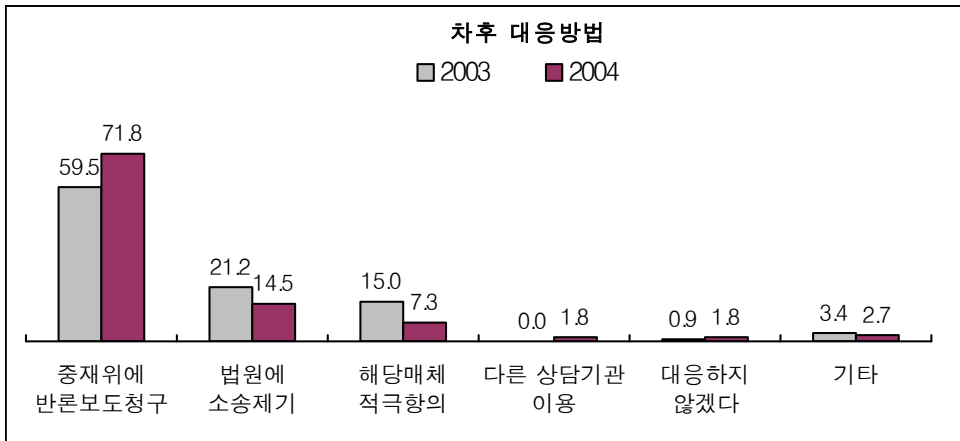
법원소송을 포기한 이유로는 ‘소송에 따른 이익 없음(42.9%)’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소송, 재판절차 번거로움(21.4%)’ → ‘민형사소송 제기를 위해(7.1%)’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조사 대비 절차 번거로움이라는 응답율이 다소 떨어졌으며, 소송에 따른 이익이 없어 포기한 비중은 +25.7%p 높아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타 포기 이유로는 ‘추후 당사자간 합의’, ‘시간이 오래 걸리며 효과가 적어서’, ‘해당언론사의 보복성 보도가 부담스러워서’ 라는 응답이 있었다.

7. 차후 중재제도 재이용 의향

<표 25> 유사 사안에 대한 차후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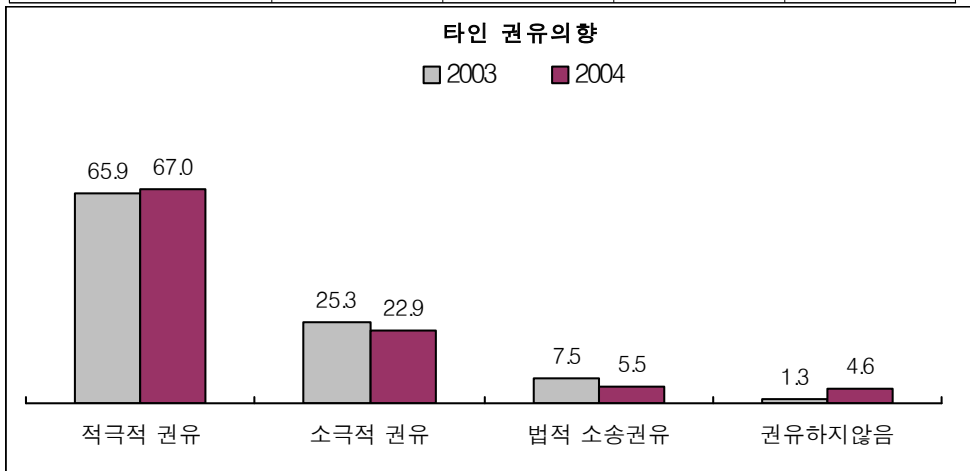
	2003		2004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중재위에 반론보도청구	135	59.5	79	71.8
법원에 소송제기	48	21.2	16	14.5
해당매체에 적극항의	34	15.0	8	7.3
다른 상담기관 이용	0	0.0	2	1.8
대응하지 않겠다	2	0.9	2	1.8
기타	8	3.4	3	2.7
무응답	9	-	0	-
총계	236	100.0	110	100.0



차후에 다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대응방법으로는 ‘중재위에 반론보도청구(71.8%)’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도 조사(59.5%) 대비 +12.3%p 높아진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26> 타인 권유의향

	2003		200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적극적으로 권유	149	65.9	73	67.0
소극적으로 권유	57	25.3	25	22.9
법적 소송권유	17	7.5	6	5.5
권유하지 않음	3	1.3	5	4.6
무응답	10	-	1	-
총계	236	100.0	1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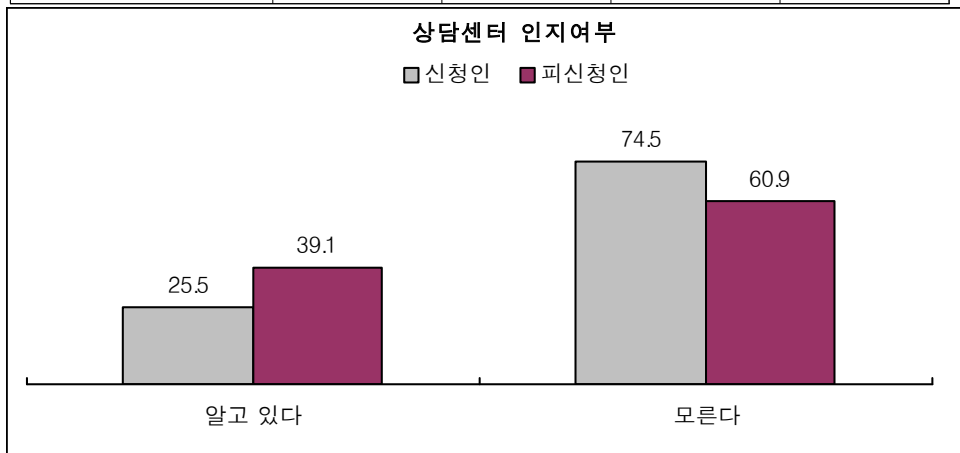
중재신청 권유의향으로는 ‘적극적 권유(67.0%)’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그 다음으로 ‘소극적 권유(22.9%)’ → ‘법적 소송권유(5.5%)’ → ‘권유하지 않음(4.6%)’ 순으로 나타났다.

제 4 절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1.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인지 여부

<표 27> 상담센터 인지여부

	신청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알고 있다	28	25.5	36	39.1
모른다	82	74.5	56	60.9
무응답	0	-	1	-
총계	110	100.0	9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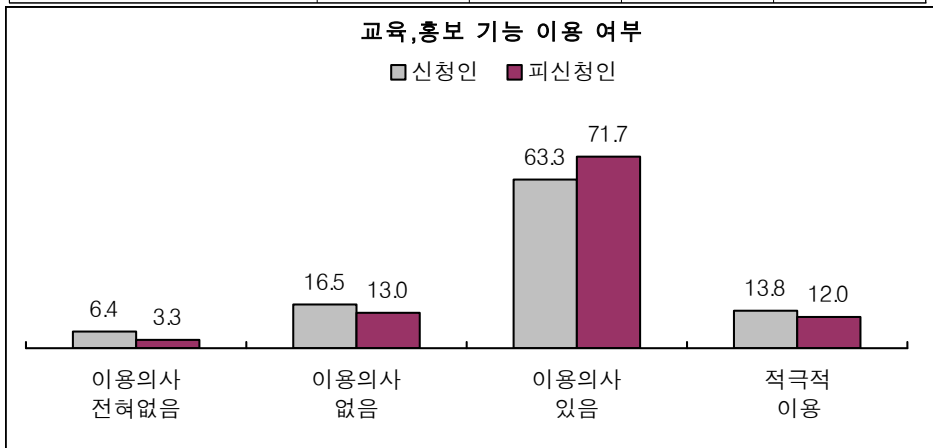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를 알고 있는 비중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각각 25.5%, 39.1%로 나타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비해 인지율이 +13.6%p 높게 나타났다.

2. 상담센터 교육·홍보 기능 이용 의사 여부

<표 28> 상담센터 교육·홍보 기능 이용 의사 여부

	신청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이용의사 전혀 없음	7	6.4	3	3.3
이용의사 없음	18	16.5	12	13.0
이용의사 있음	69	63.3	66	71.7
적극적 이용	15	13.8	11	12.0
무응답	1	-	1	-
총계	110	100.0	9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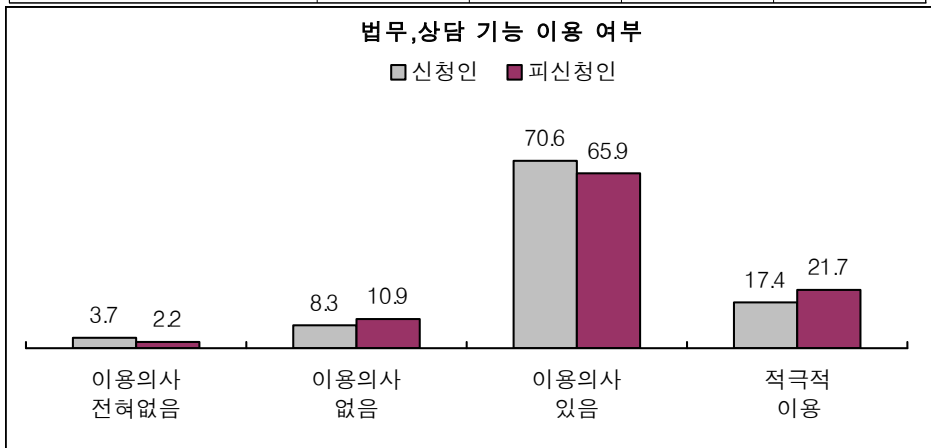


상담센터의 교육·홍보 기능 이용 의사에 대한 질문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대부분은 이용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비해 이용의사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3. 상담센터 법무·상담 기능 이용 의사 여부

<표 29> 상담센터 법무·상담 기능 이용 의사 여부

	신청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이용의사 전혀 없음	4	3.7	2	2.2
이용의사 없음	9	8.3	10	10.9
이용의사 있음	77	70.6	60	65.9
적극적 이용	19	17.4	20	21.7
무응답	1	-	1	-
총계	110	100.0	9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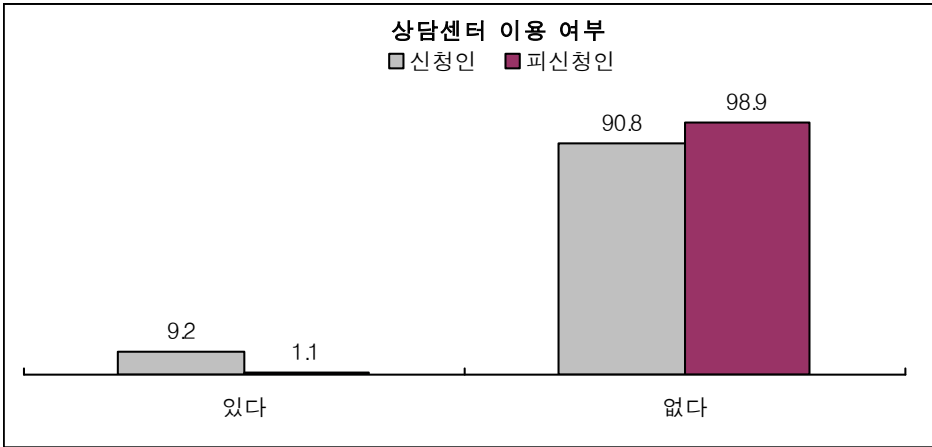


상담센터의 법무·상담 기능 이용 의사를 묻는 질문에서는 이용 의사가 있는 비중이 전체의 약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신청인, 피신청인의 대부분은 법무·상담 기능을 이용할 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상담센터 이용 여부

<표 30> 상담센터 이용 여부

	신청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있다	10	9.2	1	1.1
없다	99	90.8	90	98.9
무응답	1	-	2	-
총계	110	100.0	9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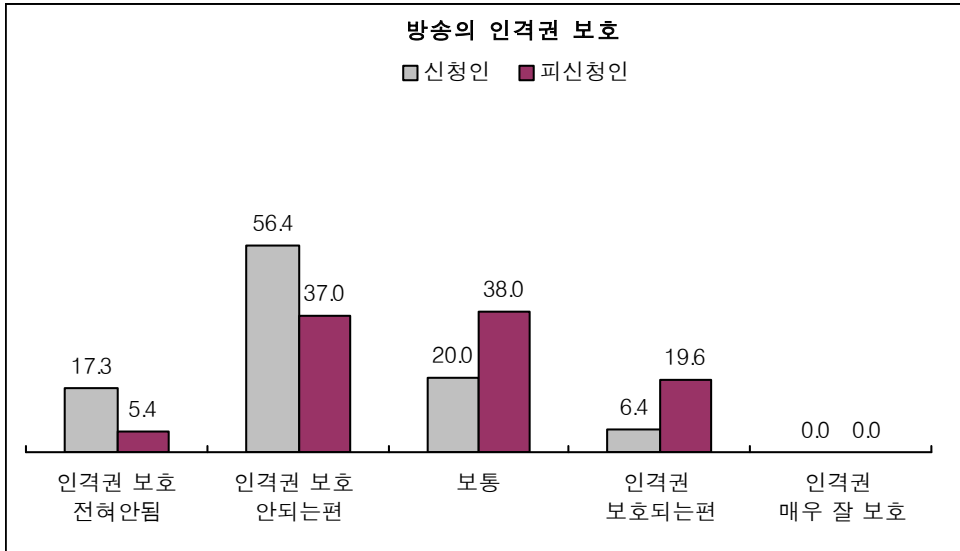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대부분이 상담센터를 이용해본 경험이 없었고, 향후 이용 의사가 높으므로 상담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5 절 언론에 관한 일반적 사항

1. 방송의 인격권 보호

<표 31> 방송의 인격권 보호

	신청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인격권 보호가 전혀 안됨	19	17.3	5	5.4
인격권 보호가 안되고 있는 편	62	56.4	34	37.0
보통	22	20.0	35	38.0
인격권이 보호되고 있는 편	7	6.4	18	19.6
인격권이 매우 잘 보호	0	0.0	0	0.0
무응답	0	-	1	-
총계	110	100.0	9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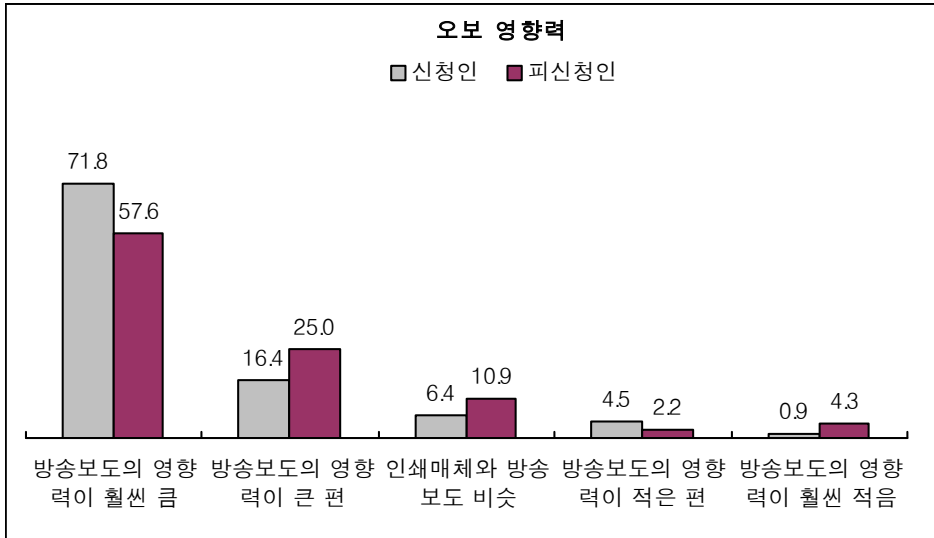


방송의 인격권 보호와 관련해 신청인의 경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비중이 73.7%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비중은 6.4%에 불과하다. 또한, 피신청인의 경우도 부정적인 반응이 많기는 하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비중이 19.6%로 신청인에 비해 +13.2%p 높게 나타났다.

2. 오보 영향력

<표 32> 오보 영향력

	신청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방송보도의 오보 영향력이 훨씬 큼	79	71.8	53	57.6
방송보도의 오보 영향력이 큰 편	18	16.4	23	25.0
인쇄매체와 방송보도 비슷	7	6.4	10	10.9
방송보도의 오보 영향력이 적은 편	5	4.5	2	2.2
방송보도의 오보 영향력이 훨씬 적음	1	0.9	4	4.3
무응답	0	-	1	-
총계	110	100.0	9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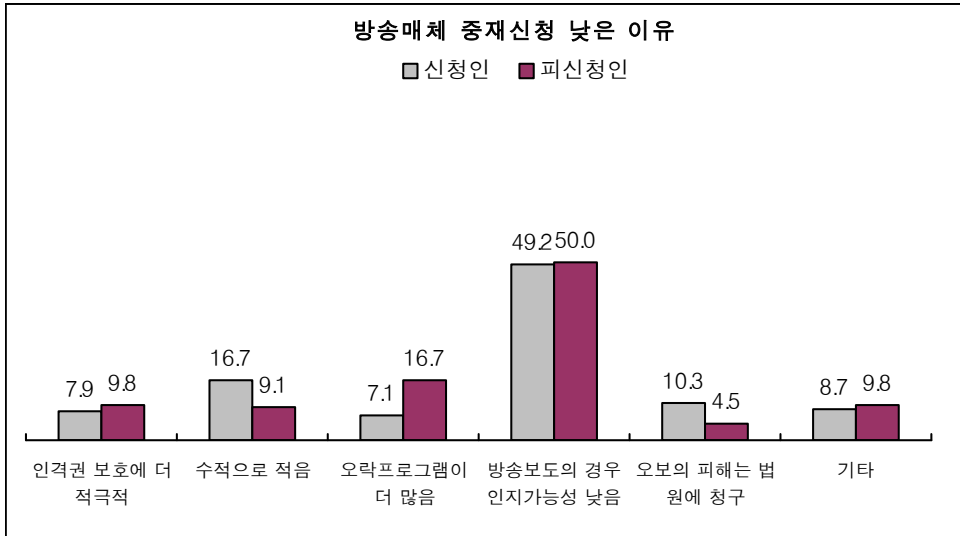


인쇄매체와 방송보도의 오보 영향력 비교에서는 방송보도의 영향력이 크다는 의견이 절대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 방송매체의 중재신청이 낮은 이유

<표 33> 방송매체 중재신청이 낮은 이유(복수응답)

	신청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방송매체가 인격권 보호에 더 적극적	10	7.9	13	9.8
방송매체가 수적으로 적음	21	16.7	12	9.1
방송매체가 오락프로그램이 더 많음	9	7.1	22	16.7
방송보도의 경우 인지가능성이 낮음	62	49.2	66	50.0
방송매체 오보의 피해는 법원에 청구	13	10.3	6	4.5
기타	11	8.7	13	9.8
무응답	5	-	1	-
총계	131	100.0	133	100.0



방송매체의 중재신청이 낮은 이유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방송보도의 짧은 노출시간으로 인해 피해 당사자가 그 내용을 인지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약 50.0%로 나타났다.

중국 · 싱가포르의 언론법제 및 언론피해구제제도 현황

I. 서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 1일 공산당 일당독재라는 독특한 정부형태로 건국된 인구 12억의 거대한 사회주의 국가이다. 1993년 신헌법 제1조에서도 중국의 국가형태는 “노농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물론 현재에는 시장경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개방, 개혁정책에 따라 ‘중국 독자적인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사회주의 국가임은 분명하다.

이번 해외시찰은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언론의 기능 및 역할, 언론관련 법제, 언론피해구제 등을 비교 연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개괄적인 언론법제 현황과 북경의 인민일보, 상하이의 문화보 편집책임자들을 통해 확인한 언론피해구제제도 현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싱가포르 및 홍콩의 언론피해구제제도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중국의 언론법제 현황

1. 입법현황

중국은 건국 이후 1952년에 최초로 헌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1982년 12월 제5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제5차 회의를 통과한 현행 헌법이 공포 · 시행되었으며, 1988년 4월과 1993년 3월에 각각 부분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¹⁾

이러한 헌법규정들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들은 국민의 인격적 존엄을 보호하는 제38조에 의해 인격권, 구체적으로 명예권, 영예권, 초상권, 성명권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리고 헌법 제22조는 매체산업의 문화적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규정이고, 제35조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권의 일종으로서 언론 · 출판자유를 보장하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다.

한편 중국정부의 시장경제 원리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언론, 출판사업은 당 영도하의 공유제를 기초로 한 사회주의 사업이므로, 제22조에 언론매체사업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35조가 국민의 언론기관 창설의 자유까지 보장한 규정은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헌법 제38조 규정에 근거하여 형법 제138조와 제145조에 처벌규정을 마련해 두고

1) 현행 헌법 가운데 언론관련 법조문은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다.

제22조 제1항 국가는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문학예술사업, 신문 · 방송 · TV사업, 출판 발행사업, 도서관 · 문화관, 기타 문화사업을 발전시키며 대중적인 문화활동을 전개한다.

제3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 · 행진 ·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제38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인격의 존엄성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국민에 대하여 모욕 · 비방 및 무고 · 모함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1조 제1항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건의할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국가공무원의 위법 · 매직행위에 대하여 관계 국가기관에 청원 · 고소 또는 고발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여 무고 모함할 수 없다.

제51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국가 · 사회 · 집단의 이익 및 다른 국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있다.²⁾

1986년 4월 12일 제6기 전인대(全人大) 제4차 회의를 통과, 공포되고 경과기간을 거쳐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통칙’에는 언론의 인권침해에 관련된 다수의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³⁾

2. 신문소송 경향 및 언론법 제정문제

현재 중국에서는 민법통칙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명예권 침해 관련 신문소송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수년 사이에 수많은 민사소송사건들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수천건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명예권 침해와 관련된 신문소송사건의 4분의 1이 사생활의 비밀권-이를 중국에서는 은사권(隱私權)이라고 부르고 이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프라이버시권이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권리로 파악됨- 침해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민법통칙에는 은사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제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5기 전인대(全人大) 제3차 회의 기간인 1980년 초에 최초로 상정되었던 언론법은 매 회기마다 상정이 되풀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III. 중국의 언론피해구제 제도 현황

1. 방문 언론사 개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와 같은 전문적인 피해구제제도 및 구제전담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민법통칙의 시행에 따라 권리침해를 이유로 한 신문소송의 제기는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중국의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한 현황과약은 중국 내 유력 신문사들의 자율적인 구제방법 및 구제제도 정비여부 파악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번 시찰에서는 북경의 인민일보(人民日報), 상하이의 문회보(文匯報), 홍콩의

2) 형법 제138조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을 사용하여 간부나 군중을 무고·모함하는 것을 엄금한다.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무고·모함한 자는 무고의 죄행의 성질, 정황, 결과 및 양형표준을 참조하여 형사처벌한다. 국가 업무원이 무고·모함의 죄를 범했을 때에는 가중처벌한다. 의도를 가진 무고·모함이 아니고 착오로 또는 신빙성이 없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형법 제145조 폭력이나 대자보 또는 소자보를 포함한 기타의 방법을 사용하여 공연히 타인에게 모욕을 주거나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비방했을 때 그 정황이 엄중하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금고 또는 정치권리를 박탈한다. 이 죄는 고소에 의해 처리하며 사회질서와 국가이익에 엄중한 위해가 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제99조 공민은 성명권을 가진다. 또 자기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자기의 성명을 고칠 수도 있다.

제100조 공민은 초상권을 향유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공민의 초상권을 사용할 수 없다.

제101조 공민과 법인은 명예권을 향유하며 공민의 인격적 존엄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모욕과 비방 등의 방식으로 공민과 법인의 명예를 손상할 수 없다.

제102조 공민과 법인은 영예권을 향유한다. 불법으로 공민과 법인의 명예와 칭호를 박탈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20조 공민의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영예권이 침해당했을 때 침해의 정지, 명예의 회복, 영향의 제거, 사죄의 요구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South China Morning Post지를 방문하였다.

인민일보(人民日報)는 1948년 6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로서 창간된 이후 각급 정부기관이나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중국정부의 정책 및 방침, 국제뉴스를 전파하는 최대부수의 종합일간지이다. 발행부수는 약 200만부 정도(화남판, 화동판, 해외판을 포함할 경우 총 300만부 정도)로서 보통 20~30면을 발행하고 있다.

또한 1997년 이후 인민일보 온라인판(www.people.com.cn)도 함께 운영하고 있고, 시장일보, 베이징타임스, 헬스타임스, 글로벌타임스 등 다수의 매체를 발행하는 신문그룹이다.

문회보(文匯報)는 1938년 상하이에서 영향력 있는 지식인층들이 모여 창간한 신문이다. 현재 16면으로 편집되어 시사, 경제, 교육, 과학, 스포츠, 여행, 국제뉴스 등 다양한 기사를 제공하며 발행부수는 약 50만부 정도이다. 문회보 역시 상하이 중국 공산당 위원회의 선전부 지도아래 문회보와 신민만보(新民晚報)가 연합하여 신문그룹을 구성하였다.

2. 언론사 자율구제방법

이번에 면담한 인민일보 장샤오가오(江紹高) 부총편집장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방법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이라고 누차에 걸쳐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인민일보 기자들은 “직업정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보도의 경우에는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보도기준으로서 진실성 및 사실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또한 “인민일보의 경우에는 철저한 취재를 통해 진실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최대한 객관적인 기사를 보도하므로 오보의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말하면서 인민일보의 자부심을 피력하였다.

한편 장샤오가오(江紹高) 부총편집장에 따르면 인민일보에는 독자의 불만이나 요구 등 독자고충을 처리하는 부서로서 군중공작부(群衆工作部)가 인민일보 창간과 함께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군중공작부(群衆工作部)는 30여명의 소속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년에는 9만건 정도의 독자고충을 처리하였으며, 올해 10월말까지 5~6만 정도의 독자고충을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방식은 주로 편지나 서한을 통한 독자고충의 호소이지만 근래에는 통신수단의 발달로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불만을 호소하는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리방식은 매주 화요일 ‘독자란’에 독자들의 편지나 서한에 근거한 취재내용을 보도하는 것이다. 즉 독자들이 사회비리에 관해 제보를 하면 이를 기초로 조사나 취재를 한 후 보도하게 되므로, 주로 사회고발·비판기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도대상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최근에는 약품의 불법판매를 고발하는 기사, 부동산의 부정거래를 고발하는 기사 등을 게재했다고 한다.

또한 매주 금요일에도 ‘사회관찰면’에 독자들의 제보에 의한 취재내용을 기사화한다고 한다.

상해의 문회보도 인민일보와 유사한 독자고충 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진카이웨이(陳啓偉) 부총편집장에 의하면 문회보에서는 군중공작부와 유사한 업무를 공중업무부(公衆業務部)에서 처리하고 있다. 공중업무부의 주요업무는 광범위한 독자들을 상대로 신문기사에 대한 불만처리, 독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사한 후, 그 비판·고발내용을 기사화하는 일, 독자와의 다양한 교류 등 한마디로 독자들의 요구나 불만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절차는 보통 전화나 편지, 이메일을 통해 편집사무실에서 독자의 불만신청을 접수하게 된다. 전화를 통한 불만신청은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으나 편지나 이

메일의 경우는 매일 평균 10여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으며, 간단한 사항은 곧바로 해당부서에 연결하여 해결해 주고 사회비리에 관한 제보나 인격권 침해사항 등의 경우에는 공중업무부에서 민원신청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

3. 중국 내 독자적인 언론피해구제기구

중국 내 독자적인 피해구제기구로서 중국기자협회 국내공작부(國內工作部) 산하에 유권자율처(維權自律處)가 있는데 이 기구에서도 잘못된 보도에 대한 구제 및 독자고충을 처리한다. 유권자율처는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방법이 아닌 일종의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법적인 기구가 아닌 민간자율기구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잘못된 보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독자는 신문사에 정정보도 등이 게재될 수 있도록 협상을 시도하고, 이러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자협회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직접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소송결과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면 법원에서는 사과보도,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명한다. 이론상으로는 정정보도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송 전 협상단계에서 정정보도가 게재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중국 언론계의 관행상 기자가 고의로 타인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면 내부적으로 경고를 받거나 해고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중국사회가 기자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정신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IV. 홍콩의 언론피해구제제도 현황

1. 방문 언론사 개요

홍콩은 인구 680만명 가량의 도시로서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뒤 정식명칭이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로 바뀌었다. 중국 정부에서는 일국양제(一國兩制) 정책에 따라 홍콩을 자치구로 인정함으로써 경제적인 통일은 지향하되, 사회적인 통합은 보류한 상태이다.

이번에 방문했던 SCMP(South China Morning Post)는 1903년 창간된 영자 일간신문으로서 발행부수는 92,000부 정도이고, 주요 독자층은 홍콩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다.

2. SCMP 자율구제방법

홍콩에서의 언론피해구제제도 및 SCMP의 독자고충처리 방법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해 SCMP의 오피니언 페이지 편집담당자 Mr. Morrison 및 Ms. Louisa Tam을 면담하였다.

Ms. Louisa Tam에 따르면 SCMP의 오피니언 페이지는 2면이 할애되어 있으며, 한 면에는 전문가들의 논평, 기고 또는 사설이 게재되고, 다른 한 면에는 독자의 편지가 게재되어 여론을 반영하게 된다.

특히 독자들의 편지 기고란인 Letters Section의 담당자인 Mr. Morrison에 의하면, 오피니언란은 독자들이 최근에 신문기사에서 다루어진 시사에 관한 내용, 그리고 최근 시사관련 기사가 아닐지라도 독자들이 충분히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 예를 들어 중국의 농산물 수확에 관한 주제 등이 담긴 편지를 보내올 경우 이들 편지 가운데 7편 정도를 선정하여 게재하는 면을 말한다. 또한 Letters Section에는 부정확한 기사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는 독자들의 편지나 독자들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게재하기도 한다.

그리고 실제 지면에 게재되는 독자들의 편지는 총 400자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다른 신문사의 경우 편지분량을 500자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음) 대부분 독자 편지내용의 적정성,

의견전개의 논리성 등을 고려하여 편집한 후 400자 이내로 분량을 조절하게 된다.

독자들이 SCMP의 Letters Section 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만약에 독자들의 편지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해당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다면 편집담당자는 우선 독자의 편지를 수정, 삭제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게재하여 준다. 그러면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 정도에서 만족하게 된다고 한다.

SCMP에 접수되는 독자편지는 하루에 12건 가량이며, 그 중 불만을 제기하는 독자편지는 1, 2건 정도이다. 그리고 실제 불만제기 내용도 잘못된 보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사내용이나 논평에 대해 독자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등 일종의 독자 자신의 개인적 관점에 따른 불만이라고 한다. 결국 오보에 대한 불만건수는 한달에 한건 정도라고 할 수 있다.

3. 홍콩의 독자적 언론피해구제 기구

Ms Louisa Tam에 따르면 홍콩의 언론피해구제기구로서는 TELA(Television and Entertainment Licensing Authority)와 홍콩언론위원회(Hong Kong Press Council)을 들 수 있다.

TELA는 독립성이 보장되고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준정부기구로서, TV · 신문 · 라디오 등 언론사에서 선정적인 내용이나 폭력적인 내용을 게재한 경우 시청자들이 불만제보를 하면 이를 심의하여 위반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만약 위반내용이 발견되면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요구하는 경고문을 발송한다. 그리고 제재조치로서 경고대상 언론사를 대중들에게 공개하여 불명예를 줌으로써 위와 같은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형을 과하기도 한다.

따라서 TELA는 홍콩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며 시청자, 독자들의 불만을 처리해주는 독립된 언론피해구제 기관으로 볼 수 있다. 불만제보건수 또한 매년 200여 건에 달하는 등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다고 한다.

그리고 홍콩언론위원회의 경우는 위원구성이 신문사 사장을 비롯한 언론사 중역, 학자,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권위 있는 일부 주요 신문사의 경우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자율규제기구에 불과해 실제로 해당 언론사에 시정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으므로 종이호랑이와 같은 존재라고 한다. 따라서 홍콩에서 언론을 감시, 규제할 수 있는 기구로는 TELA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4. 홍콩의 언론소송 경향

홍콩에서는 개인의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소송건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 Ms Louisa Tam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도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우선 첫 번째 원인은 홍콩 언론계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는데, 홍콩의 언론계는 연예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경향을 반영하여 언론산업 또한 information과 entertainment를 합한 의미로 infotainment화 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홍콩의 수용자들 또한 설사 잘못된 내용이 보도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평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연예보도 정도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므로 오보에 대해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웃어넘기거나 수인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 언론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신뢰감에서 찾을 수 있다.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홍콩정부의 권한이 상당히 약화되었고, 이에 대해 홍콩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점차 고조되어 왔다. 이에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불만표시 등 시민들의 불평, 불만을 토

로해주는 일종의 해방구로서의 역할을 언론이 자임하고 있으므로, 언론에 대한 신뢰감이 증대되어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자연스럽게 홍콩의 독자나 시청자들은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홍콩에서는 언론관련 문제로 법정에 가는 일이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V. 싱가포르의 언론피해구제 제도 현황

1. 싱가포르 개황 및 방문 언론사 개요

싱가포르는 1965년 8월 말레이시아연방으로부터 탈퇴하여 독립한 국가로서, 서울특별시 정도 면적의 인구 약 4백만에 불과한 도시국가이다. 하지만 경제규모는 1인당 국민소득 21,000달러 정도를 자랑하고 있으며 세계 수준의 금융, 무역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지닌 국가이지만 사실 인민행동당 중심의 강력한 일당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정치적으로 모든 권력이 여당에게 집중된 강력한 권위주의체제 국가이다.

이번에 방문했던 The Straits Times는 1845년 창간된 이후 발행부수가 40만부에 육박하는 영자신문으로서, 싱가포르 독자층의 절반이 이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언론산업구조는 매우 독특한 형태로서 일종의 독점적 복합미디어기업인 Singapore Press Holdings(약칭 SPH)에서 주요 일간지 대부분을 발행하고 있는데 The Straits Times 또한 SPH에서 발행하고 있는 신문이다.

2. 싱가포르 언론법제 현황

언론법제현황을 살펴보면 싱가포르 헌법 제14조 제1항은 “모든 싱가포르 국민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동조 제2항에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 싱가포르 또는 그 일부지역의 안전을 위해, 타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공공질서 또는 도덕을 위해 필요하거나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의회의 면책특권을 보호하거나 법정모독, 명예훼손 또는 범죄의 선동을 금하기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언론 관련법인 ‘신문출판법’에 따르면 인쇄기의 보유, 사용에 관해 신고제나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또한 1년마다 갱신을 요한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명예훼손 관련법은 주로 영국의 명예훼손법을 따르고 있다.

한편, 기존의 명예훼손 관련법이 신문·방송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것을 인터넷언론에 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인터넷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The Straits Times의 자율구제방법 및 언론소송의 경향

잘못된 보도에 대한 소송이외의 자율적 구제방법으로서 The Straits Times의 경우에는 제2면의 정정보도란 및 포럼란 운영을 들 수 있다. 이번 시찰에서 면담했던 편집장 Han Fook Kwang은 “만약 독자들이 전화, 팩스, 서면, 이메일 등으로 불만사항이나 의견을 제기해오면 해당사항을 접수한 후 곧바로 감독자 및 편집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기자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2면에 정정보도를 게재한다. 이 때에는 반드시 사과문구도 첨부된다.”고 밝혔다. 만약 잘못된 보도에 대해 변호사로부터 항의나 소제기의 사가 전달되면 이는 별도로 법무팀에 배당되어 소송을 준비하게 된다고 한다.

한편 언론보도의 명예훼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전배상 또는 정정보도명령을 내리게 된다.

손해배상판결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매우 다양한데 보통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명예훼손의 정도, 직업에 영향을 미친 피해범위 등을 고려한다고 한다. 보통 총리나 장관 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는데 최근에는 배상액이 약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실례로 전 총리의 명예훼손관련 소송에서 120,000 싱가포르달러, 모 차관에 대해서는 100,000 싱가포르 달러의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VI. 결론

이상에서 중국 및 싱가포르의 언론법제 현황 및 피해구제제도 등을 방문처의 면담내용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각국별로 파악해 본 언론피해구제 현황 등은 그 나라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 사회체제, 국민들의 언론자유 및 인권에 관한 의식수준 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국가나 지도자 중심의 사회체제 아래에서는 언론의 역할 또한 국가 또는 지도자 중심의 국민통합기능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 또는 인권의식 또한 자연스럽게 그러한 범위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언론자유와 보장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구제 제도의 마련과 운용은 결국 그 사회구성원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권리의식에 관한 관심여하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

- 세계의 언론법제, 2003. 하권, 한국언론재단
- 세계의 대중매체2, 강준만, 인물과 사상사, 2001
- 세계주요언론개황,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2001
- 중국의 언론법제 개황, 유일상, 세계언론법제동향, 1997
- 중국 신문의 현실, 김영옥, 이봉우,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중국의 언론과 사회변동, 박용수, 나남출판, 2000

탈북자 보도와 인권

최 경 진 (대구카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1. 북한 관련 보도의 현실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의 비참한 실상을 전하는 보도가 잇달으면서 집단적으로 한국행 망명을 요청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십여년전 일이다. 당시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내 북한별북장의 인권침해상황과 중국에 떠도는 수많은 북한탈출 주민들의 참혹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제법에 따른 정치적 망명의 적용여부가 외교적 문제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이처럼 탈북동포들이 겪고 있는 처참한 실상이 전해지면서 인도주의 원칙과 동포애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역할론이 제기되었고 우리 언론도 이를 본격적으로 의제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 언론이 아직도 여전히 극복하기 힘든 장벽이 가로막고 서있다. 전반적으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취재 보도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기 때문이다. 우선 취재원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장감이 없고 심지어 객관적 사실의 확인조차 어렵다보니 사안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 심층보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대부분의 기자들은 소위 북한전문가나 탈북귀순자 또는 정부당국의 발표만으로 해설기사나 보도만을 참고하는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탈북자 관련보도 역시 그 어려움은 대동소이하다. 탈북자 문제에 관한 한 아직 이렇다 할 외교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선불리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떠돌아다니다가 현지 당국에 적발된 동포들에 대한 우리 언론의 접근방식이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체포돼 복송조치된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라든가 탈북자들을 실명으로 보도함으로써 오히려 역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중, 러 등 현지 언론에 이미 보도된 사실을 국내언론이 침묵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탈북자 문제가 국내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해서 인권에 관한 북한당국의 외교적 입장을 자칫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현재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으로 봐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외교가 곧 국익과 관련된 현실적 국제관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 탈북자 인권문제 언론보도가 자칫 소위 북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북자 문제를 언론이 여론화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국내외적으로 알림으로써 해서 대안마련의 전기를 제공하는 것이 언론 본연의 역할이 아니겠느냐하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탈북자 관련 언론보도는 탈북자들 당사자는 물론 이를 취재 보도하는 언론, 정부당국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인권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고민과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특히 탈북자 문제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그 이해 당사자들에게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탈북자 당사자에 대한 인권에 어떤 침해가 있었는지가 논의의 초점이라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탈북자 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그 개선점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2. 탈북자 보도와 인권의 문제점

1) 한국 언론의 북한보도와 불신

북한 관련 보도에 관한 한 한국 언론에 대한 불신의 정도는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오랫동안 이념의 장막으로 인한 남북교류의 단절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언론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북한문제에 정통한 이렇다 할 전문가가 부재한 것도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90년대 초반부터 국내언론이 본격적으로 전문기자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북한문제 관련 전문기자가 나오기는 했으나 남북관계의 특수한 현실과 국내외적으로 한반도가 처한 제반 정치적 여건으로 인하여 그들의 역할은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거의 모든 북한 관련 정보의 입수경로가 국정원이나 통일원 등을 비롯한 정부당국인데다가 안보상의 이유로 그나마도 언론에 의한 정보공개나 보도에 근본적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과거 북한관련 정보가 정치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오용되거나 특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수없이 자행되었고 언론도 이를 뒤 쫓아가는 식으로만 보도를 하다 보니 제대로 된 북한정보를 갖춘 보도가 이루어질리 없었다. 기본적으로 언론보도는 현장성을 동반해야하는데 우선 현장이 결여된 보도는 그 생명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북한관련 보도의 또 다른 한계는 취재원이 일천하다는 점에 있다. 취재원이 다양해야 충실한 보도가 된다는 보도원칙이 무색할 정도로 정보의 원천을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전문가 의견만을 동반한 해설보도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외국 언론이 부정확한 한국 언론보도만 믿고 인용했다가 곤혹을 치르는 등 한국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떨어진 것이 현실이다.

2) 탈북자 보도와 안보상업주의 그리고 우월주의

한국 언론의 북한관련 보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는 북한 관련 이슈가 한국의 안보로 연결되면서 이른바 안보상업주의가 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신문사들 중 조선일보는 특히 대북보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소위 적지 않은 특종(?)으로 북한문제에 관한 한 일가견을 갖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만하지만 조선일보 특유의 안보상업주의라는 지적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수구보수의 이념적 무기가 일반적으로 안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비해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들은 이에 더 나아가 안보문제를 상업적 이해관계로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조선일보의 북한 섹션 <NK리포트>는 바로 안보상업주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을 평화공존을 위한 동반자로 인정한다면서 만든 북한전문 섹션은 북한에 관한 읽을거리를 많이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천편일률적인 사실과 방향을 제법 달리하면서까지 독자에게 풍부한 북한정보를 제공한다는 전략은 조선일보만의 특유한 상업

적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는 ‘김일성 사망설’, ‘성혜림 망명설’ 그리고 ‘탈북자 유태준 공개처형’ 등 그동안 발생했던 굵직한 오보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시각은 이른바 속 보이는 우월주의에 치우친 보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북한과 탈북자들의 현실을 심층 보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동포에 대한 단순한 동정과 체제모순이라는 지적으로 북한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월주의에 입각한 보도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당초에 내세운 평화적 동반자의 의미가 무색해지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안보상업주의와 우월주의는 오히려 국가안보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등 북한으로 하여금 반발과 자극을 유발시킬 우려로 직결되고 있다.

3) 탈북 현장묘사의 선정정보

탈북자 인권문제에 대한 언론보도가 문제가 되는 데에는 대체로 그들에 대한 현실이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단순하게 묘사됐다는 데에 있다. 예컨대 탈북자들의 대규모 입국이 성사된 후 중국 내의 외교공관 진입사건이 급속도로 증가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뒷전으로 한 채 탈북주민들의 공관 진입 현장만을 단순하게 전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기획탈북’이 늘어나고 있는 배경과 그 실체에 대한 조명보다는 오히려 탈출현장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듯 드라마틱하게 처리하는 등 생사가 좌우되는 문제를 언론이 너무 선정적으로 다룬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다리를 동원하거나 철조망을 넘는 등 공관 진입과정을 지나치게 비중있게 상세하게 전할 뿐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감행하고 중·러 등의 공관까지 진입하게 되는 과정이나 배경에 대한 분석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특히 방송의 경우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는 탈북주민들의 ‘거사’는 상당히 강력한 과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감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간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단순히 현장중계식 보도로 의해 자칫 동족으로서 느끼는 비애감마저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언론이 각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물론 언론이 현장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은 보도원칙 기본 중의 기본에 속한다. 그리고 그 현장성을 동반한 보도에 대한 가치는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영상화면이 갖는 역동성과 사실성에 비해서 진실추구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담보되어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는 영상 카메라의 ‘물리적 앵글’보다 탈북주민들의 행동이 갖는 의미구조를 시청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하는 ‘비가시적 앵글’이 더욱 중요하다. 탈북주민들의 인권은 바로 그러한 세세한 과정을 통해서도 공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북한인권법안과 보수언론의 허구

최근 미국 상원이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법안의 의미를 둘러싸고 국내언론들이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찬성하는 일부 국내보수언론들은 미국의 입장에 적극 동조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국이 대신 해준 격’이라며 북한인권 문

제에 대해 소홀이 한 정부여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물론 북한의 현실과 그 주민들이 겪는 참혹한 인권을 생각하면 이 법안의 통과는 분명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한 적극적 관심의 표시이자 북한사회의 변화를 희망하는 이해 당사국들의 바람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이 현실로 되기에는 이유있는 저항에 주목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인권법의 제정으로 국제여론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필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는 했으나 일부 언론, 특히 진보적 성향의 언론은 북한인권법이 내포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법제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의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법 자체가 갖고 있는 일부 독소적 조항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인권법이 비록 과거의 북한자유법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것이기는 하지만 내부의 의지에 의한 자율적 변화와 개방보다는 외부의 압력이나 힘에 의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결국 그 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 법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편향된 시각과 패권주의적 발상에 근거한 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북한인권법안은 사실상 대규모적 탈북기획을 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북한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미국의 대북강경책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상대방을 대화보다는 일방적으로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속내가 담겨있다고 비난받고 있다. 기실 미국의 법제정을 비판하는 진보언론들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을 갖고 있다. 자국의 인권문제를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남의 나라 인권문제를 두고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강제하려는 의도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그 주장이다.

5) 기획탈북의 위험성과 언론보도

기획탈북은 중국 등에 거주 중인 체류주민들과 조선에 남아있는 가족의 신변안전에 큰 위협으로 직결된다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만큼 언론은 이를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게다가 무리한 탈북기획이나 심지어 민간 탈북지원단체들의 실적 올리거나 상업적 목적을 위한 기획탈북 등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언론은 명심해야할 것이다.

언론은 기획탈북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획탈북에 성공한 일부 극소수 탈북주민들의 사례들만이 보도될 뿐 정작 중·러 등에서 기획탈북을 시도하려는 수많은 북한주민들의 현실과 위협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 탈북자 보도와 인권보호를 위한 제언

최근 탈북주민들의 대량입국을 보도했던 언론들은 신문·방송할 것 없이 일제히 대규모 탈북 드라마가 시작됐다면서 이제 ‘조용한 외교’를 탈피할 때라며 떠들썩하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었다. 게다가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면서 북한문제가 본격적으로 해결될 것 같은 분위기마저 조성되는 듯 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처럼 탈북문제와 인권에 대한 최

근의 접근방법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이라기보다는 근시안적이며 단발적기대효과만을 고려한 발상에서 나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탈북자 보도와 인권의 문제점 그리고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본장에서는 그것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해야할 사항들을 고찰하면서 탈북자 보도와 인권을 위한 하나의 보도 가이드라인 성격으로서 몇 가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북한보도를 위해 다양한 취재원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그룹 또는 전문기자를 양성한다.

둘째, 탈북 현장의 극적·선정적 묘사를 자제하고 사안의 과정과 구조적 배경을 담은 심층 취재 보도에 주력한다.

셋째, 탈북자 보도의 안보상업주의와 우월주의를 지양하고 민족 동질성을 전제로 한 동반자적 입장에서 진실보도를 추구한다.

넷째, 북한인권법이 내포하는 독소적 조항을 지적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보수언론의 무비판적 여론의 허구성을 비판여론화 시킨다.

다섯째, 기획탈북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간단체나 정부차원의 협조를 유도하는 여론을 조성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조선 기자동맹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보도교류를 위한 협조를 타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4. 결론: 민족동질성과 인권을 위한 보도

과거 암울했던 반공과 멸공의 시절과 비교해보면 21세기 언론보도에 표출되는 북한의 실상과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정도는 실로 격세지감이라고 할 만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귀순용사’가 ‘탈북주민’으로 변모한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다. 뿐만 아니라 신문·방송·인터넷 할 것 없이 모든 언론들이 금기의 대상이었던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또 북한 동포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이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북한주민들의 탈북시도는 급증하고 있고 최근에는 탈북주민들이 한국으로 대거 입국하는 상황들마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민족적 동질성을 가진 우리 국민들은 물론 동북아 주변국들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는 남북한의 민족통일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는 한국이다.

우리의 언론은 민족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북한사회와 북한주민들을 과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한국전쟁 종료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북언론보도의 양상은 엄청나게 달라졌고 북한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도 크게 변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언론의 북한보도에 대한 불신은 크다. 일부 보수언론들의 북한보도와 탈북주민보도 등에서 안보 상업주의와 우월주의 인식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탈북주민들의 외교공관 진입사건들을 보도하면서 본질과 배경보다는 표피적 현상과 선정적 보도에 치우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국내 일부 보수언론들의 무비판적 미국 동조식 보도는 과연 그 언론들이 어느 나라 언론인지 의심할 정도로 회의적 생각마저 들게까지 한다. 국내 보수언론들의 허구성이 아닐 수 없다. 기획탈북을 탈북자 지원운동의 본령쯤으로 생각하는 위협한 보도는 유감스럽게도 바로 그러한 언론보도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철학이 부재한 대북언론보도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의 역사적 과제가 통일인 만큼 우리 언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차이를 인정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기위한 노력일 것이다. 탈북주민들에 대한 보도와 인권문제 또한 바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때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호(2000). 남북한 언론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계 및 기술적 협력방안. 통일시대를 위한 남북한 언론의 역할과 전망.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언론재단 공동주최 세미나 발제문. 2000.8.11.

김동익(2001). 북한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언론인회 주최 세미나 발제문. 2001.6.14.

김은주(2001). 북한관련 기획지면 분석 및 문제점. 남북한 문화동질성 확보를 위한 언론의 역할.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언론재단 공동주최 세미나 발제문. 2001.8.24.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2004). 「탈북자·북한인권법 관련 방송3사 보도」에 대한 민언련 방송모니터위원회 모니터보고서. 2004.10.21.

오귀환(1998). 이유있는 낙종 “보도보다 생명이 중요”-한겨레 탈북자보도 취재기. 신문과방송 1998년 2월호. 94-98.

이철기(2004). 냉전 울타리에 갇힌 시대착오적 보도-NLL사건과 탈북자 보도. 신문과방송. 2004년 9월호. 75-79.

임병국(1999). 언론법제와 보도. 서울: 나남출판.

정일용(2000). 통일시대 언론보도 준칙. 통일시대를 위한 남북한 언론의 역할과 전망.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언론재단 공동주최 세미나 발제문. 2000.8.11.

한국언론연구원 편(1998). 남북교류 시대 북한보도.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최경진(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정서적 위기와 신뢰성

박 충 선 (대구중재부 중재위원, 대구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2004년도 마지막 달이다. 곧 마스크에서도 “다사다난 하였던.....”으로 시작되는 여러 가지 논평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저마다 한 해 동안의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고, 내심 미소를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숨을 내몰아 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의 몇 퍼센트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

1997년 11월에 우리는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 실업자 160만명, 노숙자 급증, 중산층 붕괴, 빈부의 양극화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었으나, 그 이후 억척같은 금 모으기 운동이 벌어지면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사회의 통합이라는 부수적인 긍정적 결과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물론, 이러한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도 하였지만 말이다).

2004년 12월에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7년 전 경제위기시의 사회문제들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나빠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어쩌면 이번에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정서적 위기까지 겹쳐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경제위기는 각종 정책개발과 실천행동을 통하여 풀어 나갈 수 있다 할지라도, 정서적 위기는 복합적인 다차원적이어서 쉽게 풀려지지 않는다. 막연한 불안감,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불신과 원망,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공포감 등이 전반적인 정서적 위기의 표출이라고 본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수출호황과 내수부진이라는 모순적 구조의 경제위기 근간에도 어쩌면 바로 이 정서적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정서적 위기의 발화점은 신뢰성 상실이다. 즉 상호간의 신뢰가 구축되어야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 수용, 그리고 공유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러한 관계가 공고히 되어야만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신뢰가 와해된 현실에서는 사회구성원간의 공유가 불가능해지고, 불안과 초조, 긴장감이 압도하면서 정서적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적 위기 현상은 정치권,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 그리고 문화예술계에서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보편화되어 버린 것 같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읽은 기사에 의하면 승객과 택시기사사이에 철창을 설치하는 택시가 생겼으며, 점차적으로 그 수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 이유는 칸막이로 설치된 창살이 승객에게는 택시기사가 행어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막아주므로 안전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택시기사에게도 역시 승객이 강도로 돌변하여 자신을 해치는 것을 막아 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철창이 승객과 기사 모두의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몇 십 년 전 미국 뉴욕에 갔을 때, 택시를 타고 철창 사이로 요금을 내고 내리면서, 도무지 사람 살 만한 곳이 아님을 느꼈었는데 우리나라도 어느 사이 이런 환경이 되어 버렸

는가? 미국의 경우에는 누구나 무기를 소지할 수 있으니 그 나름대로 자구책이라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우에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철창을 안전망으로 여기도록 만들었을까? 철창은 승객과 기사간의 무너진 신뢰성의 임시방편일 뿐이다.

또한, 지난달에 발생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남아 있던 신뢰의 최저선까지도 무너져 버린 느낌이 든다. 수능등급을 곧 인생등급으로 치부하는 우리 사회에서 '50만원에 인생역전' 혹은 '로또 같은 수능'이란 표현들은 수능의 신뢰도가 제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게다가 시험부정사건 이외에 후유증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시험을 잘못 치른 학생은 부정을 저지른 다른 학생에게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고, 부정을 저지른 학생 역시 양심의 가치와 법적인 조사로 괴로워하고, 이러한 부정사건을 미리 예견하고도 막지 못한 관계자들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고, 수십만의 수능응시자 및 부모, 친인척들은 더 이상 수능의 공정성과 투명함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신뢰성 파멸이다.

이와 같은 최근의 주변 사건들은 대한민국이 현재 신뢰성 결핍증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일단 중병이란 진단이 내려졌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도, 그리고 여유도 없다. 효과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단순한 지역적 처방으로는 어렵없는 일이다. 고비용·저효율의 정치권은 주도권을 잃음으로써, 인성과 도덕을 강조하는 교육계는 배짱 좋은 뻔뻔함으로 부정사건을 목살함으로써,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생존본능으로 그나마 생명 보호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과감히 '신뢰'를 저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신뢰성 상실이라는 바이러스가 사회전반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급속도로 만연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백신은 누가 어디서 개발하고 있는가? 누군가가 핵심역할을 해야 한다. 언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다소 부정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언론이다. 특히 이러한 증세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집단적인 증세라면 더욱 더 언론의 역할이 요구된다. 신뢰성 결핍증을 치유하기 위한 가냘픈 희망을 언론에 걸어 본다. 처방 내용은 간단하다. 우리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여 정서적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면 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실천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서, 언론의 날카로운 현실비판능력보다는 사회불안을 정제해줄 수 있는 충격흡수능력이 요구된다. 논리로 평가르기 보다는 좌우가 하나되고 신뢰하는 통합의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진솔함과 배려, 그리고 최후의 보루로서의 인간적 신뢰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열정적인 적극성도 바람직스럽지만, 그것이 뒤뜰린 열정이라면 위험할 뿐이다. 따라서 이성적인 열정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쳐있다. 누구 하나 다른 누구에게 손길을 건네 줄 여유조차 없다. 그렇지만 모두 걸치레를 벗어 버리고 12월의 겨울나무처럼 솔직해진다면, 그리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 않는가.

<해외동향>

뉴욕타임즈 기자에 수감명령 미연방지법, 취재원비닉 이유

미국 워싱턴의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0월7일 취재원의 비닉(秘匿)을 이유로, 미 중앙정보국(CIA) 공작원명 누설의혹사건에서 익명의 취재원을 대배심에서의 증언을 통해 밝히려는 명령을 거부한 뉴욕타임즈(NYT)지의 쥬디스·미러 기사를 법정모욕죄로 수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NYT의 아더·셀즈버거 회장 겸 발행인은 이 결정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10일자 동 신문에 텃셀·루이스 사장 겸 최고경영책임자(CEO)와 연명으로 성명을 게재, 연방레벨의 수비권법(守秘權法·shield) 제정을 촉구했다.

누설의혹에 얽힌 증언거부로 동 지법이 기자의 수감을 명령한 것은 타임지의 머슈·쿠퍼 기자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의혹수사에 대한 협력을 우선시하여 취재원의 비닉을 인정하지 않는 사법판단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의 미디어들은 「헌법수정 제1조에 보장된 보도의 자유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위기감을 강화하고 있다.

결정에 의하면 백악관 고위관리가 국가기밀인 CIA공작원의 실명을 언론인에게 누설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찰관의 소환장에 근거하여, 동 지법은 지난 9월 밀러기자에게 대배심에서 익명의 취재원을 밝히도록 명했으나 동 기자가 거부했다.

미러 기자는 카이로 특과원 등으로 근무한 중동 및 대량파괴무기문제의 전문기자로 이 공작원의 이름을 한번도 기사화한 일은 없었으나, 실명을 취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기자의 한 사람으로 증언을 요구받았다.

NYT의 셀즈버거 회장 겸 발행인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공작원명을 누설한(정부의) 인물은 처벌되지 않고 (공작원의) 이름을 공개한 일이 없는 기자가 수감된다는 것은 본말전도로 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비난하고 「현재 많은 주에서 기자의 취재원비닉권을 보장하고 있는 shield법을 연방레벨에서도 성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보』 2004년 10월 26일자)

□

일본 최고재판소, 2천만엔 배상 판결 미디어 명예훼손소송에서 과거최고액

지난 2000년 일본 熊本현 天草町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를 둘러싼 사진주간지 「포커스」(2001년 휴간)의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熊本市의 의료법인 「林田會」와 이사장이 「新潮社」 등에 총 1억7천1백6십만엔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지난 10월1일 「신조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신조사」 측에 총 1천9백8십만엔의 손해배상을 명한 2심·도쿄고법 판결(2003년10월)이 확정되었다. 이 배상액은 미디어에 대한 명예훼손 배상액으로는 과거 최고액이 된다.

1, 2심 판결에 의하면 동지는 2000년7월부터 모두 12회, 교통사고사 한 이사장의 부인 등 4명에 고액의 보험이 걸려있다는 등의 보도를 하여 이사장이 사고에 관여한 것으로 시사했다.

1심·도쿄지법(2003년4월)은 12건의 기사 중 8건을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고, 무단으로 이사장의 사진을 게재한 것에 대한 초상권침해와 합해 「신조사」 측에 총 1천3백2십만엔의 지불을 명했으나 2심에서는 12건의 기사 전부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배상액을 증액했다.

이 교통사망사고와 관련된 별도의 명예훼손소송 항소심에서 도쿄고법 제5민사부는 지난 7월28일 월간지 「문예춘추」에 대해서도 사죄광고게재와 함께 400만엔(1심은 880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신문협회보』 2004년 8월 31일, 10월 19일자)

□

칼럼내용의 도용여부를 둘러싼 언론사간의 명예훼손소송 사건

-일본 도쿄지법 판결-

조간의 칼럼 「天聲人語」 2개가 다른 사람의 문장을 도용했다는 「주간신조」의 기사로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朝日신문사가 新潮社에 5,000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법 민사 제39부는 지난 9월17일 1개에 대해서는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피고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다른 1개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을 인정, 신조사에 150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사죄광고의 게재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간신조」는 2003년2월12일자 발매호에서 「인터넷에서 『도용』해 온 朝日

의 간판칼럼 『天聲人語』」라는 제목으로 「책방에서 서있는 자세로 책을 읽고 있으면 왜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가」라고 쓴 2001년8월8일자 칼럼과 「세계를 1백명의 촌락으로 축소하면 어떻게 될까」를 테마로 한 동년 10월27일자 칼럼은 인터넷에서 도용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8월의 칼럼에 대해 도용했다는 진실을 인정할 수 없으나 「문장의 구성이나 표현내용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고, 도작문제의 전문가들에게도 검증과 확인을 했다」고 진실상당성을 인정했다.

한편 필자불명의 메일에서 문장을 인용한 10월의 칼럼에 대해서는 「피고는 메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를 게재했으며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상액의 정도는 명예훼손을 인정한 칼럼에 대해서도 「원고가 허가 없이 인용한 측면이 없지 않으며, 원고는 신문사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신문협회보』 2004년 9월 28일자)

**최근 일본 법원들은 보도관련 명예훼손소송에서
피해자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언론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례1> 최고재판소, 기사의 명예훼손 인정할 수 없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2004년9월9일 「週刊朝日」의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전 도쿄마주협회 회장이 朝日신문사에 대해 손해배상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2003년1월 전 회장의 청구를 기각한 2심 도쿄고법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週刊朝日」은 2000년9월29일호에서 「전 회장이 중앙경마회의 熱海장외마권매장 건설계획과 관련, 업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은 의혹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1심 도쿄지법은 전 회장의 청구를 인정, 신문사 측에 22만엔의 지불을 명했으나 2심 도쿄고법은 1심판결을 취소했다.

<사례2> 최고재판소, 진실상당성 있어 원고청구 기각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2004년9월9일 神奈川현의 축탁감찰의(監察醫)가

한 남성의 노상 방치사(放置死)사건에 관한 「텔레비朝日」의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동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결정으로 검찰의 측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텔레비朝日」은 2002년4월13일 보도프로 「더 스퀴프」에서 검찰의가 남성의 해부를 하지 않고 시체검안서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1심과 2심은 「보도에는 공공성, 공익성이 있으며 ‘텔레비朝日’에는 검찰의가 해부하지 않았다고 믿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방영의 내용, 방법도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으며 불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찰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례3> 도쿄고법, 도굴보도의 진실성 인정

도쿄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2004년7월14일 토사(土砂)를 도굴한 인상을 주는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한 건설회사가 下野신문사에 대해 1,000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소송의 항고심에서 기사의 진실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물리친 1심판결을 지지, 건설회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에 의하면 下野신문은 2000년3월17일자 조간에서 동 건설회사가 낙찰한 공사청부계약의 체결이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배경에는 동사가 다른 공공사업을 하면서 토사를 도굴한 의혹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1심은 「지방의회에서 도굴여부 문제가 제기되어 그것이 의안부결의 배경이 되었으며 기사의 중요부분은 진실」이라고 판단했으며, 2심은 신문사가 경찰의 취재도 하지 않고 일부의원의 말만 듣고 보도했다는 건설회사측의 주장에 대해 「경찰취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부의원의 말만 듣고 기사를 작성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례4> 도쿄지법, 보도의 진실상당성 인정

도쿄지방법원 민사14부는 2004년7월12일 전 중의원의원의 비서 급여 사기사건에 관련한 전 일본적군(赤軍)멤버로 보도되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한 남성이 産經신문사, 고쿄 스포츠신문사 등 6개 언론사에 대해 2,2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는 오랜 기간 일본적군멤버라는 보도내용을 부정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으며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에 의하면 6개 언론사는 2003년7~8월에 발행된 지면에서 동년 7월 사기사건으로 체포된 전의원이 사취금의 입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전 일본적군멤버인 원고에게 건넸다고 보도했다.

원고 측은 ①사기사건 관여보도는 명예훼손이다 ②전 일본적군멤버라는 보도는 진실이 아니다 ③사기사건의 공범자도 아닌 원고의 경력보도는 공익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사는 사취금의 일부가 원고에게 건네진 사실을 밝히고 있으나 그것이 바로 원고가 사기사건에 관여했음을 밝힌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사회적 평가

도 저하시키지 않고 있다. 사취금이 누구에게 건네졌는지는 공중의 관심사이며 과거의 경력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사례5> 도쿄고법, 추징과세보도는 진실

A기업이 도쿄국세국으로부터 추징과세처분을 받았다는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中日신문사에 1억1천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도쿄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2004년7월14일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한 지난 3월의 1심 도쿄지법의 판결을 지지, A기업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에 의하면 동 신문은 2000년11월28일자 석간에서 A기업이 가공거래로 소득을 숨겼다는 이유로 도쿄국세국으로부터 추징과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A기업은 처분취소청구를 제소했으며, 도쿄지법, 도쿄고법은 가공거래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2003년1월 처분취소가 확정되었다.

A기업은, 기사는 추징과세 사실뿐만 아니라 소득을 숨겼다는 사실도 보도했으므로 그 진실성도 입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사는 도쿄국세국의 인정과 처분을 보도한 것으로 진실이며, 과세처분은 취소되었으나 그 사실관계 자체는 기사의 불법행위 판단을 좌우되지 않는다」고 한 1심판결을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례6> 의료과오 소송, 2심에서 “기사는 진실” 판단

의료과오소송을 둘러싼 ‘산케이스포츠’의 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치과 의사가 産經신문사에 대해 1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고심에서 名古屋고등법원 민사 제1부는 2004년9월16일 「기사의 내용은 진실로 인정된다」고 판단, 신문사 측에 90만엔의 배상을 인정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치과 의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제된 보도는 「어금니가 아파 진찰을 받았더니」, 「앞니 4대를 절단!!」, 「치조농루(齒槽膿漏)의 새로운 치료라고」라는 제목으로 어금니가 아파 치료를 받은 환자가 ‘치조농루’가 아닌데도 앞니 4대를 절단 당했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1심은 기사내용을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명예훼손을 인정했으나, 2심은 「기사는 환자가 치과 의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 데 그치고 있으며 의료과오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지 않다」고 판단, 치과 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상 6개사례 『신문협회보』 2004년 8월 10일, 9월 21일, 9월 29일, 10월 19일자)

미 FCC, CBS·TV에 벌금 55만달러 명령 고의로 여자의 가슴노출을 방영한 문제로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04년9월22일 인기가수 ‘자넷 잭슨’ 씨가 지난 2월의 슈퍼볼(Super Bowl·프로 미식축구) 쇼에서 오른쪽 가슴을 노출시킨 문제와 관련, 쇼를 방영한 CBS텔레비 측에 55만달러(약 6억5백만원)의 거액의 벌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정식 발표했다.

이유는 「고의로 외설적인 것을 방영했다」는 것으로, 미국의 오락미디어를 지배하고 있는 바이어컴 소유의 CBS 계열국에 대해 한 방송국당 27.500달러(약 3.000만원)의 지불을 명했다.

FCC는 지난 6월에도 대형 라디오방송국에 대해 외설적인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175만달러(약 20억원)의 벌금 지불을 명령하는 등 외설방송에 대한 벌금을 고액화하고 있다.

FCC는 CBS의 「가슴노출사건」을 상징적으로 엄하게 조치하여 외설규제강화의 흐름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문협회보』 2004년 9월 28일자)

“언론은 소송사건에 대한 보도에 신중을 가해야” “소송건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는 언론에 금전적인 부담을 줄 수 있어”

소송을 진행 중인 법원의 소송사건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는 언론사로 하여금 수천만 파운드의 소송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2003년도 법원법에 따르면 편파적인 보도로 인해 재심을 해야 할 경우, 언론사는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최근 들어 이와 관련, 가장 많은 소송비용을 지불한 신문사는 선데이 미러(The Sunday Mirror)이다. 선데이 미러지는 2001년 가을에 축구선수인 리 바우어(Lee Bowyer)와 조나단 우드게이트(Jonathan Woodgate)의 폭행 관련 소송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를 한 바 있다. 즉 신문사는 심리 중인 폭행 피해자의 부친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 보도로 인해 신문사측은 7만 5천 파운드의 벌금과 법정모독죄로 5만 4천 파운드의 비용을 지불했다. 어쨌든, 개정된 2003년도 법원법에 따르면, 편파적인 보도로 소송에 지장을 줄 경우 거의 110만 파운드의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된

다.

헌법재판소장인 펠코너경은 “목격자에 대한 위협, 배심원의 부정, 편파적인 보도 등에 의해 형사 재판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 이 법은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관인 울프(Woolf)경은 “이 제도는 법원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미 갖고 있는 권한과 더불어 정의 실현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프레스가제트』 2004년 9월 17일자)

“언론사 웹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선데이 헤럴드(The Sunday Herald)지는 그들의 웹 사이트에 토론광장을 설치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이는 웹 사이트에 익명의 작가인 사라 레이건(Sarah Lagan)이 전 NATO 사령관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게재한 것과 관련 소송에서 2만 5천 파운드의 소송비용을 지불한 후에 시작한 것이다.

사라 레이건은 전 NATO 사령관인 조지 로버슨(George Robertson)이 던블레인(Dunblane) 학교 학살 사건을 숨긴 혐의가 있다는 글을 웹 사이트에 게재했다. 그러나 헤럴드지는 18개월 동안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

지난 해 2월 편집자인 앤드류 재스펜(Andrew Jaspán)은 로버슨을 만나 이에 대해 사과했고, 15분 내에 문제의 글을 삭제했다. 그러나 로버슨은 20만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지난 4월에 스카티시 미디어그룹(The Scottish Media Group)은 선데이 헤럴드지를 뉴스퀘스트(Newsquest)에 매각하면서, 이 소송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만 5천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소송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스코틀랜드 지역에서의 신문사가 웹 사이트에 올려진 익명의 투고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되었을 것이다.

1996년에 제정된 명예훼손법 제1조는 악의가 없이 명예훼손적인 글을 유포했을 경우 이에 대한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선데이 헤럴드지가 명예훼손적인 글의 작가나 편집자가 아니라는 것과 그러한 내용이 유포되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이러한 항변은 인정될 것이다.

재스펜은 이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웹 사이트를 모니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더 독자와 가까워질 수 있을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다. 이의 해결 수단이 인터넷이다. 우리는 인터넷 상에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런 문제에 대해 상당히 조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토론방에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책임 있게 행동했으며 즉각적으로 문제의 글을 삭제했고, 또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이런 징벌을 받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이것은 언론사가 언론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정말로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스가제트』 2004년 9월 17일자)

“비행소녀의 신원 공표는 바람직하지 않아”

타운튼(Taunton) 지역 법원은 『반사회적 행동규칙』을 위반한 17세 소녀의 신원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머셋 카운티 가제트(The Somerset County Gazette)지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정에서 카운티 가제트지의 기자인 헬렌(Hellen)은 올해 들어 이미 음주와 난폭한 행위를 한 혐의로 세 번씩이나 기소된 바 있는 소녀의 신원은 공공의 관심사항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만약 소녀의 신원이 공개된다면, 미래에 그 소녀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며, 이는 공공의 관심사항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법원은 규칙 제39조를 근거로 소녀의 신원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사회적 행동규칙에 반하는 행동을 한 미성년자의 신원을 언론이 공표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그런 행위를 한 미성년자의 신원을 공개함으로써 또 다시 다른 규칙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이다.

카운티 가제트지를 발행하는 뉴스퀘스트의 최고 편집책임자인 켄 버드(Ken Bird)는 “사회적 행동 규칙에 반하는 행동을 한 미성년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그들에게 망신을 주는 것이 그 규칙들이 가장 잘 지켜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은 완전한 기사를 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따라서 규칙을 위반한 미성년자들이 누구인지 기사에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프레스가제트』 2004년 8월 27일자)

“ ‘항소 법원, Jenkins 사건 소송 재심 요구’ 언론보도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했다는 이유”

최근 들어 항소법원은 자신의 양녀인 빌리 조(Billie Jo)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이온 젠킨스(Sion Jenkins)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언론사들이 고민하고 있다.

지난 달 항소법원은 젠킨스씨의 옷에 묻은 핏자국에 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배심원들에게 제시되었다면 이것이 젠킨스의 유죄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봄

이 타당하다며 재심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상당한 공공의 관심사항이었고, 재심결정에 대해 5개 국내 주요 일간지가 1면에 이 사건을 보도했다.

어쨌든 언론은 법정모욕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재심 전이나 재심 중에도 이 사건을 보도하는 데 매우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다.

1981년에 제정된 법정모욕죄에 관한 법률 중 엄격한 책임에 관한 규칙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된다. 언론은 설사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사건 관련 보도가 소송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모욕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칙은 실질적인 위험, 즉 재판절차를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재심에 대단히 편파적인 보도 등에 적용된다.

재심 소송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1심 재판이 끝난 후 문제의 범죄나 피의자에 대해 편파적인 정보를 보도했을 경우이다. 언론은 재심 중에도 마찬가지로 재심에 앞서서도 법원이 배심원들의 평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2002년에 축구선수들이 아시아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된 소송이 있었다. 선데이 미러지는 배심원들이 평결할 즈음에 자신의 아들에 대한 폭행은 인종적인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피해자 부친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인종적인 편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없었다. 이 보도로 인해 재판은 중지됐다. 왜냐하면 담당판사는 피고인들이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신문사는 7만 5천 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했다.

언론은 사이온 켄킨스 사건을 보도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중이 알아야 할 정보일지라도 소송과 관련된 기사나, 그것을 보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언론은 신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은 소송의 대상이 되거나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프레스가제트』 2004년 8월 20일자)

원고의 활동 목표와 내용, 대외적인 성명 등을 통해 원고 스스로 밝힌 설립 배경과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기한 의혹이나 주장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15. 자 판결 (2004가합20130)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박동영 부장판사)는 원고 대한민국(철도청)이 한국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인 철도청의 협조가 없는 상황 하에서 기사에 적시된 바와 같은 사실들의 진실 여부의 확인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기자는 고속철도와 관련된 자들을 모두 취재의 대상으로 삼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와 같은 취재원들이 고속철도의 기술이전 및 운행자문을 담당하는 자, 또는 고속철도의 시운전을 해본 자들 등이어서 철도청을 제외하고는 고속철도의 문제점이나 개통준비상황 등에 대하여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들인 것으로 보여 그 신뢰도가 매우 높다 할 것이며, 기사 게재 당시 개통일이 얼마 남지 않아 신속한 보도가 요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 대한민국(철도청)은 한국일보가 2004년 2월 21일자 A4면에 『고속철 4월 전면 운행은 무리』 제하의 기사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고속철도의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총선을 대비하여 무리하게 개통을 서두르면서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자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냈다.

판 결 문

사	건	2004가합20130 정정보도
원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승규 소송수행자 강대석, 김시주, 강현식
피	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장재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변	론	2004.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일간지 ‘한국일보’ 1면에 상자기사로 별지1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28급 활자로, 본문은 ‘한국일보’의 본문 활자와 같은 크기로 1회 게재하라. 만약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산하에 철도청을 두어 고속철도 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이하 ‘피고 한국일보사’라 한다)는 일간지 ‘한국일보’를 발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건국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 불리는 고속철도를 2004. 4. 1. 개통하였는바, 고속철도는 시속 300km의 빠른 속도를 통하여 이동시간의 획기적인 단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건설방침이 발표된 이후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특히 개통을 앞두고 그러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었다.

다. 피고 한국일보사 소속 기자인 소외 최○○은 2004. 1. 중순에서 하순경에 고속철도 개통에 대하여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이 무리하게 개통을 서두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하여 취재를 한 후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한국일보사는 이를 2004. 2. 21.자 한국일보 A4면에 게재하였다.

2.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사는 “고속철 4월 전면 운행은 무리”를 큰 제목으로, “운전·정비등 실습경험 부족...교통신호 시스템 아직 불안정”을 작은 제목으로 하여, 고속철도 기술이전과 운영자문을 담당하는 프랑스 기술진인 유코레일 관계자 및 고속철도를 시운전 중인 기관사들, 고속철도 노조 관계자로부터의 전언 형식으로, 철도청의 방침대로 개통과 동시에 고속열차 전 차량을 투입하여 운행할 경우 운전·정비기술 미숙련과 기존선로의 활용구간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는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우려되는바, 이에 유코레일사는 철도청에게 4월 1일 전면 개통은 무리이므로 운행 편수를 계획보다 줄여서 개통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잦은 시승행사로 교육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 및 4월 개통은 충선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덧붙이고 있는바, 위 기사는 독자들로 하여금

고속철도의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총선을 대비하여 무리하게 개통을 서두르면서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안전한 운행을 생명으로 하는 고속철도의 운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고 산하의 철도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고 또한 그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저하시키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익성

당시 고속철도의 개통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고속철도가 운송수단으로서 담당하게 될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그 안전성은 다수의 국민들의 생명과 관계된 중대한 문제이므로,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임은 분명하고,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 취지는 안전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개통일자를 너무 서두르거나 전면적으로 개통하는 데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주요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할 수 있다.

나. 진실성 내지 상당성

기사에 적시된 구체적 사실을 보면, 고속철도에 운전·정비기술의 미숙련과 기존선로의 활용구간이 늘어남으로 인한 안전상 문제점이 우려되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고속철도 기술이전과 운영자문을 담당하는 프랑스 기술진인 유코레일사가 철도청에게 4월 1일 전면 개통은 무리이므로 운행 편수를 줄여서 개통할 것을 요청하였고, 철도청은 홍보를 위하여 교육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잦은 시승행사를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무리한 개통은 총선에서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라는 것인바, 위 적시된 사실들이 진실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아가 위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최○○ 기사는 고속철도가 개통을 앞두고 완벽하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철도청이 무리하게 전면 개통을 서두르고 있다는 의혹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하게 되었고,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직접 제보를 받기도 하여 이 사건 기사를 위한 취재를 시작한 사실, 최○○ 기사는 취재를 위하여 유코레일 관계자, 로템사, 로템사 노조관계자, 철도청 노조관계자, 고속철기관사 노조관계자들과 직접 접촉하였고, 그 취재원들은 대체로 고속철도 운행시스템이 아직 완벽하지 않고 운행시스템을 다루는 인력의 준비도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4월 1일 개통에 맞추어 전 차량을 투입하기보다는 운행편수를 줄여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들은 그러한 취재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사실, 위 기사는 철도청의 해당 부서 담당자에 대하여 직접 취재를 시도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그 이전부터 철도청이 위와 같은 직원들의 기자와의 개별 접촉을 금하면서 홍보실을 통하여 홍보성 기사만을 배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통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이 사건 보도를 위하여 위와 같은 시도는 무의미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인 사실, 철도청은 실제로 보도 직후인 2004. 2. 23. 기존에 밝힌 운행회수인 하루 '164회에서 184회'를 '144회에서 164'회로 감축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가 정작 개통일에는 '128회'로 이를 다시 감축하였던 사실, 고속철도 개통일에 대하여 2004. 4. 15. 이루

어질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게 유리하도록 개통시기를 정하였다는 의혹이 야당 및 언론을 통하여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고, 2004. 1.경에는 실제로 철도청이 2004. 4. 30. 개통하기로 되어 있던 내부 계획을 변경하여 개통시기를 2004. 4. 1.로 앞당겼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인 철도청의 협조가 없는 상황 하에서 기사에 적시된 바와 같은 사실들의 진실 여부의 확인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기자는 고속철도와 관련된 자들을 모두 취재의 대상으로 삼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와 같은 취재원들이 고속철도의 기술이전 및 운행자문을 담당하는 자, 또는 고속철도의 시운전을 해본 자들 등이어서 철도청을 제외하고는 고속철도의 문제점이나 개통준비상황 등에 대하여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들이므로 보여 그 신뢰도가 매우 높다 할 것이며, 기사 게재 당시 개통일이 얼마 남지 않아 신속한 보도가 요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적시된 구체적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의 위법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동영	_____
	판사	민성철	_____
	판사	이봉수	_____

<별지 1>

정정보도문

한국일보사는 지난 2월 21일자 A6면에 “고속철 4월 전면운행은 무리” 제하의 기사에서

- ① 『고속철도 기술이전과 운영 자문을 담당하는 프랑스 기술진이 운행 편수를 현재 계획보다 줄이지 않으면 경부·호남 고속철도 4월1일 개통은 무리라는 의견을 철도청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② 『프랑스 알스톰사의 국내 자회사 유코레일 관계자는 20일 “한국고속철도(KTX)가 예정대로 4월 개통될 경우 운전·정비기술 미숙련 등으로 문제가 우려된다”며 “처음부터 보유차량 46편(1편 20량)을 전량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운행일정을 짜는 것은 욕심이므로 초기에는 30편 정도로 시작해야 할 것임을 최근 철도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③ 『그는 “프랑스국립철도(SNCF) 자문단도 같은 입장을 철도청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SNCF는 고속철도 운행 전반의 기술자문을 위해 파견된 프랑스 전문 기술진이다』, ④ 『유코레일 관계자는 “일반선로 비율이 늘어난 만큼 기존 열차와의 운행비율 조정과, 그에 따른 교통신호 시스템 안정화에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⑤ 『유코레일과 SNCF 기술진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운전·정비기술교육은 유코레일이 만든 매뉴얼 이론교육과 시뮬레이션에 주로 의존했고, 실습 경험은 부족하다』, ⑥ 『고속철도를 시운전중인 기관사들도 운전 및 정비의 품질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⑦ 『이런 상황에서 잦은 시승행사로 교육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철도청은 1월 이후 시승·홍보행사 등으로 현재까지 56차례에 걸쳐 고속열차를 투입했다.』, ⑧ 소제목으로 게재한 『교통신호 시스템 아직 불안정』

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코레일과 프랑스국립철도자문단으로부터, 보도내용과 달리 위와 같은 내용을 철도청에 전달하거나 위와 같은 의견을 밝힌 바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4월 개통과 관련한 모든 기술적·운영적인 상황에 대하여 철도청과 상호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 4월 개통에 대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파악하거나 제기한 바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철도청은 홍보를 위하여 운전 정비인력 교육일정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운행편수를 감축하여 개통하는 데에 특별히 기술·안전상 문제

점이 제기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별지 2>

기사

“고속철 4월 전면운행은 무리”

운전·정비등 실습경험 부족...교통신호 시스템 아직 불안정

유코레일 佛자문단 “편수축소” 입장전달

시운전 기관사들도 “정비불량 자주 경험”

“잡은 시승·홍보행사에 교육차질” 지적도

고속철도 기술이전과 운영 자문을 담당하는 프랑스 기술진이 운행 편수를 현재 계획보다 줄이지 않으면 경부·호남 고속철도 4월1일 개통은 무리라는 의견을 철도청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청 방침대로 개통과 동시에 고속열차 전 차량을 투입할 경우 운전·정비역량 등이 미흡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속철도 운전·정비기술 이전 등 업무를 맡고 있는 프랑스 알스톰사의 국내 자회사 유코레일 관계자는 20일 “한국고속철도(KTX)가 예정대로 4월 개통될 경우 운전·정비기술 미숙련 등으로 문제가 우려된다”며 “처음부터 보유차량 46편(1편 20량)을 전량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운행일정을 짜는 것은 욕심이므로 초기에는 30편 정도로 시작해야 할 것임을 최근 철도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국립철도(SNCF) 자문단도 같은 입장을 철도청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SNCF는 고속철도 운행 전반의 기술자문을 위해 파견된 프랑스 전문 기술진이다.

유코레일과 SNCF 기술진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운전·정비기술교육은 유코레일이 만든 매뉴얼 이론교육과 시뮬레이션에 주로 의존했고, 실습 경험은 부족하다. 고속철도건설공단과 철도청의 고속철도 운영권 마찰이 장기화하면서 차량 및 시설 이전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양차량정비창의 경우 전체 정비인력 360명 가운데 340명이 지난해 9월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된 철도청 소속 정비사들이다. 신참들은

기계를 만진 경험이 부족해 정비의 질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유코레일 등의 우려다.

이들은 호남 고속철도가 중간에 추가됨에 따라 기존선로 활용구간이 당초 5% 미만에서 40%대로 늘어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유코레일 관계자는 “일반선로 비율이 늘어난 만큼 기존 열차와의 운행비율 조정과, 그에 다른 교통신호 시스템 안정화에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고속철도를 시운전중인 기관사들도 운전 및 정비의 품질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한 기관사(경력 15년)는 “시운전 도중 6개의 엔진 가운데 1, 2개가 멈추는 등의 정비 불량을 자주 경험한다”며 “현재 시운전량이 계획량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 이 역시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차량이 출고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고속철도 노조 관계자는 “전기차(고속철도)와 디젤차(기존열차)는 검수원리나 방식이 판이해 고참 경력자들도 애를 먹고 있다”며 “기관사들은 경험부족과 단독운행에 따르는 중압감, 정비 불안까지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잦은 시승행사로 교육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철도청은 1월 이후 시승·홍보행사 등으로 현재까지 56차례에 걸쳐 고속열차를 투입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금은 홍보보다 운전·정비인력 교육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철도청의 고속철도 4월 개통 방안을 둘러싸고 그동안 총선용이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유코레일과 SNCF측은 “총선용 여부는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다”며 “그러나 기술적으로 본다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청은 “SNCF등으로부터 운행편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은 바 없고, 교육도 정예요원을 선발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충분히 이뤄져 왔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기자 walden@hk.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5. 자 판결 (2004가합32294)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김상균 부장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와 이 교회의 담임목사인 이○○이 한겨레신문과 사설 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새문안교회에 700만원을, 원고 이○○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설은 원고 이○○의 설교 내용 자체를 잘못 인용하여 전제사실로 적시하고 그에 관해 의견을 논평한 것으로 이 사건 사설의 전체적인 흐름, 이 사건 사설이 총선을 7일 여 앞두고 게재되었다는 점, 색깔론이라는 말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은 이 사건 사설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 이○○이 마치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 곧 있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색깔론을 부추겼다는 인상을 주어 원고 이○○ 및 원고 이○○이 담임 목사로 재직 중인 원고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설 내용에 원고 교회 자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의 설교는 당해 교회의 주된 종교행사인 주일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담임 목사의 면면과 설교 내용 등이 당해 교회의 인상, 사회적 역할에 대한 평가와 연관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새문안교회의 이○○ 목사’라고 하여 원고 이○○이 원고 교회의 목사임을 명시한 이상 이 사건 설교 내용에 대한 적시 내지 논평은 원고 이○○ 개인뿐만 아니라 원고 이○○이 대표하고 있는 원고 교회에 대한 명예훼손도 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위적 사죄광고청구 부분과 예비적 사설취소광고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은 한겨레신문이 지난 2004년 4월 8일자 27면 『우려스런 일부 기독교인들의 색깔론』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게재하자 한겨레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소송을 냈다.

판 결 문

사	건	2004가합32294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
원	고	1.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42 대표자 담임목사 이○○ 2. 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	고	1.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교회법

2. 김○○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한겨레신문사 내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태휘

변론종결

2004. 9. 1.

판결선고

2004. 9. 15.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에게 7,000,000원, 원고 이○○에게 10,000,000원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2004. 5. 11.부터 2004. 9. 15.까지는 연 5%, 200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 1/2은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문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한겨레신문'의 사설란 밑에 2일간 연속하여 5호 활자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죄광고를 게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신문사가 발행하는 '한겨레신문'의 사설란 밑에 2일간 연속하여, 5호 활자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설기사 취소광고를 게재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 내지 5호증, 강제6호증의 1, 2, 강제7, 8호증, 강제11호증의 1, 강제12호증, 을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는 1887. 9. 27. 미국인 선교사인 언더우드(H. G. Underwood)가 설립한 우리 나라 최초의 개신교회로 2004년 현재 교인수가 12,0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원고 이○○은 1968년 2월에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1975년 2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각각 졸업하고 1984년 6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대학교에서 신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영락교회 협동목사를 거쳐 2000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당회장을 맡고 있다.

(2) 피고 신문사는 일간지인 '한겨레신문'을 발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김○○은 1988. 3. 2.부터 현재까지 피고 신문사에서 근무하여 왔고 논설위원실 소속 논설주간으로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사설의 작성과 편집을 총괄한 사람이다.

나. 원고 이○○의 이 사건 설교

(1) 원고 이○○은 2004. 3. 21. 주일 예배에서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설교(이하 '이 사건 설교'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설교와 관련하여 기독교 뉴스 전문 신문인 크리스천투데이(www.chtoday.co.kr)에 2004. 3. 22. '이○○ 목사, 극진보세력 우려 표명'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이○○ 목사는 설교에서 기독교계 공산주의 이념의 허구성과 위험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으며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탄압하려는 좌익세력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면서 이 사건 설교 내용 중 관련 부분을 인용하고 그에 대해 상반된 여론을 소개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월간조선'의 대표이사인 소외 조갑제도 그 홈페이지(www.chogabjae.com)에 2004. 4. 5.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는 제목으로 『새문안교회 이○○ 목사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공산주의식 모략과 선동, 홍위병식 여론몰이와 인민재판식 인격살인이 이처럼 기승을 부리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어디 있는가. 지금 우리 나라는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달려가고 있다. 북한정권의 거짓선동에 춤춘 자들은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다며 지금까지 감춰온 악마의 발톱을 세우고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사 5:20)' 이 목사는 또 "사탄은 본래부터 거짓의 아비이고 속이는 자이다. 사탄의 간악한 술책을 가장 잘 습득, 활용해온 자들이 공산주의자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이 사탄의 가장 무서운 도구라고 말했다.』며 이 사건 설교 내용을 인용한 다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총선은 사탄의 심부름꾼들인 공산주의자들이 민주, 진보, 개혁인사로 위장하여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 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험대』라고 논평(이하 '조갑제의 논평'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다. 이 사건 사실의 게재

2004. 4. 7. 피고 신문사의 편집국 편집회의에서 2004. 4. 15. 실시될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이라 한다)를 앞두고 소위 '색깔론'이 제기되고 있고 원고 이○○ 등 일부 기독교목사들이 이에 가세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제가 있자, 피고 신문사는 논설위원회 회의를 통해 그와 관련된 사실을 게재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 신문사 소속 논설위원인 소외 김△△가 크리스천투데이, 조갑제의 홈페이지와 원고 교회의 홈페이지(www.saemoonan.org)를 통해 문제가 된 이 사건 설교 내용을 확인한 다음 '한겨레신문' 2004. 4. 8.자 제27면 사설란에 '우려스런 일부 기독교인들의 색깔론'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4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실(이하 '이 사건 사실'이라 한다)을 작성·게재하였다.

라. 이 사건 사실 게재 후의 정황

이 사건 사실 게재 후 원고들이 이 사건 사실에 인용된 원고 이○○의 설교 내용이 이 사건 설교 내용과 다르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들은 2004. 4. 10.자 '한겨레신문' 제2면의 '바로잡습니다'란에 『8일치 '우려스런 일부 기독교인들의 색깔론' 사설에서 새문안교회의 이○○ 목사가 최근 설교에서 한 말로 인용한 부분(이 사건 사실 본문 중 "새문안교회의 이○○ 목사는... 시험대라고 열변을 토했다"는 부분)은 이 목사가 하지 않은 말을 잘못 인용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제6호증)을 게재하였고, 원고들은 2004. 4. 14. 원고 교회의 임시 당회를 거쳐 2004. 4. 16. 피고들에게 별지1 기재 내용과 같은 사죄광고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1)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사실을 통하여 원고 이○○이 말하지 않은 내용을 기술하였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원고 이○○에 대해 ‘사랑과 화해의 정신에 기초한 말씀을 오용하는 것이다’, ‘이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뿐이다’, ‘어둠과 광기의 진원지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등으로 혹평함으로써 원고 이○○ 개인뿐만 아니라 원고 이○○이 담임목사로 있는 원고 교회의 명예까지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사실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견해의 표명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들은 이 사건 사실의 제목과 본문 서두에서 조갑제·김동길 등 이른바 보수우익논객들 및 ‘좌파적결 국민행동본부’라는 단체들이 총선을 앞두고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 기독교인들마저 이에 가세하고 있다면서 그 한가지 예로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새문안교회의 이○○ 목사는 “이번 총선은 사탄의 심부름꾼들인 공산주의자들이 민주, 진보, 개혁인사로 위장하여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 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험대”라고 열변을 토했다』며 조갑제의 논평 내용을 마치 원고 이○○의 설교 내용인 것처럼 잘못 인용한 다음 이를 전제 사실로 삼아 신성한 주일 예배 설교를 색깔론 시국강연으로 변질시키는 그러한 태도로 인해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의 어둠과 광기의 진원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등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사실은 원고 이○○의 설교 내용 자체를 잘못 인용하여 전제사실로 적시하고 그에 관해 의견을 논평한 것으로 이 사건 사실의 전체적인 흐름, 이 사건 사실이 총선을 7일 여 앞두고 게재되었다는 점, 색깔론이라는 말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은 이 사건 사실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 이○○이 마치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 곧 있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색깔론을 부추겼다는 인상을 주어 원고 이○○ 및 원고 이○○이 담임 목사로 재직 중인 원고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교회가 비법인사단으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우선 그 점에서 원고 교회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경우는 물론 원고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타인의 어떠한 표현으로 인하여 그의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예·신용 등을 침해당하였다면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은 또한, 가사 원고 교회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실 내용에는 원고 교회 자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 교회 소속 14명의 목사들 중 한 사람에 불과한 원고 이○○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하여 바로 원고 교회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강제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이○○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원고 교회를 대표하고 나머지 13명의 목사들은 원고 교회의 부목사로 원고 이○○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임 목사의 설교는 당해 교회의 주된 종교행사인 주일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담임 목사의 면면과 설교 내용 등이 당해 교회의 인상, 사회적 역할에 대한 평가와 연관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새문안교회의 이○○ 목사’라고 하여 원고 이○○이 원고 교회의 목사임을 명시한 이상 이 사건 설교 내용에 대한 적시 내지 논평은 원고 이○○ 개인뿐만 아니라 원고 이○○이 대표하고 있는 원고 교회에 대한 명예훼손도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내용

피고들은 이 사건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 색깔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함으로써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공적인물인 원고 이○○의 설교를 전제사실로 인용한 것이었고, 그 전제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설교 내용과 일치하여 진실하며, 나아가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설교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사실을 게재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의 좌·우 이념대립, 6·25 전쟁 및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공산주의자 또는 북한정권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어 왔고, 군사정권하에서는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나 또는 친북성향의 인물을 상징하는 소위 ‘빨갱이’로 낙인찍어 탄압하기도 해왔으며, 더욱이 선거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상대편 후보자를 공산주의자나 친북성향의 인물로 비방·공격하는 색깔론과 같은 폐습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총선을 앞두고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색깔론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원고 이○○은 우리 나라 최초의 개신교회인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공적인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 사건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실이 전제사실로 적시한 원고 이○○의 설교 내용 자체는 이미 피고들이 원고 이○○이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를 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실의 전제사실은 진실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들은 이 사건 설교 내용을 확인하고서도 이 사건 설교 내용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잘못 인용하였던 것으로서 피고들이 그 적시된 전제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와 같이 잘못 적시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논평한 것은 원고들의 수인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결국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실의 제목, 내용 및 게재 시점, 게재의 목적과 배경, 피고들이 이 사건 설교 내용을 확인하고서도 그 내용과 다르게 잘못 사실을 적시하여 인용한 점, 이 사건 사실 게재 후 피고들이 원고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정정보도한 사정, 원고 이○○의 원고 교회에서의 지위, 한국 기독교 교단에서 원고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배상할 정신적 손해액은 원고 교회에 대해 700만원, 원고 이○○에 대해 1,000만원으로 각각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신문사는 피고 김○○와 소외 김△△의 사용자로서, 피고 김○○는 이 사건 사실 작성·편집 책임자로서, 각자 원고 교회에게 700만원, 원고 이○○에게 1,000만원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5. 1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4. 9. 15.까지는(그 때까지는 피고들이 그 각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다툼이 상당하다) 민법이 정한 연 5%의, 200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죄광고청구 및 이 사건 사실취소광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외에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주위적으로, 사죄광고를 게재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설취소광고를 게재할 것을 구한다.

주위적 청구인 사죄광고 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반하여 양심표명을 강제하는 것이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며(헌법재판소 결정 1991. 4. 1. 89헌마160 참조)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해당되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법인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의 인격권을 인정한 바 있다).

예비적 청구인 이 사건 사설취소광고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취소광고가 사죄광고와 달리 윤리적 판단이 게재되지 않고 공연히 적시된 사실의 존재의 취소를 명하는 데 그치는 점, 또 민법 제764조 소정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란 피해자에 대하여 일단 생긴 사회로부터의 부정적인 평가의 자료가 되었던 정보의 정정의 효과가 있는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죄광고와 달리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를 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피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설의 전체 사실을 정정하는 보도를 하였고, 별지 2 기재 이 사건 사설취소광고의 내용이 그 정정보도문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사설취소광고의 게재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주위적 사죄광고청구 및 예비적 이 사건 사설취소광고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균	_____
	판사	최정인	_____
	판사	강재원	_____

이하 별지 생략 - 편집자 주

“신청인의 불만은 주로 기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키더민스터에 거주하는 안소니 부처(Anthony Butcher) 씨가 제기한 불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처 씨는 키더민스터 셔틀(Kidderminster Shuttle)지 4월 29일자 『통신회사 IT 싸움꾼과 논쟁』, 5월 27일자 『지저분한 IT 논쟁 끝나다』 제하의 기사가 보도 실친 강령 제1장 ‘정확성’(Accuracy)의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오보에 대한 자신의 반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제2장 ‘반론의 기회’(Opportunity to reply)의 장을 위반했다며 불만을 제기했었다.

4월 29일자 기사에서 셔틀지는 IT 컨설턴트인 불만 신청인과 전화번호부 회사인 엘(Yell)사와의 논쟁을 보도하면서, 불만 신청인이 엘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복제했다는 엘사의 주장을 게재했다. 불만 신청인은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복사한 자료들을 불법적으로 재사용했으며, 자신의 웹 사이트 중 하나에 공개했다는 내용의 기사는 잘못 보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만 신청인은 셔틀지는 사건의 전개 과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보를 했으며, 실제로는 엘사와의 싸움은 이미 법정 밖에서 잘 해결되었는데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5월 27일자 기사와 관련해서는, 불만 신청인은 4월 29일자에 보도된 오보 내용을 정정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엘사에 대해 소송비용과 손해 배상금을 지불한 것으로 잘못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불만 신청인은 엘사에 소송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소송을 끝냈을 뿐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셔틀지는 불만 신청인과 엘사와의 논쟁은 4월 29일자 기사가 보도되었을 때 공식으로는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엘사는 불만 신청인에게 데이터베이스에서 복사한 자료들의 재사용과 이의 공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요구를 했으며, 기사는 소송 내용을 정확히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셔틀지는 5월 27일자 기사 또한 정확한 보도였으며, 이 기사에는 복사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불만 신청인은 영장의 주요 내용은 그가 정보로 다운로드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엘사와의 소송은 소송비용으로 25,000 파운드,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100,000 파운드를 지불하는 것으로 끝났다. 불만 신청인은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고, 또한 불법 행위를 의도하지 않았고,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으로도 고소되지 않았다. 불만 신청인은 이런 사실이 판결문에서 밝혀지자, 소송비용과 손해 배상을 지불했다는 기사와 관련된 불만에 대해서는 신청을 철회했다.

불만처리위원회는 문맥상 불만 신청인이 정보를 재이용했고, 또한 이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첫 번째 기사의 내용은 언론사의 주장으로 보았다.

두 번째 기사에서 “부처 씨는 다운로드받은 엘사의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고 보도함으로써 해결된 것으로 보았다.

나머지 불만 사항들과 관련해 위원회는 소송에 관한 기사들은 그를 요약 보도할 수밖에

없으며, 언론사가 세세한 내용까지 보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이 정도의 기사는 충분히 보도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불만 신청인의 반론은 대부분 사실의 부정확성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해석의 문제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위원회는 첫 번째 보도에 앞서, 논쟁이 해결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문제의 기사들은 보도 실천 강령 제1장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제2장 “반론의 기회” 장 또한 위반하지 않았으며, 불만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청인의 거주지 거리 이름의 공표는 신원을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사우스햄튼(Southampton)에 거주하는 에이 래슐리(A Rashley) 씨가 서던 데일리 에코(Southern Daily Echo)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이 래슐리 씨는 서던 데일리 에코지 5월 22일자 『대리모 우리 기도에 답하다』 제하의 기사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불만 신청인과 그의 부인은 이전에 에코지가 자신들과 불법적인 대리모 계약을 맺으려 했던 여자의 고소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신들의 주소 일부를 공개하자 불만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언론사측이 보도 실천 강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후속 기사에서 불만 신청인들이 살고 있는 거리 이름(road name)을 보도하지 않기로 약속하자 신청인은 신청을 철회했었다. 그러나 언론사측이 약속을 어기고 다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거리 이름을 보도하자 다시 불만을 신청했다.

편집 책임자는 결과적으로 거리명이 공표됨으로써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편집 책임자는 첫 번째 기사가 보도 실천 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견해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후속 기사에서 불만 신청인들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불만 신청인들이 자신들의 소송과 관련된 TV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 국내 신문에 파는 등 자신들을 스스로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불만 신청인은 다른 매체에 자신들이 출연했다고 해서 주소가 공표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불만 신청인들이 기사의 중심인물이며, 대리모 문제가 소송까지 이르게 됨으로써 이는 국가적인 관심사항이 되었고, 지역 신문은 이를 기사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불만 신청인들의 정확한 주소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거리 이름을 공표했다고 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도 또한 보도 윤리 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

언론사가 약속을 어기고 후속 기사에서 다시 한번 거리 이름을 보도한 것은 유감스러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편집 책임자가 위원회와 불만 신청인들에게 사과했고, 더 이상 거리 이름을 보도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 사실에 대해 주목했다.

결국 위원회는 편집자가 고의로 신청인이 살고 있는 지역 거리 이름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경우일지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친인척들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다.”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열차 승객 80여 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열차 강도들에 관한 재판 결과를 보도한 이브닝 스탠더드(Evening Standard)지 2004년 6월 15일자 『열차 강도 공포의 시대』 제하의 기사에 대해 켄트주에 사는 제이. 본다(J. Gbonda) 씨가 제기한 불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만 신청인은 재판을 받고 있는 열차 강도범 중 한 명의 아버지로 위 기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이름, 직업, 출신지 등의 신원을 공개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언론사측은 불만 신청인의 아들이 부모가 이혼 후 가출해 생활해 왔다는 사실이 그가 왜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판단, 사건을 기사화하는 데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언론사는 불만 신청인이 기사의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관한 개인적인 상세한 부분들은 기사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불만 신청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불만 신청인과 아들과의 관계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 반면에, 일반 사람들은 기사에서 주어진 정보만으로 불만 신청인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사측은 불만 신청인에게 개인적인 사과의 서한을 보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불만 신청인은 기사 작성 상 신청인의 이름, 직업, 출신지 등을 기사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언론사측의 주장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신문사가 범죄 이유를 판단할 자격은 없다고 불만 신청인은 주장했다. 불만 신청인은 일반인들은 기사에 포함된 그런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없으며, 그러한 세세한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언론사는 적극적으로 그의 신원을 공개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신문사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보도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신문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 윤리 강령 제9장은 (범죄 혐의자의 친척들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신원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불만 신청인의 신원이 그의 아들과 관련된 기사에서 공표되었지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전에 이미 보도 실천 강령 제9장에 관한 불만 신청을 다룰 때 범죄자의 친인척들이 어느 정도 보도되어야 기사의 초점이 되었는지에 관해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제9장의 목적이 범죄와 관련 없는 친인척들이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그들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불만 신청인은 기사의 중심인물이 아니며, 그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극히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제9장은 친인척들의 신원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동의 없이는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들의 동의 없이도 친인척들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이 그런 경우이다. 기사 문맥상 불만 신청인의 신원을 공개할 특별한 필요성은

없지만, 위원회는 그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제9장을 위반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영국사례4>

“성폭행 사건의 경우, 그의 신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보조차도 공개해서는 안돼”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에섹스에 거주하는 A라는 남자가 바킹 앤드 데이즌햄 포스트 (Barking and Dagenham Post)지 2004년 7월 7일자 『딧』 제하의 기사가 성추행 피해자인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보도 실천 강령 제11장 『성추행 피해자』를 위반했다며 제기한 불만 신청을 받아들였다.

불만 신청인은 전 교사가 자신의 제자를 성폭행한 사건 소송을 보도하면서 성폭행 피해자인 자신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의 기사는 교실에서 폭행당했을 때의 자신이 입은 상처에 관해 세밀히 보도하여 당시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사의 이름은 보도하지 않았지만, 이 기사로 인해 친구, 친인척, 이전의 학교 친구들이 자신이 그 교사의 폭행 피해자 중 하나임을 알게 되었다.

언론사측은 학교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불만 신청인이 입은 상처는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이었기에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보도 실천 강령 제11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을 기사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폭행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게재하지 않을지라도 일반 독자들이 그 신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들조차도 보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불만 신청인이 입은 외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실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된다는 신청인의 의견을 인정했다. 또한 외상에 관한 정보가 기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호주사례1>

“교통사고 사망과 사건기사에서 일방의 잘못된 양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이다.”

호주신문평의회는 킹슬리 웰링턴(Kingsley Wellington) 씨가 애들레이드에 있는 선데이 메일(The Sunday Mail)지 2004년 6월 20일자 『52km, 죽음의 도로』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제기한 불만 신청을 받아들였다.

위 기사는 2001년도에 호주 남부의 가장 위험한 도로에서 정면충돌로 사망한 미첼 허치슨(Michelle Hutchinson)에 관해 보도하면서, “그녀는 아무 잘못이 없다. 경찰은 역시 사망한 또 다른 운전자가 2001년 3월 13일 오전 3시 45분에 정면충돌했을 때 도로의 반대편에 있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사망한 또 다른 운전자의 부친인 신청인은 “그녀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표현은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의 아들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불만 신청인에 따르면, 교통사고 조사반은 사고의 원인은 결코 밝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언론사측은 취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청인의 아들이 건너편 도로에 넘어져 있었으며, 사고 장소에는 스킵드 마크도 없어 경찰은 정확히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경찰 통신망을 통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언론사측은 언론사측의 옴부즈맨의 중재로 신청인의 불만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신문평의회는 이 기사의 주요 관심사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선도로의 성능 개선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단정적인 표현은 의도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명확하게 표현되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호주사례2>

“수상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도 만평가는 과장표현을 사용하여 논평할 수 있다.

호주신문평의회는 마틴 루터씨가 위켄드 오스트레일리안(The Weekend Australian)지 2004년 6월 26일과 27일자에 게재한 『젊은 수상 하워드』 제하의 만화에 대해 제기한 불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평가인 빌 릭(Bill Leak)은 위 만평에서 일단의 젊은이들을 이끌고 있는 수상이 호주 국기에 나치식의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 국기를 게양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연방기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릭씨는 불만 신청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 결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표현한 점을 인정했으나, 이러한 과장된 표현은 오래전부터 있어온 만평가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루터씨는 문제의 만평은 신문평의회는 보도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만평들은 과장되어 표현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번의 만평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위켄드 오스트레일리안지와 릭씨는 위 만평은 신문평의회는 보도 기준과 만평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전의 신문평의회는 결정에 근거한 것으로, 신문평의회는 만평가는 합법적인 장치로서 과장된 표현을 통해 일상 사건에 대해 논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한 바 있다.

더욱이 위켄드 오스트레일리안지는 6월 28일자에 만평과 관련된 독자의 불만 투고 세 건을 게재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루터씨는 이 세 건 중의 하나는 그 만평을 지지하는 것이나,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세 건의 투고는 모두 만평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의회는 만평가들이 그들의 주장을 과장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어떤 사람들이 정치 만평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만평가들의 만평을 검열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되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불만을 지지하는 이유(justification)가 되지 않는다면 불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